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6
----------	-----

2015. 7.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 6. 12.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5. 6. 17.
4. 상정일자 : 제261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7. 1.)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 (재무국장 : 박재민)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1) 결산총괄

- 예산현액은 총 25조 5,227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인 25조 8,867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24조 1,753억원으로
 - 그 잔액은 1조 7,114억원임
- 다음회계연도 이월사업비 5,983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1억원 및 현년도 채무상환액 1,000억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870억원임

(2) 일반회계

-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7조 5,055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9%인 17조 6,571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6%인 16조 9,126억원으로
 - 그 잔액은 7,445억원임
- 201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792억원, 사고이월액 1,198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6억원 및 채무상환액 1,000억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원임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7조 6,571억원으로, 예산현액 17조 5,055억원의 0.9%인 1,516억원 초과징수되었음
-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면,
 - 시세는 13조 2,496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2조

- 7,356억원의 4.0%인 5,14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으로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등이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임
 - 세외수입은 9,292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2,339억원의 24.7%인 3,047억원이 부족 징수된 바,
 - 서울의료원 매각시기 연기 등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소 및 DMC 매각사업의 납부방법을 일시납부에서 분할납부로 변경함에 따라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임
 - 지방교부세는 1,304억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1,217억원의 7.1%인 87억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 보조금은 2조 3,797억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2조 4,216억원의 1.7%인 419억원이 부족하였는 바, 이는 국세 영향으로 보조금이 정부의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임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집행액은 예산현액 17조 5,055억원의 96.6%인 16조 9,126억원이고,
 - 다음연도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1,990억원이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3,939억원임
 - 일반회계 세출액을 각 분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비가 예산현액 5조 5,013억원의 97.6%인 5조 3,688억원
 - 일반공공행정비는 4조 1,936억원의 99.2%인 4조 1,598억원,
 - 교육비는 2조 6,899억원의 99.2%인 2조 6,695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조 2,746억원의 92.3%인 1조 1,760억원,

- 수송 및 교통비는 1조 166억원의 99.0%인 1조 64억원,
- 문화 및 관광비는 4,809억원의 83.8%인 4,029억원,
- 환경보호비는 3,803억원의 87.5%인 3,328억원,
- 보건비는 3,134억원의 94.2%인 2,953억원,
- 산업·중소기업비는 2,287억원의 85.8%인 1,962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544억원의 95.1%인 1,469억원,
- 농림해양수산비는 95억원의 95.8%인 91억원,
- 기타는 1조 1,593억원의 99.1%인 1조 1,489억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990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은

792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198억원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 235억원, 서울재사용 플라자 조성 109억원 등이며
-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163억원,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109억원 등임

○ 집행잔액 3,939억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18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80억원 등임

(3) 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조 172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6%인 8조 2,296억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0.6%인 7조 2,627억원으로
- 그 잔액은 9,669억원임

- 이 중 201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698억원, 사고이월액 3,295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671억원임
-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8조 2,296억원으로 예산현액 8조 172억원의 2.6%인 2,124억원이 초과징수되었음
-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 예산현액보다 많이 징수된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2,833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 1,328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690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9억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103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77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억원임
 - 예산현액보다 적게 징수된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 709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345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2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9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억원
-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집행액은 예산현액 8조 172억원의 90.6%인 총 7조 2,627억원이고,

- 다음연도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0%인 3,993억원이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3,552억원임
- 지출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1,511억원의 91.7%인 1조 553억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조 3,073억원의 92.1%인 1조 2,035억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543억원의 56.1%인 866억원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조 3,263억원의 94.9%인 1조 2,586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조 4,033억원의 87.2%인 1조 2,243억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633억원의 84.1%인 6,422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468억원의 85.3%인 2,106억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267억원 99.99%인 8,266억원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92억원의 86.5%인 166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1억원 중 300만원
 -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168억원의 90.4%인 7,384억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993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698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295억원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서남권 돛야구장 건립 283억원,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60억원 등이며,
-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56억원,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214억원 등임

- 집행잔액 3,552억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276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 259억원 등임

(4) 기금결산

-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2013년도말 기금현재액은 6,573억원이며,
- 2014년도 중에 1조 6,656억원이 수입되고, 1조 6,621억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6,608억원으로 전년대비 0.5%인 35억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감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49억원, 자원회수관련 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01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기후변화기금 254억원, 재난관리기금 205억원 등이 감소하였음

(5) 채권 현재액

-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조 9,146억원이며,
- 2014년도 중에 5,852억원이 발생하고, 8,629억원이 소멸하여,
- 2014년도말 현재액은 1조 6,3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인 2,777억원이 감소하였음
- 주요 증감사유는 기후변화기금 154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754억원, 재정투융자기금 300억원 등이 소멸하였음

(6) 채무결산

- 2013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조 9,327억원이며,
- 2014년도 중에 1조 720억원이 발생하고, 7,637억원이 소멸하여,
- 2014년도말 현재액은 3조 2,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3,083억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지하철 양공사 재정 건전성 재고를 위하여 양 공사 건설채무 3,553억원을 시로 이관한 것이 주요 사유임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3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07조 7,613억원이며,
- 2014년도 중에 3조 4,796억원이 증가하고, 1조 9,463억원이 감소하여
-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4%, 1조 5,333억원이 증가한 109조 2,946억원임
- 이 중 행정재산은 92조 5,050억원이며, 일반재산은 16조 7,896억원임

(8)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82억원이며,

- 2014년도 중에 물품구매·관리전환 등으로 511억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18억원이 감소하여
- 2014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475억원으로 전년대비 393억원이 증가하였음

(9)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 2014년도말 현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21조 8,388억원이고, 부채총액은 5조 8,442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5조 9,946억원임
- 2014년도말 현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총 비용은 19조 4,429억원이고, 총 수익은 20조 632억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203억원(흑자)임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 엄지운)

1. 2014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14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4조 4,133억 3,200만원	에서
간주처리분	1,502억 1,800만원	을 더하고
추경예산액	4,057억 1,600만원	을 더하여
총예산액	24조 9,692억 6,600만원	으로서

전년대비 5.0%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16조 9,269억원	에서
간주처리분	754억 4,300만원	을 더하고
추경예산액	3,404억 2,4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17조 3,427억 6,700만원	임

- 특별회계는 11개로서

당초예산액	7조 4,864억 3,200만원	에서
간주처리분	747억 7,500만원	을 더하고
추경예산액	652억 9,200만원	을 더하여
최종예산액	7조 6,264억 9,900만원	임

〈표 3-1〉 2014회계연도 최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액	간주처리 (1차~11차)	추경예산	최종예산액
합 계	24,413,332	150,218	405,716	24,969,266
일 반 회 계	16,926,900	75,443	340,424	17,342,767
일 반 공 공 행 정	4,099,626	1,197	91,360	4,192,183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49,730	900	528	151,158
교 육	2,620,564	-	69,020	2,689,584
문 화 및 관 광	425,454	15,563	10,276	451,293
환 경 보 호	350,276	6,019	91	356,386
사 회 복 지	5,322,615	34,127	131,074	5,487,816
보 건	296,750	1,326	14,417	312,492
농 립 해 양 수 산	9,324	182	-	9,507
산 업 · 중 소 기 업	203,600	2,000	5,629	211,229
수 송 및 교 통	958,155	-	52,674	1,010,82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186,155	13,803	△14,456	1,185,502
예 비 비	151,138	-	△20,187	130,951
기 타	1,153,512	325	-	1,153,837
특 별 회 계	7,486,432	74,775	65,292	7,626,49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793,070	2	-	793,072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2,070	-	-	2,070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791,000	2	-	791,002
기 타 특 별 회 계	6,693,362	74,773	65,292	6,833,427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115,500	120	△1,000	1,114,62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212,117	5,077	7,050	1,224,244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233,000	55,121	17,138	1,305,259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232,545	2,000	12,359	1,246,904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691,000	11,600	△2,055	700,545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특 별 회 계	295,000	-	△48,200	246,800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746,700	-	80,000	826,7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19,100	55	-	19,155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48,400	800	-	149,200

2. 2014회계연도 결산 개관

(1) 결산총괄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24조 9,692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5,534억 9,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조 5,227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25조 8,867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101.4%로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하였음.
- 세출결산액은 24조 1,753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94.7%로 전년대비 동일 함.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조 7,113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75%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6.7%로 전년대비 1.0%포인트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액은 1,490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7% 증가하였으며
- 사고이월액은 4,493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 감소하였으며
- 보조금 집행잔액은 260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1% 증가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은 9,869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3.8%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3-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월처리	
2014	총계	25,522,763 (2014최종) 24,969,266 (2013이월) 553,497	25,886,706 (101.4%)	24,175,347 (94.7%)	1,711,359 (6.7%)	채무상환 100,000 명시이월 149,021 사고이월 449,304 계속비 보조금잔액 26,064 순세계잉여 986,970
	일반회계	17,505,539 (2014최종) 17,342,768 (2013이월) 162,771	17,657,113 (100.9%)	16,912,581 (96.6%)	744,532 (4.3%)	채무상환 100,000 명시이월 79,212 사고이월 119,864 계속비 보조금잔액 25,580 순세계잉여 419,876
	특별회계	8,017,224 (2014최종) 7,626,498 (2013이월) 390,726	8,229,593 (102.6%)	7,262,766 (90.6%)	966,827 (12.1%)	채무상환 명시이월 69,809 사고이월 329,440 계속비 보조금잔액 484 순세계잉여 567,094
2013	총계	24,355,835 (2013최종) 23,789,045 (2012이월) 566,790	24,438,432 (100.3%)	23,055,476 (94.7%)	1,382,956 (5.7%)	채무상환 명시이월 67,528 사고이월 485,969 계속비 보조금잔액 18,742 순세계잉여 810,717
	일반회계	16,000,772 (2013최종) 15,883,886 (2012이월) 116,886	15,944,023 (99.6%)	15,469,834 (96.7%)	474,189 (3.0%)	채무상환 명시이월 37,484 사고이월 125,287 계속비 보조금잔액 17,245 순세계잉여 294,172
	특별회계	8,355,063 (2013최종) 7,905,159 (2012이월) 449,904	8,494,409 (101.7%)	6,341,249 (88.6%)	908,767 (10.9%)	채무상환 명시이월 30,044 사고이월 360,682 계속비 보조금잔액 1,497 순세계잉여 516,545

(2) 세입결산

① 총 괄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25조 5,227억 6,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조 8,867억 600만원으로
-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4%이고, 직전 5년간 평균비율(96.8%)대비 4.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100.3%) 대비 1.1%포인트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4%로 직전 5년간 평균비율(94.3%)대비 0.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비율(93.8%) 대비 0.2%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3-3〉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다/가)	(다/나)
합 계	25,522,763	27,533,090	25,886,706	269,878	1,376,506	101.4%	94.0%
일반회계	17,505,539	19,191,746	17,657,113	267,947	1,266,686	100.9%	92.0%
특별회계	8,017,224	8,341,344	8,229,593	1,931	109,820	102.6%	98.7%

②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조 5,055억 3,900만원에 대하여 19조 1,917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9%인 17조 6,571억 1,300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음.
- 2014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이 1.3%p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보다 0.5%p 증가한 92%임

〈표 3-4〉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율	
				계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다/가)	(다/나)
합 계	17,505,539	19,191,746	17,657,113	1,534,633	267,947	1,266,686	100.9%	92.0%
지 방 세	12,735,620	14,674,287	13,249,613	1,424,674	262,462	1,162,212	104.0%	90.3%
세 외 수입	1,233,918	1,039,054	929,165	109,889	5,485	104,404	75.3%	89.4%
지방교부세	121,688	130,407	130,407	0	0	0	107.2%	100.0%
보 조 금	2,421,606	2,379,694	2,379,694	0	0	0	98.3%	100.0%
지방채	300,000	300,000	300,000	0	0	0	100.0%	1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92,707	668,304	668,234	70	0	70	96.5%	100.0%

〈표 3-5〉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5년 평균
예 산 액	17,342,767	15,883,886	15,454,654	14,631,362	15,614,118	15,785,357
예 산 현 액	17,505,539	16,000,772	15,529,458	14,980,631	15,902,401	15,983,760
징 수 결 정 액	19,191,746	17,416,934	16,563,104	15,884,661	15,779,012	16,967,091
수 납 액	17,657,113	15,944,023	15,223,375	14,693,158	14,634,416	15,630,417
결 손 액	267,947	178,376	191,939	241,993	266,503	229,352
수납액/예산현액	100.9%	99.6%	98.0%	98.1%	92.0%	97.7%
수납액/징수결정액	92.0%	91.5%	91.9%	92.5%	92.7%	92.1%

〈표 3-6〉 2014 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증 감	
			금액(C) (B-A)	비율 (C/A)
합 계	12,735,620	13,249,613	513,993	4.0
보 통 세	11,260,390	11,652,865	392,475	3.5
취 득 세	2,809,204	3,311,173	501,969	17.9
주 민 세	396,029	389,360	-6,669	-1.7
재 산 세	1,814,185	1,909,194	95,009	5.2
자 동 차 세	1,062,072	1,063,527	1,455	0.1
농 업 소 득 세	-	-	-	-
레 저 세	174,795	149,691	-25,104	-14.4
담 배 소 비 세	546,333	542,313	-4,020	-0.7
지 방 소 비 세	975,594	977,587	1,993	0.2
지 방 소 득 세	3,482,178	3,310,020	-172,158	-4.9
목 적 세	1,296,749	1,419,561	122,812	9.5
지역자원시설세	185,046	231,656	46,610	25.2
지 방 교 육 세	1,111,703	1,187,905	76,202	6.9
과년도 시세	178,481	177,187	-1,294	-0.7

〈표 3-7〉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등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항 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증 감			
				금액 (C=B-A)	비율 (C/A)		
계		1,926,626	1,597,399	-329,227	-17.1		
세 외 수 입	경상적	소 계	553,482	531,115	-22,367	-4.0	
		재산임대수입	94,987	95,058	71	0.1	
		사 용 료 수 입	126,310	131,299	4,989	3.9	
		수 수 료 수 입	3,089	2,797	-292	-9.5	
		사 업 수 입	287,728	256,998	-30,730	-10.7	
		징 수 교 부 금	19,934	20,812	878	4.4	
		이 자 수 입	21,434	24,151	2,717	12.7	
	임시적	소 계	680,436	398,050	-282,386	-41.5	
		재산매각수입	420,376	51,365	-369,011	-87.8	
		부 담 금	33,692	49,528	15,836	47.0	
		기 타 수 입	220,664	288,620	67,956	30.8	
		과 년 도 수 입	5,704	8,537	2,833	49.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보전 수입	소 계	378,717	388,179	9,462	2.5
			잉 여 금	194,100	194,172	72	0.0
전년도이월금			172,231	180,016	7,785	4.5	
융 자 금 수 입 원 금 수 입			12,386	13,991	1,605	13.0	
내부 거래		소 계	313,991	280,055	-33,936	-10.8	
		전 입 금	313,991	280,055	-33,936	-10.8	

③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현액 8조 172억 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8조 2,295억 9,30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6%이고,
직전 5년간 평균비율(98.0%)대비 4.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101.7%)대비 0.9%포인트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7%로
직전 5년간 평균비율(97.6%)대비 1.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전년도비율(98.5%)대비 0.2%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3-8〉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처리			비 율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다/가)	(다/나)
합 계	8,017,224	8,341,344	8,229,593	111,751	1,931	109,820	102.6%	98.7%
기타특별회계	7,198,286	7,485,578	7,400,162	85,416	1,271	84,145	102.8%	98.9%
도 시 철 도 건 설 사업비특별회계	1,151,082	1,142,233	1,142,233	0	0	0	99.2%	100.0%
교 통 사 업 계 특 별 회 계	1,307,283	1,356,464	1,314,972	41,492	976	40,516	100.6%	96.9%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54,262	149,836	127,089	22,747	0	22,747	82.4%	84.8%
주 택 사 업 계 특 별 회 계	1,326,285	1,468,803	1,459,133	9,670	0	9,670	110.0%	99.3%
도 시 개 발 계 특 별 회 계	1,403,335	1,472,281	1,472,281	0	0	0	104.9%	100.0%
하 수 도 사 업 계 특 별 회 계	763,385	836,504	825,195	11,309	295	11,014	108.1%	98.6%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특 별 회 계	246,800	212,451	212,253	198	0	198	86.0%	99.9%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826,700	828,149	828,149	0	0	0	100.2%	10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19,154	18,857	18,857	0	0	0	98.4%	100.0%
공기업특별회계	818,938	855,766	829,431	26,335	660	25,675	101.3%	96.9%
지 역 개 발 기 금	2,070	2,313	2,313	0	0	0	111.7%	100.0%
수 도 사 업	816,868	853,453	827,118	26,335	660	25,675	101.3%	96.9%

(3) 세출결산

① 총괄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5조 5,227억 6,300만원에 지출액이 24조 1,753억 4,700만원(예산현액대비 94.7%)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983억 2,500만원(예산현액대비 2.3%) 집행잔액은 7,490억 9,100만원(예산현액대비 2.9%)임.

〈표 3-9〉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합계	24,969,266	553,497	25,522,763	24,659,123	24,175,347	598,325	749,091	2.9
일반회계	17,342,768	162,771	17,505,539	17,045,128	16,912,581	199,076	393,882	2.3
특별회계	7,626,498	390,726	8,017,224	7,613,995	7,262,766	399,249	355,209	4.4

②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7조 5,055억 3,900만원에 지출액은 16조 9,125억 8,100만원(예산현액대비 96.6%)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990억 7,600만원(예산현액대비 1.1%) 집행잔액은 3,938억 8,200만원(예산현액대비 2.3%)임.

〈표 3-10〉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합 계	17,342,768	162,771	17,505,539	17,045,128	16,912,581	199,076	393,882	2.3
일 공 공 행 정	4,192,183	1,428	4,193,611	4,162,233	4,159,769	2,499	31,343	0.7
공 공 질 및 안 전	151,158	3,278	154,436	148,814	146,866	1,927	5,643	3.7
교 육	2,689,584	300	2,689,884	2,672,744	2,669,443	3,265	17,176	0.6
문 화 및 관 광	451,293	29,563	480,856	417,283	402,884	56,992	20,980	4.4
환 경 보 호	356,386	23,877	380,263	350,634	332,843	26,494	20,926	5.5
사 회 복 지	5,487,817	13,481	5,501,298	5,370,770	5,368,799	4,169	128,330	2.3
보 건	312,492	967	313,459	303,673	295,293	8,022	10,144	3.2
농 해 양 수 산	9,507	0	9,507	9,098	9,098	0	409	4.3
산 중 소 기 업	211,229	17,440	228,669	207,020	196,240	18,990	13,439	5.9
수 송 및 교 통	1,010,829	5,752	1,016,581	1,009,215	1,006,438	2,999	7,144	0.7
국 및 지 역 개 발	1,185,502	89,154	1,274,656	1,244,692	1,175,956	73,719	24,981	2.0
예 비 비	130,951	△27,884	103,067	0	0	0	103,067	100.0
기 타	1,153,837	5,415	1,159,252	1,148,952	1,148,952	0	10,300	0.9

③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조 172억 2,400만원에
 지출액은 7조 2,627억 6,600만원(예산현액대비 90.6%)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992억 4,900만원(예산현액대비 5.0%)
 집행잔액은 3,552억 900만원(예산현액대비 4.4%)임.

〈표 3-11〉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나)	비율 (나/가)
특별회계	7,626,498	390,726	8,017,224	7,613,995	7,262,766	399,249	355,209	4.4
기타특별회계	6,833,426	364,860	7,198,286	6,858,644	6,524,322	380,625	293,339	4.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14,620	36,462	1,151,082	1,108,185	1,055,313	52,727	43,042	3.7
교 통 사 업	1,224,243	83,040	1,307,283	1,246,462	1,203,500	49,025	54,758	4.2
광역교통시설	149,200	5,062	154,262	121,505	86,625	37,880	29,757	19.3
주 택 사 업	1,305,259	21,026	1,326,285	1,268,143	1,258,571	19,617	48,097	3.6
도 시 개 발	1,246,904	156,431	1,403,335	1,345,786	1,224,363	138,685	40,287	2.9
하 수 도 사 업	700,546	62,839	763,385	714,788	642,175	82,691	38,519	5.0
집단에너지공급	246,800	0	246,800	210,557	210,557	0	36,243	14.7
의료급여기금	826,700	0	826,700	826,589	826,589	0	111	0.0
한강수질개선	19,154	0	19,154	16,629	16,629	0	2,525	13.2
공기업특별회계	793,072	25,866	818,938	755,351	738,444	18,624	61,870	7.6
지역개발기금	2,070	0	2,070	3	3	0	2,067	99.9
상 수 도 사 업	791,002	25,866	816,868	755,348	738,441	18,624	59,803	7.3

(4) 불용액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7,490억 9,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9%로 직전 5년간 평균집행잔액 비율 4.3%에 비해 1.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전년도(3.1%)대비 0.2%포인트 감소하였음.

〈표 3-12〉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집행잔액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749,091	166,277	4,546	406,471	26,044	145,753
일반회계	393,882	75,534	1,503	188,218	25,560	103,067
특별회계	355,209	90,743	3,043	218,253	484	42,686
기타특별회계	293,339	88,187	1	172,012	484	32,65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43,042	22,946	0	3,460	0	16,636
교통사업	54,758	32,390	0	18,029	484	3,855
광역교통시설	29,757	1,132	0	27,879	0	746
주택사업	48,097	21,840	0	22,219	0	4,038
도시개발	40,287	2,470	0	36,626	0	1,191
하수도사업	38,519	6,334	1	31,158	0	1,026
집단에너지공급	36,243	510	0	30,899	0	4,834
의료급여기금	111	0	0	111	0	0
한강수질개선	2,525	565	0	1,631	0	329
공기업특별회계	61,870	2,556	3,042	46,241	0	10,031
지역개발기금	2,067	0	7	1	0	2,059
수도사업	59,803	2,556	3,035	46,240	0	7,972

-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3,938억 8,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2.9%로
직전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3.8%에 비해 0.9%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전년도(2.3%)대비 0.6%포인트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3,552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4.4%로
직전 5년간 평균불용액 비율 7.5%에 비해 3.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전년도(4.5%)대비 0.1%포인트 감소하였음.

(5) 이용 및 전용

- 2014회계연도에는 실·본부·국간 또는 부서간 예산 이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 예산의 전용은 총 199건에 282억 8,100만원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20건 감소, 1,01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13〉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2014	2013	2012	2011	2010
합 계 (건수)	28,281 (199)	129,664 (219)	31,526 (194)	39,867 (171)	65,392 (283)
일반회계 (건수)	20,608 (169)	123,136 (195)	25,401 (171)	38,743 (137)	62,197 (250)
특별회계 (건수)	7,673 (30)	6,528 (24)	6,125 (23)	1,124 (34)	3,195 (33)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6) 이월비

- 2014회계연도 이월비 중 계속비 이월은 없음
-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792억 1,200만원 이며
-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1,198억 6,400만원 임.
- 명시이월비는 특별회계에서 698억 900만원 이며
- 사고이월비는 특별회계에서 3,294억 4,000만원 임.

〈표 3-1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25,522,763	149,021	449,304		2.3
일 반 회 계	17,505,539	79,212	119,864		1.1
특 별 회 계	8,017,224	69,809	329,440		5.0
기타특별회계	7,198,286	69,809	310,816		5.3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1,151,082	0	52,727		4.6
교 통 사 업	1,307,283	4,915	44,110		3.8
광 역 교 통 시 설 사 업	154,262	3,000	34,880		24.6
주 택 사 업	1,326,285	8,622	10,995		1.5
도 시 개 발 사 업	1,403,335	43,592	95,093		9.9
하 수 도 사 업	763,385	9,680	73,011		10.8
집 단 에 너 지 공 급 사 업	246,800	0	0		0.0
의 료 급 여 기 금	826,700	0	0		0.0
한 강 수 질 개 선 사 업	19,154	0	0		0.0
공기업특별회계	818,938	0	18,624		2.3
지 역 개 발 기 금	2,070	0	0		0.0
수 도 사 업	816,868	0	18,624		2.3

〈표 3-15〉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 ('14~'10)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3		2012		2011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51	598,325	668	553,497	550	566,790	415	413,888	637	883,236
사고이월	381	449,304	627	485,969	517	361,628	376	260,535	632	879,219
명시이월	70	149,021	41	67,528	55	205,162	39	153,353	5	4,017
계속비이월	0	0	0	0	0	0	0	0	0	0

〈표 3-16〉 사고이월비 결산 현황 ('14~'10)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비율
2014	25,522,763	24,175,347	749,091	449,304	381	1.8
2013	24,355,835	23,055,476	746,862	485,969	627	2.0
2012	22,689,515	21,368,504	754,221	361,628	517	1.6
2011	21,883,150	20,499,280	969,982	260,534	376	1.2
2010	22,515,391	19,978,233	1,653,921	879,219	632	3.9

(7) 잉여금

① 잉여금 총괄

○ 2014회계연도 잉여금은	1조 7,113억 5,900만원	으로
채무상환	1,000억원	,
명시이월	1,490억 2,100만원	,
사고이월	4,493억 400만원	,
국비잔액	260억 6,400만원	,
순세계잉여금	9,869억 7,000만원	임

② 일반회계 잉여금

○ 일반회계중 잉여금은	7,445억 3,200만원	으로
채무상환	1,000억원	,
명시이월	792억 1,200만원	,
사고이월	1,198억 6,400만원	,
국비잔액	255억 8,000만원	,
순세계잉여금	4,198억 7,600만원	임

③ 특별회계 잉여금

○ 특별회계중 잉여금은	9,668억 2,700만원	으로
명시이월	698억 900만원	,
사고이월	3,294억 4,000만원	,
국비잔액	4억 8,400만원	,
순세계잉여금	5,670억 9,400만원	임

〈표 3-17〉 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잉여금 (A=B+C)	현년도 채무상환 (B)	잉여금내역 (C)					2013년도 잉여금	잉여금 증감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비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711,359	100,000	149,021	449,304	0	26,064	986,970	1,382,956	23.7
일반회계	744,532	100,000	79,212	119,864	0	25,580	419,876	474,189	57.0
특별회계	966,827	0	69,809	329,440	0	484	567,094	908,767	6.4

(8) 기 금

- 14개 기금의 2014년도말 현재액은 6,607억 6,800만원으로 2013년도말의 6,573억 3,900만원에 비해 3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3-18〉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4년도말 현재액
		순증감	수납	지출	
합 계	657,339	3,429	1,665,543	1,662,114	660,768
재 정 투 용 자 기 금	135,085	△7,240	859,749	866,989	127,845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10,779	54,942	324,282	269,340	265,721
식 품 진 흥 기 금	7,939	△2,497	6,172	8,669	5,442
기 후 변 화 기 금	47,177	△25,432	14,182	39,614	21,745
사 회 투 자 기 금	37,975	△5,217	3,543	8,760	32,758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6,463	△638	22,675	23,313	15,825
여 성 발 전 기 금	371	△43	1,135	1,178	328
자 원 회 수 관 련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기 금	5,863	10,059	36,504	26,445	15,922
사 회 복 지 기 금	16,140	1,456	37,638	36,182	17,596
체 육 진 흥 기 금	821	△237	1,486	1,723	584
감 채 기 금	9,230	△141	115,410	115,551	9,089
재 난 관 리 기 금	157,070	△20,474	237,220	257,694	136,596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6,919	642	3,854	3,212	7,561
대 외 협 력 기 금	5,507	△1,751	1,693	3,444	3,756

(9) 채권

○ 201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조 6,368억 7,900만원으로 종류별 구성내용은

- 보증금채권 1,993억 1,000만원,
- 융자금채권 1조 3,764억 7,600만원,
- 미수금채권 345억 6,600만원,
- 기타 채권 265억 2,700만원 임

※ 2013년도말에 비해 2,776억 9,800만원이 감소

〈표 3-19〉 채권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4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914,577	△277,698	585,194	862,892	1,636,879
일반회계	309,914	28,208	76,849	48,641	338,122
특별회계	312,136	△15,143	70,747	85,890	296,993
기 타 특 별	162,688	△15,845	64,801	80,646	146,843
공 기 업	149,448	702	5,946	5,244	150,150
기 금	1,292,527	△290,763	437,598	728,361	1,001,764

〈표 3-20〉 종류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 금
			계	기 타	공 기업	
합 계	1,636,879	338,123	296,993	146,843	150,150	1,001,763
보 증 금 채 권	199,310	191,269	2,353	2,353	-	5,688
융 자 금 채 권	1,376,476	138,728	241,673	97,473	144,200	996,075
미 수 금 채 권	34,566	7,810	26,756	20,808	5,948	0
기 타 채 권	26,527	316	26,211	26,209	2	0

(10) 부채

- 2014년도말 현재액은 5조 8,442억 2,100만원으로 2013년도말에 비해 1조 1,485억 6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21〉 부채 증감현황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환율조정등	순증감	
총 계	4,695,715	2,301,107	1,152,601	-	1,148,506	5,844,221
차 입 금 (지방채포함)	2,882,692	976,538	718,230	-	258,308	3,141,000
일 반 회 계	513,000	655,258	406,573	-	248,685	761,685
기타특별회계	2,212,619	321,280	308,957	-	12,323	2,224,942
도시철도건설사업	1,527,058	321,280	281,833	-	39,447	1,566,505
주 택 사 업	648,938	-	16,001	-	-16,001	632,937
하 수 도 사 업	36,623	-	11,123	-	-11,123	25,500
공기업특별회계	157,073	-	2,700	-	-2,700	154,373
지역개발기금	150,173	-	-	-	-	150,173
수 도 사 업	6,900	-	2,700	-	-2,700	4,200
세입세출외현금	87,533	343,298	302,852	-	40,446	127,979
일 반 회 계	83,160	314,504	274,851	-	39,653	122,813
기타특별회계	147	3,639	3,620	-	19	166
공기업특별회계	4,226	25,155	24,381	-	774	5,000
기타채무 ¹⁾	1,725,490	981,271	131,519	-	849,752	2,575,242
일 반 회 계	107,967	256,543	53,053	-	203,490	311,457
기타특별회계	1,574,364	703,505	58,434	-	645,071	2,219,435
공기업특별회계	43,159	21,223	20,032	-	1,191	44,350

1) 재개발·재건축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1) 물품 및 재산

① 물품

- 2014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25,002개, 현재액 1,475억 5,700만원으로 2013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6,609개 증가하고, 금액은 39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구매와 관리전환 등에 의한 증가는 수량 13,367개, 금액 511억 900만원이며, 매각과 관리전환 등에 의한 감소는 수량 6,758개, 금액 118억 2,600만원임.

〈표 3-2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정수	2013년도말 보유현황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4년도말 보유현황
				증 가			감 소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합계	42,472	수량 (개)	18,393	2,710	10,657	13,367	71	6,687	6,758	25,002
		금액	108,274	14,687	36,422	51,109	2,055	9,771	11,826	147,557

② 공유재산

○ 2014년도말 공유재산은

- 토지 107,546천㎡ 71조 7,465억 3,200만원 ,
- 건물 7,952천㎡ 4조 6,027억 100만원 ,
- 기타 14,527천건 32조 9,454억 2,400만원 임

○ 공유재산은 총 109조 2,946억 5,7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조 5,33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증가사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공원부지 등 토지매입 3,917억원,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신축, 한국산업인력공단 매입, 건물증축 시설물설치 등으로 8,426억원 증가하였고, 구획정리완료로 4,106억원, 지목변경으로 2,237억원, 분할취득으로 2,595억원 증가하였고, 유가증권 출자금으로 6,855억원 증가함.

○ 주요 감소사유는 서대문구 충정로2가 외 138필지 매각 등으로 139억원, 구획정리폐쇄 5,114억원, 지목면적변경 2,639억원, 합병말소 2,543억원, 감가상각적용 3,032억원, 유가증권 출자금 4,308억원 감소함.

〈표 3-23〉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합 계	107,761,336	3,479,648	1,946,327	109,294,657	
행정 재산	계	91,259,665	2,618,638	1,373,234	92,505,069
	공용재산	7,228,186	1,102,058	272,270	8,057,974
	공공용재산	76,378,408	1,409,846	863,228	76,925,026
	기업용재산	6,073,094	98,848	194,211	5,977,731
	보존용재산	1,579,977	7,886	43,525	1,544,338
일반재산	16,501,671	861,010	573,093	16,789,588	

(12) 공기업결산 (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① 수도사업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14 회계연도 예산액은 7,910억 2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8,168억 6,800만원임.

- 수익적 수입 : 6,853억 7,700만원
- 자본적 수입 : 1,314억 9,100만원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8,534억 5,300만원
 - 징수액 8,271억 1,800만원
 - 미수납액 263억 3,500만원임.

〈표 3-24〉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다/가)	(다/나)
계	791,002	816,868	853,453	827,118	26,335	101.3	96.9
수익적수입	685,377	685,377	701,594	675,259	26,335	98.5	96.2
자본적수입	105,625	131,491	151,859	151,859	0	115.5	10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7,553억 4,800만원
- 지출액 7,384억 4,100만원
- 이월액 186억 2,400만원
- 불용액 598억 300만원

〈표 3-25〉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다/가)	(라/가)	(마/가)
계	791,002	816,868	755,348	738,441	18,624	59,803	90.4	2.3	7.3
수익적지출	475,409	476,814	438,510	436,862	1,648	38,304	91.6	0.3	8.0
자본적지출	315,593	340,054	316,838	301,579	16,976	21,499	88.7	5.0	6.3

□ 수도권사업 지방채 현황

〈표 3-26〉 수도권사업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시 투융자기금	환경부 재특자금
차입원금	412,000	27,000
미상환잔액	352,000	4,200
상환기간	2008. 3.15 ~ 2020.12.15	2006. 3.20 ~ 2016.12.20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14년도말 자산은 5조 4,444억 9,6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0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4년도말 부채 총액은 3,815억 7,7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64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음.
- 2014년도말 자본은 5조 629억 1,8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848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274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54억 396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27〉 연도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률
자 산	계	5,125,436	5,203,337	5,311,947	5,424,167	5,444,496	0.4
	유 동 자 산	151,718	123,988	153,579	157,827	128,104	-18.8
	비 유 동 자 산	4,973,718	5,079,349	5,158,368	5,266,340	5,316,392	0.9
부 채	계	349,080	384,506	430,713	446,082	381,577	-14.5
	유 동 부 채	126,302	79,821	41,705	89,644	87,327	-2.6
	비 유 동 부 채	222,778	304,685	389,008	356,438	294,250	-17.4
자 본	계	4,776,356	4,818,831	4,881,234	4,978,085	5,062,918	2.0
	자 본 금	258,098	258,098	258,098	732,394	732,394	0
	자 본 잉 여 금	3,537,493	3,580,994	3,627,618	3,683,937	3,741,344	1.6
	이 익 잉 여 금	980,765	979,739	995,518	561,754	589,180	4.9
손 익	당 기 순 이 익	44,190	-1,026	15,779	42,829	27,425	-35.9
	수 익	629,592	634,664	679,874	689,378	678,653	-1.6
	비 용	585,402	635,690	664,095	646,549	651,228	0.7

②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예산액 및 예산현액

○ 2014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0억 7,000만원임.

┌ 수익적 수입 : 1억 3,500만원
└ 자본적 수입 : 19억 3,500만원

□ 세입·세출 결산

○ 세입결산

- 징수결정액 23억 1,300만원
- 징수액 23억 1,300만원
- 미수납액 없음

〈표 3-28〉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징수액 (다)	미수납액	비 율	
						(다/가)	(다/나)
계	2,070	2,070	2,313	2,313	0	111.7	100
수익적수입	135	135	260	260	0	192.6	100
자본적수입	1,935	1,935	2,053	2,053	0	106.1	100

○ 세 출 결 산

- 지출원인액 300만원
- 지출액 300만원
- 이월액 없음
- 불용액 20억 6,700만원

〈표 3-29〉 지역개발기금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불용액 (마)	비 율		
							(다/가)	(라/가)	(마/가)
계	2,070	2,070	3	3	-	2,067	0.1	-	99.9
수익적지출	11	11	3	3	-	8	27.3	-	72.7
자본적지출	2,059	2,059	0	0	-	2,059	-	-	100

□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현황

〈표 3-3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차 입 원 금	상환액	미상환잔액	상 환 기 간
299,138	148,965	150,173	2013. 8. 1~ 2015.12.31

□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의 결산

- 2014년도말 자산은 1,799억 6,784만원이고
- 2014년도말 부채 총액은 1,743억 1,982만원이며
- 2014년도말 자본은 56억 4,802만원으로
- 2014년도말 당기순이익은 2억 5,347만원임

〈표 3-31〉 연도별 지역개발기금 자산·부채·자본·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률
자 산	계	310,838	318,871	327,246	335,926	344,728	175,960	179,968	2.3
	유 동 자 산	11,638	14,571	20,846	29,526	188,328	21,560	170,368	690.2
	고 정 자 산	299,200	304,300	306,400	306,400	156,400	154,400	9,600	△93.8
부 채	계	308,159	315,823	323,719	331,708	339,491	170,565	174,320	2.2
	유 동 부 채	0	0	0	0	148,920	0	174,320	0
	고 정 부 채	308,159	315,823	323,719	331,708	190,571	170,565	0	△100
자 본	계	2,679	3,047	3,527	4,218	5,236	5,394	5,648	4.7
	자 본 금	181	181	181	181	181	181	181	0
	자 본 잉 여 금	0	0	0	0	0	0	0	0
	이 익 잉 여 금	2,498	2,866	3,346	4,037	5,055	5,213	5,467	△99.9
손 익	당 기 순 이 익	329	369	479	691	1,018	158	253	60.1
	수 익	4,980	8,074	8,377	8,683	8,804	7,172	4,010	△44.1
	비 용	4,651	7,705	7,898	7,992	7,786	7,014	3,757	△46.4

(13) 재무보고서

① 재정상태표

- 2014년말 총자산은 121조 8,388억 4,5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7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부채는 5조 8,442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1,48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순자산은 115조 9,946억 2,4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1,011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자산은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이 101조 9,651억원(83.7%)으로 대부분이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등 투자자산 15조 6,399억원(12.8%), 현금,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 3조 7,838억원(3.1%), 전산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4,500억원(0.4%) 순임
- 부채는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25.7%, 1조 5,026억원으로 무상보육지원을 위한 단기민간차입금 1,000억원과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액 5,418억원,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 8,608억원 이고, **장기차입부채**가 전체 부채의 42.8%, 2조 4,992억원으로 도시철도공채 등 지방채증권 1조 8,575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6,138억원, 금융기관차입금 99억원 등이며 **기타비유동부채**는 전체 부채의 31.5%, 1조 8,423억원으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보증금 1조 6,108억원 등임

〈표 3-32〉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2014년말 현재	구성비율	2013년말 현재	구성비율
자산 총계	121,838,845	100.0	121,791,365	100.0
유 동 자 산	3,783,804	3.1	3,581,615	2.9
투 자 자 산	15,639,920	12.8	15,532,404	12.8
일 반 유 형 자 산	10,010,132	8.2	5,607,069	4.6
주 민 편 의 시 설	20,612,419	16.9	24,560,478	20.2
사 회 기 반 시 설	71,342,557	58.6	72,142,210	59.2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50,013	0.4	367,589	0.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21,838,845		121,791,365	
부채 총계	5,844,221	100.0	4,695,715	100.0
유 동 부 채	1,502,684	25.7	1,055,283	22.5
장 기 차 입 부 채	2,499,193	42.8	2,069,035	44.1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842,344	31.5	1,571,397	33.4
순자산 총계	115,994,624	100.0	117,095,650	100.0
고 정 순 자 산	97,877,602	85.4	100,409,118	85.7
특 정 순 자 산	3,517,101	3.0	3,479,501	3.0
일 반 순 자 산	14,599,921	11.6	13,207,031	11.3

② 재정운영표

- 2014회계연도 총비용은 19조 4,429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1조 3,34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총수익은 20조 631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8,913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재정운영결과는 6,202억 5,400만원(흑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조 2,262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음
- 비용은 정부간이전비용(시비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10조 1,159억원(52.0%), 운영비(도로 등 시설장비유지비 및 위탁대행사업비 등) 4조 3,021억원(22.1%), 민간등이전비용(민간보조금 등) 2조 3,457억원(12.1%) 등 임
- 수익은 지방세수익 13조 4,872억원 등 자체조달수익이 16조 3,559억원(81.5%)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3조 4,090억원(17.0%), 기타수익 2,983억원(1.5%) 임

〈표 3-33〉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1.1~12.31	구성비율	2013.1.1~12.31	구성비율
비용총계(A)	19,442,941	100.0	18,108,093	100.0
인 건 비	1,506,074	7.7	1,404,015	7.8
운 영 비	4,302,087	22.1	4,097,952	22.6
정 부 간 이 전 비 용	10,115,942	52.0	9,071,943	50.1
민 간 등 이 전 비 용	2,345,691	12.1	2,481,008	13.7
기 타 비 용	1,173,147	6.0	1,053,175	5.8
수익총계(B)	20,063,195	100.0	20,954,593	100.0
자 체 조 달 수 익	16,355,885	81.5	15,817,928	75.5
정 부 간 이 전 수 익	3,409,007	17.0	3,058,788	14.6
기 타 수 익	298,303	1.5	2,077,877	9.9
재정운영결과(A-B)	(620,254)		(2,846,501)	

(14) 성인지 결산¹⁾

〈표 3-34〉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92	425,295	411,189	96.68
일반회계	90	425,167	411,084	96.69
특별회계	2	128	105	81.63

〈표 3-35〉 성인지결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92	425,295	411,189	96.68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36	177,220	172,966	97.60
	일반회계	36	177,220	172,966	97.60
	특별회계	0	0	0	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31	161,853	157,115	97.07
	일반회계	29	161,725	157,010	97.08
	특별회계	2	128	105	81.63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25	86,222	81,108	98.68
	일반회계	25	86,222	81,108	98.68
	특별회계	0	0	0	0

1)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표 3-36〉 성인지결산 조직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92	425,295	100.00	411,189	100.00	96.68
서울혁신기획관	1	184	0.04	170	0.04	92.66
시민소통기획관	1	17,624	4.14	15,284	3.72	86.73
여성가족정책실	42	191,118	44.94	186,514	45.36	97.59
비상기획관	1	288	0.07	249	0.06	86.30
평생교육정책관	4	17,983	4.23	17,707	4.31	98.46
정보기획관	2	575	0.14	551	0.13	95.89
경제진흥본부	13	101,733	23.92	96,428	23.45	94.78
복지건강본부	13	87,547	20.58	86,655	21.07	98.98
도시교통본부	2	128	0.03	104	0.03	81.63
문화체육관광본부	3	365	0.09	344	0.08	94.11
기후환경본부	2	950	0.22	862	0.21	90.79
행정국	2	1,206	0.28	1,088	0.26	90.21
도시안전본부	3	1,025	0.24	994	0.24	96.90
푸른도시국	1	1,396	0.33	1,066	0.26	76.42
소방재난본부	2	3,173	0.75	3,173	0.77	99.98

3. 검토요지

① 2014회계연도 결산개요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24조 9,692억 6,5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5.0%, 1조 1,802억 2,000만원 증가한 것임²⁾
 - 최종예산액 24조 9,692억 6,500만원은 당초 본예산(24조 4,133억원), 간주처리분(1,502억 1,700만원)³⁾, 추경증액조정분(4,057억 1,6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5,534억 9,700만원)을 합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4.8%(1조 1,669억 2,700만원) 증가한 25조 5,227억 6,200만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5.9%, 1조 4,482억 7,300만원 증가한 25조 8,867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조 6,571억 1,200만원과 특별회계 8조 2,295억 9,3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보다 4.9%, 1조 1,198억 7,000만원 증가한 24조 1,753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조 9,125억 8,000만원과 특별회계 7조 2,627억원 6,6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3,284억 300만원 증가한 1조 7,113억 5,900만원임

2) 결산서상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

3) '14회계연도에 발생된 국비간주처리는 총 11차 1,502억 1,700만원으로 1차('14. 2.13, 98억 100만원)~11차('14.12.26, 215억 1,200만원)한 바 간주처리 내역은 p.201 <표 8-1> 참조

〈표 3-37〉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A-B)	이월처리	
2014	총계	25,522,763	25,886,705 (101.4%)	24,175,346 (94.7%)	1,711,359 (6.7%)	채무상환 100,000
		(2014최종) 24,969,266				명시이월 149,021
		(2013이월) 553,497				사고이월 449,304
	일반회계	17,505,539	17,657,112 (100.9%)	16,912,580 (96.6%)	744,532 (4.3%)	계속비 -
		(2014최종) 17,342,768				보조금잔액 26,063
		(2013이월) 162,771				순세계잉여 986,969
	특별회계	8,017,224	8,229,593 (102.6%)	7,262,766 (90.5%)	966,827 (12.1%)	채무상환 -
		(2014최종) 7,626,498				명시이월 69,809
		(2013이월) 390,726				사고이월 329,440
					계속비 -	
					보조금잔액 484	
					순세계잉여 567,094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예비비의 경우,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편성된 예비비 1,756억 500만원중 32개 사업에 298억 5,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86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38〉 예비비 지출 결과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소계	175,605	29,852	28,632	28,632	0	1,220
일반회계	130,951	27,884	26,665	26,665	0	1,219
특별회계	44,654	1,968	1,967	1,967	0	1

2 세입결산 관련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17조 6,571억 1,200만원)와 특별회계(8조 2,295억 9,300만원)를 합한 25조 8,867억 5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5.9%, 1조 4,482억 7,300만원 증가된 것임
- 2014회계연도의 경우, 당초 징수결정액(27조 5,330억 9,000만원)보다 1조 6,463억 8,400만원이 미수납된 바 실수납률(94.0%) 및 미수납률(6.4%)이 지난 회계연도와 유사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나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미수납액 발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징수결정된 세수에 대해 미수납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표 3-39〉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2014	27,533,090	25,886,705	1,646,384	94.0
2013	26,043,402	24,438,432	1,604,970	93.8
2012	23,871,332	22,424,620	1,446,712	93.9

(2) 일반회계 세입결산

① 시세 세입관련

○ 시세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의 주요재원이 되는 바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조 4,580억 3,400만원 증가한 13조 2,496억 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4조 6,742억 8,700만원) 대비 90.3%가 수납되어 지난해회계연도보다 지방세 실제징수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표 3-40〉 시세 세입결산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수납액 (B)	실제징수율 (B/A)	과오납반환액
2014	12,735,620	14,674,287	13,249,613	90.3	310,209
2013	11,913,042	13,152,070	11,791,579	89.7	349,482
2012	12,305,270	13,494,279	12,244,119	90.7	201,357

- 특히, 시세 세입결산액을 예산액과 비교할 경우, 4.0%, 5,139억 9,300만원이 초과수납 되어 세무행정의 정밀도가 증대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과오납반환액의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률개정 등 취득세 세수에 대한 유동성이 높아 과오납환급액이 증가한 경향이 있었으나 2014회계연도의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수가 감소되어 과오납 발생률도 직전회계연도보다 11.2%, △392억 7,200만원 감소된 바
 - 지방세 수입이 「지방재정법」 제35조⁴⁾가 명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고, 시세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2014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에서 나타나듯이 세입결산액(13조 2,496억 1,300만원)의 72.4%가 취득세(24.99%, 3조 3,111억 7,200만원), 지방소득세(24.98%, 3조 3,100억 2,000만원), 재산세(14.4 %, 1조 9,091억 9,400만원), 자동차세(8.0%, 1조 635억 2,700만원) 등의 재산과세적 세목이 지방세 수입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바
- 소득이나 재산과세적 세목은 경기변동에 탄력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경제적 변동요인에 따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세의 세원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방세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4) 지방재정법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 특히, 서울시의 재정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지방재정지원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서울시의 특수성과 재정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1〉 당해연도 지방세 세목별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징수결정액 ①	수납총액 ②	과오납반환 ③	실 수 납 ④=②-③	미 수 납 ⑤=①-④	과오납반환수납액 ③/②
계 ^{주1)}	13,390,600	13,379,779	307,353	13,072,426	318,174	2.30
취 득 세	3,329,021	3,436,811	125,638	3,311,172	17,848	3.66
주 민 세	397,524	391,573	2,213	389,360	8,164	0.57
재 산 세	1,949,649	1,913,475	4,280	1,909,194	40,455	0.22
자 동 차 세	1,115,636	1,072,030	8,503	1,063,527	52,109	0.79
레 저 세	149,690	149,690	-	149,690	-	-
담배소비세	542,313	542,313	-	542,313	-	-
지방소비세	977,586	977,586	-	977,586	-	-
지방소득세	3,479,603	3,465,897	155,876	3,310,020	169,583	4.50
지역자원시설세	235,610	231,999	343	231,655	3,954	0.15
지방교육세	1,213,962	1,198,401	10,496	1,187,904	26,057	0.88

※ 주1) “지난년도수입” 제외,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

②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014회계연도의 시세 세입결산결과 수납액은 지난 2013회계연도보다 1조 4,580억 3,400만원 증가하여 지방세의 실제수납액비율도 직전회계연도보다 0.6%포인트 높아졌으며 취득세 수입중 미수납액 발생률도 0.6%포인트 감소되어 직전회계연도보다 시세 세입여건이 양호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득세 수입의 경우, 지난 수년간 수시로 변경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4회계연도의 경우, 취득세가 영구인하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취득세 수입이 예산액보다 17.9%, 5,019억원 초과수납 되었고,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재산세 수입도 당초 예산액보다 5.2%, 950억원 초과수납 되는 등 시세 세입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

〈표 3-42〉 시세세입 수납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비율
2014	14,674,287	13,249,613	90.3	1,424,674	9.7
2013	13,152,069	11,791,579	89.7	1,360,490	10.3
2012	13,494,279	12,244,119	90.7	1,250,160	9.3

〈표 3-43〉 시세 세입 미수납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미 수 납 액	결 손 처 분		다음연도이월	
			미 수 납 대 비 결손처분비율		미 수 납 대 비 다음연도이월비율
2014	1,424,674	262,461	18.4	1,162,212	81.6
2013	1,360,490	173,418	12.7	1,187,071	87.3
2012	1,250,160	190,321	15.2	1,059,838	84.8

○ 다만, 시세 세입에 대한 미수납액중 **결손처분**(2,624억 6,1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1,734억 1,800만원)보다 890억 4,300만원 증가된 바

- 결손처분이 「지방세기본법」 제96조⁵⁾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⁶⁾에 따라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등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하고 있고, 세입부서로서는 지방세 징수권

5)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여 체납시세관리에 따른 징세비용을 절약하려는 측면도 있으며 결손처분 된 경우라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고 있다 할 지라도 시세 미수납액중 당해연도분 결손처분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물론 지난해계연도와 비교하여 '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시세 미수납액중 당해연도분 결손처분 규모가 감소되었다 할지라도 전체 결손처분액의 16.3%, 429억 700만원이 당해연도분이고, 이중 73.9%, 326억 8,900만원이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인 바7)
- 결손처분이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멸시효에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38세금징수과-12608 (2015.5.20.) :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중 당해연도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2014	42,907 (100.0)	31,689 (73.9)	424 (1.0)	0 -	683 (1.6)	10,111 (23.6)
2013	60,352 (100.0)	31,084 (51.5)	548 (0.9)	0 -	22,783 (37.8)	5,937 (9.8)

〈표 3-44〉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14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14,674,288 (100.0)	13,249,613 (100.0)	1,424,675 (100.0)	262,462 (100.0)	1,162,213 (100.0)
	당해연도분	13,390,600 (91.3)	13,072,426 (98.7)	318,174 (22.3)	42,907 (16.3)	275,267 (23.7)
	지난년도 수입	1,283,688 (8.7)	177,187 (1.3)	1,106,501 (77.7)	219,555 (83.7)	886,946 (76.3)
2013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13,152,069 (100.0)	11,791,579 (100.0)	1,360,490 (100.0)	173,418 (100.0)	1,187,071 (100.0)
	당해연도분	11,954,914 (90.9)	11,603,597 (98.4)	351,318 (25.8)	60,352 (34.8)	290,966 (24.5)
	지난년도 수입	1,197,155 (9.1)	187,982 (1.6)	1,009,172 (74.2)	113,066 (65.2)	896,105 (75.5)

○ **다음연도 이월액**은 미수납된 시세 세입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써 '14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보다 △248억 5,900만원 감소된 1조 1,622억 1,3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 '13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다음 회계연도까지 당해연도 시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이 사실이나 미수납액 발생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시세 미수납 사유에 있어서도 “납세태만, 무재산”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3국을 통한 조세회피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5〉 시세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14~'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행방불명)	무 재 산	고 질 체 납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 타
2014	1,162,213 (100.0)	5,188 (0.4)	39,985 (3.4)	239,427 (20.6)	225,485 (19.4)	589,425 (50.7)	62,702 (5.4)
2013	1,187,071 (100.0)	6,622 (0.6)	50,610 (4.3)	237,147 (20.0)	246,641 (20.8)	556,797 (46.9)	89,252 (7.5)
2012	1,059,838 (100.0)	11,971 (1.1)	58,231 (5.5)	205,541 (19.4)	235,243 (22.2)	466,790 (44.0)	82,061 (7.7)

③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입규모가 증·감되는 세입원으로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매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지난 2013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연평균 3.9%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⁸⁾ 201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신장률이 △ 1.93%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⁹⁾ 세외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됨

8)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p.25.

9)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p.30.

- 특히, 2014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액(1조 2,339억 1,700만원)보다 3,047억 5,300만원 적은 9,291억 6,400만원이 실수납 된 바
 - 미수납액 발생률(10.6%)도 직전회계연도(5.6%)보다 높고, 실수납액 대비 예산액의 비율도 직전회계연도보다 35.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써 서울의료원 매각시기가 201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3,690억원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한 세원이나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규모를 추계한 예산액과 회계연도내 실제여건이 반영된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간 차이가 상존할 수밖에 없고, 세외수입예산액을 편성할 당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여 세입규모를 추계함으로써 결국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세외수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발생하는 차이로 인하여 세외수입 추계의 부적절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바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결과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46〉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②	실수납액 ③	미수납액	징수율 ③/②	징수결정액/예산액 ②/①	실수납액/예산액 ③/①
2014	1,233,917	1,233,917	1,039,053	929,164	109,889	89.4	84.2	75.3
2013	1,692,099	1,808,985	1,990,930	1,878,510	112,420	94.4	117.7	111.0
2012	1,427,617	1,502,420	1,363,962	1,274,393	89,569	93.4	95.5	89.3

④ 지방교부세 관련

○ 2014회계연도에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되며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비교부단체로서 분권교부세가 지방교부세 수입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음.¹⁰⁾

- 분권교부세는 매년도 예산편성시 직전년도 수준인 1,2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하여 편성되나 2014회계연도의 경우, 회계연도개시 이후 행정자치부가 85억 5,600만원을 증액배정하여 2014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하여 간주처리함에 따라 분권교부세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을 1,285억 5,600만원으로 수납처리한 것임

10) 2014년 12월31일 「지방교부세법」 제3조 개정으로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당초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 또한 특별교부세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방장비확충(7억 9,000만원)을 포함한 3개 사업, 18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고 세입조치한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14회계연도 예산편성당시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음에도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서울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과소교부하여 서울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17조 6,571억 1,200만원) 중 0.7%, 1,304억 600만원이 수납된 바
- 세입감소를 최소화하고,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47〉 지방교부세 수입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년 도	과 목 명	예 산 액	실 제 수 납 액	예 산 액 대 비 실 제 수 납 액 차
2014	계	121,688	130,406	8,718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87	128,556	8,469
	특별교부세 ^{주1)}	1,600	1,850	250
2013	계	153,666	162,077	8,410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7,910	7,910
	특별교부세	33,666	34,166	500
2012	계	134,382	141,442	7,060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6,019	6,019
	특별교부세	14,382	15,423	1,041

※ 주1)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15억 3,600만원) 교부됨

⑤ 국고보조금등¹¹⁾ 관련

- 국고보조금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재원을 충당·지원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인 바
- 일반회계 세입결산결과 국고보조금등 수입은 당초 편성된 예산액(2조 4,216억 500만원)보다 419억 1,100만원 적은 2조 3,796억 9,400만원이 실제 교부되었음.
- 2014회계연도에 국고보조금등의 실제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25.2%, 4,788억 3,800만원 증액수납 되었으나 예산 편성당시 내시액이 회계연도중 감액통보 되어 직전회계연도보다 당초 편성된 예산액대비 부족수령액이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표 3-48〉 국고보조금등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액	실 제 수 납 액 (수납률)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부족수령률)
2014	2,421,605	2,379,694 (98.3)	41,911 (1.7)
2013	1,914,007	1,900,856 (99.3)	13,221 (0.7)
2012	1,587,386	1,563,421 (98.5)	23,965 (1.5)

11)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 등”은 ①국고보조금, 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으로 구성됨

○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최근 정부주도 복지정책 등의 확대에 따라 추가교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예산운용으로 국비의 지연교부나 부족교부 사례를 사전에 인지하여 추경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액을 수정하고, 필요시 매칭되는 시비 또한 감액조정하는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9〉 국고보조금^{주1)} 세입결산 ('14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실 제 수 납 액 (B)	부 족 수 령 액 (A-B)
계	2,895,461	2,829,098	△66,363
일 반 회 계	2,265,476	2,218,648	△46,828
특 별 회 계	629,985	610,450	△19,535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39,964	117,088	△22,876
교 통 사 업	12,637	12,302	△335
광역교통시설	800	800	0
주 택 사 업	20,077	20,077	0
도 시 개 발	32,296	36,972	4,676
하 수 도 사 업	15,986	14,986	△1,000
의 료 급 여	408,225	408,225	0

※ 주1) 국고보조금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에 준하여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의 ①국고보조금, ②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중 “①국고보조금” 예산액으로 한정하고, 결산서상 백만원 미만 절사한 것임

- '1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세입결산결과 2조 8,954억 6,100만원 편성되었으나 2조 8,290억 9,800만원이 실제 수령되어 당초예산액보다 △663억 6,300만원 부족수령 된 바

-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한 국고보조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면 사업지연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부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사업량을 회계연도중 수정하여 통보함으로써 대응편성 되는 세출예산의 과부족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당초 내시된 국비가 적기에 교부되어 대응편성된 시비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3) 특별회계 세입결산¹²⁾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8조 3,413억 4,300만원)의 98.7%, 8조 2,295억 9,300만원이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203억 900만원 감소된 1,117억 5,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음

〈표 3-50〉 특별회계 세입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14	8,341,343	8,229,593	98.7	111,750	1.3	1,930	109,819
2013	8,626,468	8,494,409	98.5	132,059	1.5	1,491	130,567
2012	7,308,228	7,201,245	98.5	106,982	1.5	4,544	102,438

-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0.2% 포인트 감소된 것으로써 결손처분은 지난회계연도보다 4억 3,900만원 증가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07억 4,8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12) 9개 기타특별회계, 2개 공기업특별회계

〈표 3-51〉 특별회계별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명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미 수 납 액		
				계	결손처분 (미수납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대비)
소 계		8,341,343	8,229,593 (98.7)	111,750	1,930 (1.7)	109,819 (98.3)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2,312	2,312 (100.0)	-	-	-
	상수도사업	853,453	827,118 (96.9)	26,335	659 (2.5)	25,675 (97.5)
기타특별	도시철도건설	1,142,233	1,142,233 (100.0)	-	-	-
	교 통 사 업	1,356,463	1,314,971 (96.9)	41,491	976 (1.9)	40,515 (98.1)
	광 역 교 통	149,836	127,088 (84.8)	22,747	-	22,747 (100.0)
	주 택 사 업	1,468,802	1,459,133 (99.3)	9,669	-	9,669 (100.0)
	도 시 개 발	1,472,281	1,472,281 (100.0)		-	
	하 수 도	836,504	825,195 (98.6)	11,308	294 (2.6)	11,014 (97.4)
	집 단 에 너 지	212,450	212,252 (99.9)	198		198 (100.0)
	의 료 급 여	828,149	828,149 (100.0)	-	-	-
	한 강 수 질	18,857	18,857 (100.0)	-	-	-

○ 특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1,117억 5,000만원)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미수납액의 주된 발생사유에 해당되며 교통사업특별 회계를 포함한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이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전체 미수납액(854억 1,500만원)중 98.3%, 839억 4,5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교통사업특별회계

를 포함한 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2〉 기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계산압류중	기 타
기타특별회계	83,945	2,073	525	39,587	151	29,097	12,509
교통사업특별회계	40,515	1,789	178	9,155	139	27,849	1,402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2,747	-	-	11,485	-	154	11,106
주택사업특별회계	9,669	-	-	9,669	-	-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014	283	346	9,278	12	1,092	-

- 특히,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특정 특별회계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발생규모도 감소되지 않고 있는 바 각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특별회계의 세입원이 법률 등에 근거하거나 회계간 전·출입으로 주요 세출재원이 확보되고 있어 통행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미수납액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목중 전년도 이월사업비(보전수입 등) 1,564억 3,1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세입결산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세입과목중 ①**전년도 이월사업비**에는 지난 '13회계연도 세출사업중 '14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6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세입과목인 ②**국고보조금**에도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6억 7,6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세입결산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바
 - 동 특별회계의 세입결산결과에는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6억 7,600만원이 ①**전년도 이월사업비**와 ②**국고보조금**에 중복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6억 7,600만원은 '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교부¹³⁾하여 '14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된 것이나 동 국고보조금(26억 7,600만원)은 '13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13회계연도로 세입조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회계연도로 세입처리한 바
 -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납폐쇄('14. 2.28) 이전에 서울시로 교부 되었음에도 다음회계연도 세입으로 임의 처리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5조와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됨

1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399 ('14. 2.12)

○ 또한 동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은 실제수납액이 46억 7,600만원이나 기 검토된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26억 7,600만원)을 제외하면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20억원이 수납된 것임

- 그러나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20억원의 경우, '15년도 사업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임에도 '14년도분으로 세입조치한 바 '14회계연도 세입결산에는 예정에 없던 20억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 처리해도 무관할 것이나 '15회계연도에는 20억원이 미수납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미리 앞당겨 세입조치한 20억원은 세출예산으로 연동되어야 할 것이나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이미 25억원의 사고이월액이 누적되어 있어 연간사업물량을 고려할 때 '15회계연도말 불용후 국비반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결산은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의 집행여부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수정을 가할 수 없어 결산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후 제출해야 하는 바 세입결산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세입결산결과를 보고한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8,534억 5,300만원)의 96.9%인 8,271억 1,800만원이 실수납되어 세출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사료됨

〈표 3-5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세 입	853,453 (100.0)	827,118 (100.0)	26,335 (100.0)	660 (100.0)	25,675 (100.0)
당해연도분	828,755 (97.1)	810,591 (98.0)	18,164 (69.0)	0 (0)	18,164 ^{주1)} (70.7)
지난년도 수입	24,698 (2.9)	16,527 (2.0)	8171 (31.0)	660 (100.0)	7,511 (29.3)

※ 자료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4210 (2015. 5.21)

주1) 미수납액중 당해연도분에 대한 다음연도이월액은 181억 6,400만원 발생한 바 발생 사유는 ① 영업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 96.51%, 175억 3,000만원, ② 기타 2.59%, 4억 7000만원, ③ 재산압류 0.42%, 7,700만원 등임

- 특히, 당해연도분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이 지난 회계연도에 이어 발생되지 않은 바 향후에도 당해연도 미수납액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3 세출결산 관련

(1) 불용액¹⁴⁾ 관련

-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7,490억 9,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22억 2,900만원 증가한 것임
- 불용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14) '14년 11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된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조정되었고, 행정자치부의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에도 “집행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불용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으로 표기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본조신설 2014.11.28.]

-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입예산액
- 나. 이체 등 증감액
- 다. 세입예산 현액
- 라. 징수결정액
- 마. 수납액
- 바. 불납결손액
-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예비비 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 바. 세출예산 현액
- 사. 지출액
- 아. 다음 연도 이월액
- 자. 집행잔액

③~④ 생략

○ 다만,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해 불용액 발생 규모가 지적되고 있고, 추경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 하였음에도 불용률 감소비율이 0.2%포인트만 감소된 바 감추경 대상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4〉 불용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2012
예산현액	25,522,762	24,355,835	22,689,515
불용액 (불용률)	749,091 (2.9)	746,862 (3.1)	754,221 (3.3)
일반회계 (불용률)	393,882 (2.3)	368,166 (2.3)	385,317 (2.5)
특별회계 (불용률)	355,208 (4.4)	378,696 (4.5)	368,904 (5.2)

※ 불용액 비율은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산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특별회계(9개) 포함.

〈표 3-55〉 불용액 발생사유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예비비
2014	749,091 (100.0)	166,277 (22.2)	4,546 (0.6)	406,471 (54.3)	26,044 (3.5)	145,753 (19.5)
2013	746,862 (100.0)	157,584 (21.1)	35,662 (4.8)	476,524 (63.8)	16,849 (2.3)	60,243 (8.1)
2012	754,221 (100.0)	179,406 (23.8)	29,620 (3.9)	470,029 (62.3)	14,295 (1.9)	60,871 (8.1)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중 54.3%, 4,064억 7,1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인 바 사업계획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집행잔액중 시설비의 경우,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나 결과적으로 실집행예산보다 과다한 예산편성은 불용액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액을 산정함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또한 불용액 발생사유중 22.2%, 1,662억 7,7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인 바
 - 예산편성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예산집행 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시민의 불편은 증가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시 회계연도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특히,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복지건강본부(368억 2,100만원), 도시교통본부(365억 6,200만원), 도시안전본부(346억 2,500만원), 도시재생본부(119억 6,300만원), 경제진흥본부(115억 2,100만원), 주택건축국(99억 600만원) 등은 불용액 발생 원인을 검토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56〉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불용액 ^{주2)}	불용액 발생 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749,091 (100.0)	166,277 (22.2)	4,546 (0.6)	406,471 (54.3)	26,044 (3.5)	145,753 (19.5)
도시안전본부	137,807 (18.4)	34,625	1	101,817	9	1,355
기획조정실	110,348 (14.7)	197	35	4,991	-	105,125
복지건강본부	99,340 (13.3)	36,821	32	44,048	18,439	-
상수도사업본부	59,803 (8.0)	2,556	3,035	46,240	-	7,972
도시교통본부	51,213 (6.8)	36,562	-	9,604	484	4,563
기후환경본부	48,038 (6.4)	3,334	352	38,064	1,454	4,834
경제진흥본부	31,202 (4.2)	11,521	266	18,196	1,219	-
도시재생본부	28,957 (3.9)	11,963	-	12,227	13	4,754
푸른도시국	25,229 (3.4)	3,981	149	20,574	525	-
주택건축국	23,836 (3.18)	9,906	-	13,455	-	475
평생교육정책관	23,796 (3.18)	2,021	-	20,683	1,092	-
도시기반시설본부	22,144 (3.0)	34	-	5,474	-	16,636
문화체육관광본부	19,760 (2.6)	5,780	181	12,830	969	-
여성가족정책실	17,454 (2.3)	80	-	15,641	1,733	-
행정국	15,716 (2.1)	583	-	15,121	12	-
한강사업본부	5,030 (0.7)	71	-	4,959	-	-
재무국	4,535 (0.6)	145	-	4,390	-	-
소방재난본부	4,056 (0.54)	20	-	3,944	92	-
서울시립대학교	3,843 (0.51)	-	-	3,843	-	-
시민소통기획관	2,965 (0.40)	2,521	-	444	-	-
의회사무처	2,921 (0.39)	2,217	94	610	-	-
정보기획관	2,781 (0.37)	40	-	2,738	3	-
교통방송	1,670 (0.22)	51	-	1,580	-	39
서울혁신기획관	1,245 (0.17)	42	114	1,089	-	-
인재개발원	1,080 (0.14)	446	-	634	-	-
서울역사박물관	1,011 (0.13)	68	45	898	-	-
시립미술관	944 (0.12)	76	239	629	-	-
도시계획국	763 (0.10)	106	-	657	-	-
비상기획관	584 (0.08)	-	-	584	-	-
도시공간개선단	557 (0.07)	447	-	110	-	-
기술심사담당관	164 (0.022)	-	-	164	-	-
감사관	157 (0.021)	31	-	126	-	-
마곡사업추진단	80 (0.011)	32	3	45	-	-
대변인	62 (0.008)	-	-	62	-	-

※ 주1 : 지역개발기금에서 발생한 불용액(20억 6,700만원)은 기획조정실에 포함됨
 주2 : (괄호)는 전체 불용액중 각 실·본부·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

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교통개선 분담금 계정)사업은 낙교사고에 따른 교량하부공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재개 승인('14. 9)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인하여 보상비 등 예산현액 143억 4,200만의 33.6%, 48억 2,300만원이 불용된바

-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반대로 '14년도 9월 제1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97억 2,500만원중 44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나, 세출결산결과 48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용예산액에 대하여 추경시 보다 적극적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확충**¹⁵⁾은 난지물재생센터(4면) 및 양주시 장흥면(1면)에 조성할 예정인 야구장이 개발제한구역(GB)에 위치하는바 투자심사¹⁶⁾, 공유재산 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전절차 이행에 3년('14. 6~'17. 6)이 소요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현액 131억원의 15.8%, 20억 8,100만원¹⁷⁾이 불용되었음

15) 체육진흥과-3045('14. 3.12) "201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실행계획" 야구장 10개면

- 난지물재생센터(4면) : 14억 7,300만원, '15년 4월 사전절차 진행중
- 가양유수지(1면) : 5,000만원, '14년 추진완료
- 구의야구공원(1면) : 2억 5,000만원, '14년 추진중단(지역주민 민원)
- 서울대공원(3면) : 3면 -> 2면 축소, '15년 4월 사전절차 진행중
- 양주시 장흥면(1면) : 7억 4,300만원, '14년 투자심사 완료, '15년 4월 착공예정
(※ 서울시 부지부족으로 양주시와 공동조성·이용을 위한 MOU체결)

16) '15년 3월 23일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4면) 투자심사 통과함

17) 불용세부내역 : ①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784 소재 야구장(7억 4,300만원), ②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야구장(5억 6,000만원), ③ 동북권 체육시설 도시계획용역(5억원), ④ 기타 집행잔액(2억 7,800만원)

〈표 3-57〉 2014계연도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
도시안전본부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 사 대 교 건 설)	63,586	27,622	43.4	4,411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213,204	25,921	12.2	-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9,308	22,876	78.1	-
도시안전본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0,000	20,000	100.0	-
복지건강본부	기 초 노 령 연 금 지 급	879,119	18,697	2.1	-
복지건강본부	기 초 생 활 수 급 자 급 여	613,524	18,018	2.9	-
주 택 건 축 국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 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9,906	9,906	100.0	-
평생교육정책관	친 환경 무 상 급 식 지 원	149,031	9,897	6.6	-
주 택 건 축 국	재 개발 임 대 주 택 매 입	237,310	8,569	3.6	-
행 정 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40,821	8,556	21.0	-
복지건강본부	자 활 근 로 사 업	61,792	7,777	12.6	-
도시안전본부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 전 부 담 금	6,228	6,228	100.0	-
여성가족정책실	가 정 양 육 수 당 지 원	321,523	5,557	1.7	-
도시안전본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4,342	4,823	33.6	3,666
여성가족정책실	영 유 아 보 육 료 (보 조)	892,235	4,677	0.5	-
도시안전본부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62,610	4,254	6.8	-
도시재생본부	재정비축진사업 융자금 지원	15,000	4,104	27.4	-
복지건강본부	중 증 장 애 인 연 금	82,708	4,058	4.9	-
복지건강본부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조성	4,000	4,000	100.0	-
기후환경본부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	11,358	4,000	35.2	-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 제외

※ 자료근거 : 재무과-26457('15. 5.22)

- 도시안전본부 중량물재생센터 소관 **중량물재생센터 운영**은 총인제거용 약품비 및 중량천유지공급시설 약품비가 감소함에 따라 재료비 예산현액 76억 3,300만원의 25.1%, 19억 1,900만원이 불용¹⁸⁾된 것으로

〈표 3-58〉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예산집행 현황('14)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세부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재료비	소 계	7,633	1,919	25.1
	①총인제거용 약품구매	1,045	1,045	100.0
	②중량천유지 공급시설 약품구매외 9종	6,588	874	13.2

- ① 총인제거용 약품구매의 경우, 시운전기간('14. 1~2) 동안 발생된 약품비를 시공사가 부담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및 총인시설 설치('19.12완공예정)를 위한 시설개선기간동안 응집제사용 감소로 인하여 소요예산 10억 4,500만원 전액 불용된바
 -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및 시설개선 관련 재료비 불용은 직전회계연도 불용(38억원)과 유사한 사유로 불용되었고, 시운전기간 동안의 약품비를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14년도 예산편성시 사전에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18) '13회계연도에 시운전 지연 및 시설개선에 따른 응집제투입량감소로 약품구입비 등 38억원이 불용됨

- 아울러, 산출기초중 ② 중량천유지공급시설 약품구매 등의 경우, 당초 1.5ppm의 유입수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0.64ppm의 양호한 유입수가 들어옴에 따라 약품구매비가 감소하여 예산현액 65억 8,800만원중 8억 7,400만원이 불용된바

- 이는 과거의 산출근거인 '09년 6월 유입수 기준(1.5ppm)¹⁹⁾을 관행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예산 불용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예산편성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13회계연도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수질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에도 '14회계연도의 경우, 별도 공문 발송없이 연말 한차례 환경부 방문('14.11.26)을 통하여 수질기준 완화를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판단됨²⁰⁾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소관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의 경우, 신규 LNG발전설비 증가²¹⁾로 인한 전력 공급과잉으로 국내 민자발전사에서 신규투자를 보류함에 따라 민자발전사에 발전설비를 공급하는 지멘스사의 실제고용인원이 감소(당초계획 169명→119명)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 37억 3,200만원의 40.7%인 15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19) 중량천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10. 8) p53에서 T-P 1.5ppm을 적용하였으나, 이 수치는 2009년 6월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0) 환경부로부터 관련법 개정 불가한 것으로 회신됨 (환경부, 생활하수과-1776, '15. 5.12)

21) 산업자원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13~'27) : 전력수요를 높게 산정함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 등 신규 화력발전을 다수 허가

○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소관 **마을기업 육성**은 '14년 1월 행정자치부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변경을 통하여 수익성 심사, 현지심사 및 지정심사 등을 강화²²⁾하였고, 공간임대보증금(8천만원)의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마을기업 신청자가 감소하여 사업비 지원은 당초 35개에서 25개, 공간임대보증금은 당초 30개에서 12개로 감소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현액 28억 7,200만원의 45.4%, 13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²³⁾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14년 1월부터 마을기업 심사기준이 엄격해져 마을기업 대상자 감소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나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추경하여 소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소관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는 주민동의로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 보조신청 후 적법한 사용비용인지 검증하는 절차에 일정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현액 25억 3,800만원의 56.30%, 14억 2,900만원이 불용되나

- 동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14억 5,0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14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 25억 3,800만원 중 10억 8,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예산집행률이 낮게 나타났

22) 2013년도 경우,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 30점,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점,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3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점이었으나, 2014년도의 경우,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 적절성 20점,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점,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4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점으로 변경되었음(2014년도 안행부 마을기업 지침변경, p2)

23) 지난 '10년 ~ '14년 12월까지 매출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전체 마을기업 165개소의 18.8%인 30개소가 영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음

으나, 매년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해산비율²⁴⁾을 높게 추정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편성후 회계연도말 감추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현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소관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의 경우,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에 따라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²⁵⁾ 및 양부모 자격강화로 국내입양이 감소하였으며, '14년부터 도입된 입양축하금제도가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당초 379명에서 152명으로 감소하였고, 고등학생 교육비지원²⁶⁾은 당초 475명에서 19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 53억 8,200만원의 25.0%, 13억 4,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4) '14년 12월말 기준 추진위원회 총 49개소중 구성 40개소, 해산 9개소(해산비율 18.3%), 해산된 9개소 사용비용 신청함

25)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6)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14. 1. 1시행)」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

〈표 3-59〉 입양아동 가족지원 집행실적('14)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사회보장적 수혜금		5,382	4,035	1,347	25.0
국비40% 시비60%	입양아동 양육수당	3,497	2,825	671	19.2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506	414	91	18.1
	입양비용(수수료)지원	901	541	359	39.9
	숙려기간 모자지원	177	111	66	37.1
시비100%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300	142	158	52.5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소관 **공공관리사업 지원**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²⁷⁾에 따라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장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직접 지원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예산현액 8억 500만원의 70.1%, 5억 6,5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3년 8월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10개 구역을 목표로 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보류 혹은 해제 등이 발생되어 실제 9개소로 감소하여 불용이 발생한 바
- 당초 자치구에서 요청되었던 중규모 사업구역(5,000만원이상)이 회계연도중에 소규모 사업구역(3,500만원이하)으로 대체됨에 따라 불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자치구의 사업수요조사시 소규모 사업구역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소액의 불용액이라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에도 실태조사 후 사업추진 보류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8억원의 87.7%, 7억원, '12회계연도에는 유사한 사유로 예산현액 1억 9,300만원 전액 불용된 사례가 있음에도 '14회계연도에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바 향후 자치구 수요조사 후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후 실제 집행가능액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소관 **재정비축진지구 공공관리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²⁸⁾에 따라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장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직접 지원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8,000만원의 92.1%, 10억 8,900만원이 불용된 바

- '13년 8월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11개 구역을 목표로 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 및 사업추진 보류 혹은 해제 등으로 실제 2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동 사업의 경우, 마천 5구역 등 5개 구역²⁹⁾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14년 7월 이전에 결정되어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추경하여 소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합리적 결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소관 **주거급여개편 관련 시범사업**은 '14년도 예산편성시 국토교통부('13.10기준)는 1만 1,000가구³⁰⁾를 목표로 하였으나, LH공사가 실시한 현지조사에서는 7,894가구로 조사되어 예산현액 23억 2,100만원의 39.8%, 9억 2,400만원이 불용됨바
- 대상인원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정확한 대상인원 선정을 요청함으로써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의 경우, 기본계획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기본계획 단계에서 용역업체가 파산³¹⁾함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예산현액(8억 8,400만원)의 88.3%, 7억 8,100만원 불용되었음

29) 마천 5구역, 거여 3구역, 흑석 10, 증산 1, 천호 7구역

30)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1339('14. 5. 9) “주거급여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및 교육계획 알림”
- 서울의 경우, 국고보조금 15억 8,200만원, 기준보조율 50%

31) 하천관리-20051('14.12.22) “강남역일대 배수개선대책 검토회의(2차) 결과보고”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공급 확대(특)**는 민간대행사업비³²⁾ 예산현액 8억 4,000만원의 76.0%, 6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³³⁾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 182억 6,500만원중 30억원이 불용된바

- 이는 재산가액 3억 1,300만원 이하 등의 사업참여 배제조건³⁴⁾ 등으로 인하여 당초 2,047명에서 1,681명으로 감소하였고, 취업 및 창업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률이 전년도 11.6%에서 20.8%로 상승³⁵⁾함에 따라 불용된 것임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소관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은 당초 공공자전거 3,000대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정책시민협의회 개최('14. 2), 전문가 자문('14.10)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7억 9,100만원의 67.0%, 5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32)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132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33) 신정3지구 열공급시설('09. 4 착공~'11. 6 준공)에 대한 용지매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서울시가 사용료('11. 6~'14. 8)를 SH공사에 지불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14. 8), 협의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었고, 열송수관 설치 구간축소(396m→374m)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임

34) 2014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4. 1)

35) 2014년 중도탈락율 20.8%(=442명/2,123명), 2013년 중도탈락율 11.6%(=474명/4,079명)

○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신청요건을 완화³⁶⁾하였음에도 당초 235명에서 최종 4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현액 7억 2,200만원의 80.3%, 5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과 동시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대상자 선정기간이 최소 1개월이 소요됨³⁷⁾에 따라 신청자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당초 목표량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추진의 의욕을 앞세워 사업목표를 과다하게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노량진배수지 도로구조 개선사업**의 경우,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에서 부결('14. 8)³⁸⁾됨에 따라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 8,8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의 경우, 교통규제심의 부결('14. 8)되어 사실상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였음에도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추경하여 소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됨

36) '13년 신청요건 :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나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자 → '14년 신청요건 :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서울형부양의무자 기준 해당자

37)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신청과 동시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제출

② 공적자료 조회 등 실태조사 실시(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 => 대략 1개월 소요 후 결정 통지

38)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3773('14. 8.28) : 내리막길 속도제한 불가, 중앙선절선시 사고위험 증가

-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은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3억 5,900만원의 98%, 3억 5,200만원이 불용된바
 - ①환경부가 서울시 자체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 ②서울시가 '15년 1월부터 수도권과는 별도로 서울시 지역을 대상으로 예보하면 자체시스템 구축계획을 재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³⁹⁾, ③환경부가 '14년 8월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고, 예보 방식을 변경통보('14. 8)⁴⁰⁾함에 따라 ④서울시가 자체시스템구축을 취소('14. 8)하여 전산개발비중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앞서 환경부 예보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협의를 선행하였다면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필요시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조정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례로 사료됨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소관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 운영(의류봉제)**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12억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한 사업이나 뉴타운지역 해제이후 불확실한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초 건물매입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⁴¹⁾함에 따라 예산현액 8억 5,000만원의 29.4%, 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39) 서울시 자체예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환경부와 서울시 예보가 상이할 경우에 초래되는 시민혼란 등을 이유로 서울시 계획 재검토 요청('14. 7.14, 환경부 회의)

40)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228('14. 8.18) “미세먼지(PM2.5) 예보제 운영계획 알림” 환경부가 수도권 단일예보방식에서 서울지역 별도예보방식으로의 변경통보함

41) 경제정책과-4284('14. 4. 7) “성북 제조업 지원센터(의류봉제) 건립계획 검토보고”

- 동 사업의 경우, '14년도에 당초 편성된 예산액(12억원) 중 특화 산업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예산변경('14. 4)⁴²⁾함에 따라 불용예상액을 감소시킨 측면은 있으나, 계획변경에 따라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조정하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소관 **공공정비계획 수립**은 당초 15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자치구별 정비구역 실태조사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예산이 미확보 되었고, 주민동의율이 낮은 7개 자치구는 구역해제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현액 6억 600만원)중 40.4%, 2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에도 실태조사 후 구역해제 및 자치구 예산미확보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32억원)의 88.1%, 28억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14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구역 등에 대해서 감추경을 하였다면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함몰 탐사장비 구매**는 동경도 동공탐사기술 벤치마킹('14. 9.23) 이후 “1차 탐사장비(GPR⁴³⁾)” 2

42) 경제정책과-12284('14.10.21) “특화산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변경계획”

43) GPR(Ground Penetrating Rader)은 지하를 관통해 보는 레이더로, 지하 수 미터 내부의 이상물질

대 구매에서 “1차 탐사장비(GPR)” 1대와 “2차 탐사장비(내시경)”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⁴⁴⁾함에 따라 예산현액 9억원의 26.4%, 2억 3,8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실천 강화**는 주택가 재활용수거대를 연간(4월~10월) 1.128개를 설치할 계획⁴⁵⁾으로 기타보상금 6억원을 포함하여 17억 2,5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나 상반기중 123개만 설치되어 당초계획을 수정⁴⁶⁾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타보상금(4억 5,800만원)의 36.6%, 1억 6,8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기타보상금중 불용액 발생률이 높은 것은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홍보 등 사전준비부족에 1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타보상금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10월 예산전용(1억 4,100만원)을 한바 있어 예산 전용⁴⁷⁾이 없었을 경우, 불용액 발생률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됨

상태(구조물, 광택, 암반특성)를 반사된 전자파로 확인 가능한 장비

44) 도로관리과-16327('14.10.28.) “도로함몰 탐사장비 구매예산 집행계획”

45) 자원순환과-4492('14. 3. 22) “Zero Waste, Seoul 2030 실현을 위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운영 계획”

46) 자원순환과-9867('14. 7. 4) “14년 하반기 Zero Waste, Seoul 2030 실현을 위한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대운영 계획”

- 기존 대행업체가 문전수거하는 방식과 병행하였으나, 동단위 이상의 전면 거점방식으로 전환추진됨

47) 자원순환과-16550('14.10.29)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동절기 안전대책”

- 예산전용 : 기타보상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폐지수집어르신 등 자원관리사 동절기 방한장구 지원)

○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3억 4,600만원의 49.8%, 1억 7,200만원이 불용된바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 '13년 5월 입법예고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⁴⁸⁾을 근거로 현행 목조문화재(125개소) 위주에서 지정문화재(1,520개)까지 확대하여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된 것임
-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란 법률의 제·개정 혹은 폐지시 국민들에게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청취 및 의견반영 절차로써 실제 법률로 성립하기까지는 국회통과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에 위배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 향후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형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6억 9,400만원)의 38.5%, 2억 6,700만원이 불용된바

48)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14조 5항(화재 및 재난방지 등)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안된다. 관리단체 등은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 구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변경⁴⁹⁾하고 사업기간을 변경⁵⁰⁾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예산현액(3억 7,700만원)의 37.0%, 1억 4,000만원이 불용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예산현액(1억 9,000만원)의 53.0%, 1억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대상 감소로 기정예산 20억 8,700만원중 6억 700만원을 감추경하여 편성의 오류를 희석시킨 것으로 사료되는 바 '14회계연도에도 사업기간 혼동⁵¹⁾ 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예산현액(6억 9,400만원)의 38.5%가 불용된 것임
 - 따라서 예산편성시 신규 대상기관의 예산지원액을 편성하지 않고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였다면 불용액 발생률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난 '13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중 '14회계연도에 시설비가 불용된 사업으로는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예산현액 대비 44.4%, 275억 9,200만원⁵²⁾),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예산현액 62억 2,800만원 전액⁵³⁾),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예산현액 대비 34.8%, 48억 800만원⁵⁴⁾),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예산현액 대비

49) 문화정책과-9881('13. 7.29)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 개선계획』

50) 사업기간 : 당초 “11월~다음해 10월”에서 “1월~12월”로 변경

51) 마을예술창작소의 사업기간 혼동 관련(문화정책과-2681, '15. 3. 2)

①매년 사업기간이 11월에서 차년도 10월까지이나,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는 1~12월까지로 혼동

②보조금 정산시, 사용금액 혼동 ③정산보고서를 2회 작성(1회 : '13.11~12월, 2회 : '14.1~10월)

52) 당초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에 편성된 국비 275억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불용됨

53)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 경우, 난지물재생센터 증설에 대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지연으로 예산현액 전액 불용

54)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사업은 주민반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 및 붕괴사고로 공사지연됨

14.9%, 27억 5,200만원),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예산현액 대비 20.7%, 30억 9,500만원⁵⁵⁾),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예산현액 대비 19.6%, 24억 8,700만원), **서부트럭터미널앞지하차도 건설**(예산현액 80.6%, 25억 3,700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 사업**(예산현액 대비 12.5%, 22억 1,100만원)으로 검토됨

- 동 불용 사례의 경우, 지난 2013회계연도와 발생사유에 차이가 있으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지난 회계연도에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이 다음회계연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과정에서 감액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들의 경우,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시 감추경하여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개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55) 서울재사용 플라자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준공지연('14.10 준공)에 따라 사업자 선정 등 계약 지연

〈표 3-60〉 직전회계연도 사고이월액 발생사업중 '14회계연도 불용액(20억원 이상 시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도시안전본부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 사 대 교 건 설)	1,413	62,188	27,592	44.4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 구 역 보 전 부 담 금	6,228	6,228	6,228	100.0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9,017	13,817	4,808	34.8
기후환경본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120	14,985	3,095	20.7
푸 른 도 시 국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7,095	19,481	2,752	14.9
도시안전본부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 하 차 도 건 설	3,148	3,148	2,537	80.6
푸 른 도 시 국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5,483	13,116	2,487	19.6
도시재생본부	주 민 참 여 형 주 거 지 재 생 사 업	4,504	17,734	2,211	12.5

※ 자료근거 : 재무과-26457('15. 5.22)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소관 **아리수품질확인제**는 수질검사시 1차검사 항목의 합격률이 높아 2차 추가검사가 불필요하여 시약구매풀이 감소함에 따라 일반재료비 예산현액 6억 8,000만원의 46.0%, 3억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에도 일반재료비 예산현액 7억 7,400만원의 33.9%, 2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합리적인 2차검사 물량산정 등의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소관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염소농도를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0.1~0.3mg/L)”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소금사용량을 감소시킴에 따른 일반재료비(소금구매) 예산현액 1억 4,400만원의 88.2%, 1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다만, '10년 12월에 수립된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에서 소독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염소농도가 0.1~0.3mg/l로 규정되어 있어 소금사용량 감소시기를 앞당겼더라면 소금구매를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편성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됨

②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4회계연도에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중 25개 사업이 기편성된 예산전액이 불용되었음⁵⁶⁾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은 은평구 및 종로구 간 협상지연으로 보상절차가 미이행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현액 200억원 전액 불용되었음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소관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은 당초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변경⁵⁷⁾됨에 따라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으로 20억 6,900만원을 전용('14.12)하고, 출자금 예산현액 99억 6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56)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중 재무활동경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57) 서울시 임대주택과-13701('14.12. 3)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전용을 통한 회계간 이관 :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정비과) → 주택사업특별회계(임대주택과)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소관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14년말기준 마포구 및 고양시와의 협의가 지연되었고, 국토교통부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계획과의 연계검토를 위하여 난지물재생센터 증설심의('14. 3)⁵⁸⁾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 62억 2,8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소관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조성**은 서울시-파주시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사업중단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 4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소관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12년 6월 시스템구축 관련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신고⁵⁹⁾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⁶⁰⁾가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 9억 5,7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⁶¹⁾
 - 동 사업의 경우,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처리기간이 5년⁶²⁾으로 관련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이미 지난 '13회계연도로 부터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추경한 후 필요시 전용 등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5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2014 .3.27)

59) 교통정보센터-7018('12. 6.12)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울시 2012년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

60)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법정기간은 5년임

61) '13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후 '14년도에 사고이월

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

-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소관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은 국가문화재인 서대문형무소 창고를 추모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주체인 광복회로부터 발굴조사비 4억 200만원을 확보('13.12)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4억 2,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소관 **도로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기본설계사업**은 투자심사 결과('14. 9) 간선도로 지하에 개인용 주차장 건설이 타당한지 여부 등의 사유로 재검토됨에 따라 시설비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소관 **영동대교 복단고가차도 철거**는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설계비 예산현액 3억원 전액 불용되었음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소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자치구의 매칭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현액 4억 3,800만원의 96.0%, 3억 4,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의 교체신청이 없이 민간융자금 예산현액 2억원 전액 불용되었음
- '1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유로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예산현액 5억 3,000만원의 46.2%, 2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융자금은 예산현액 4억원의 82.7%, 3억 3,100만원이 불용된 사례가 있는바

- 동 사업이 매년 자치구비 미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 편성 전 구비확보 여부를 조사하여 반영함으로써 불용액을 감소시키려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은 당초 미래유산에 대한 보수비 지원방식⁶³⁾에서 시민의 자발적 보존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⁶⁴⁾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 2억원 전액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노력에 대해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하였으나, 예산편성전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와 같이 타사업에서 직접적 재정지원에서 홍보 등 간접적 지원위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불용액 발생규모가 최소화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시사편찬사업**의 경우, 시사편찬위원회 지붕교체 공사전 누수원인 규명과 함께 전면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14.10.27)에 따라 시설비 예산현액 1억 9,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당초 기정예산의 통계목중 시설비 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증액조정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공사진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적정 공사범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6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 - 가치발견·보존 및 활용 추진 방안('12. 6)”

64) 문화정책과-13427('14.10.31)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 종합계획”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물류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물류센터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14. 1)⁶⁵⁾함에 따라 시스템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액을 감액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소관 **음식폐기물 원천감량화사업**의 경우,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13)” 및 “공공처리 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용역('14)”과 과업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⁶⁶⁾되어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전액 집행되지 아니한바
 - 현행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서 학술용역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처럼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사유로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바 향후에는 학술용역 사전심사시 중복성 여부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동 사업과 같이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소관 **불법공산품 단속강화 및 대부업 관리 감독강화사업**은 다단계·대부업 등의 분야에 대한 사법경찰권한을 자치단체 행정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65) 소상공인지원과-835('14. 1.20) “서울시 중소기업물류센터 경영정상화를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물류센터 활성화 지원계획”

66) 생활환경과-16917('14.12. 5)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사항 보고”

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각각 국내여비 예산현액 2,000만원 전액,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 960만원 전액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비록 전체 서울시 예산규모에 비해 소액이라 할지라도 서울시가 법률개정 이전에 이를 확신하고, 관행적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한 사례에 해당되는바 향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사업주관부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과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한 결과 계획변경,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집행불능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전액 미집행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행가능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편성된 예산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발생한 실·국에 대하여 주의조치하여 유사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3-61〉 '14회계연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도 시 안 전 본 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0,000	20,000
주 택 건 축 국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9,906	9,906
도 시 안 전 본 부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6,228	6,228
복 지 건 강 본 부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4,000	4,000
도 시 교 통 본 부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900	2,900
푸 른 도 시 국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동물복원 증식	1,500	1,500
복 지 건 강 본 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916	916
도 시 교 통 본 부	도로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기본설계	350	350
도 시 안 전 본 부	영동대교 복단 고가차도 철거	300	300
문화체육관광본부	안중근 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	250	250
도 시 교 통 본 부	주정차위반 알리미 서비스	250	250
문화체육관광본부	종묘대제 지원	150	150
경 제 진 흥 본 부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	100	100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운영	100	100
문화체육관광본부 (서울도서관)	김포가압장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0	100

※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세부사업중 재무활동경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재무과-26457, '15. 5.22)

③ 예산현액 5억원 이하 소액사업의 불용 검토

-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결과 예산현액 5억원 이하 세부사업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여 세출예산의 집행결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은 수요예측 등에 대한 감사원지적('13. 8)과 기획재정부 협의과정('14. 8)⁶⁷⁾에서 민자사업 추진절차가 당초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수요예측 재조사로 변경⁶⁸⁾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수수료) 예산현액 1억원의 50%,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기정예산 3억 4,500만원중 2억 4,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5,000만원만 지출('14.11)됨에 따라 불용액(5,000만원)이 발생된바 불용된 예산규모가 소액이라 할지라도 추경시 보다 현실적인 감추경 판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소관 **서울역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9,900만원의 65.0%, 6,500만원이 불용된바
 -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사업에 해당하여 예산집행에서 불용이 발생하여도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

67)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486('14. 8. 7) “민간투자사업 조치방향 및 관련 법규 적용 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

68)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재조사 계획 (2014.11)

나 동 사업은 예산확보후 실제 사업추진은 서부도로사업소 예산으로 추진된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가능한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예산확보후 검토라는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로 사료됨

○ 그밖에도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등을 포함한 18개 사업의 경우, 서울시 전체 예산액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되나, 소액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이 누적될 경우 전체 불용액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소규모 불용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은 '1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변경통보⁶⁹⁾로 인하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총 4.67km)」의 민자사업구간인 중랑IC 2km 구간이 제외됨에 따라 설계비 등 예산현액 3억원의 46.6%, 1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청년여성이 2개 이상의 희망직종을 체험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⁷⁰⁾한 후 참여자는 증가(당초 88명 → 93명)한 반면, 참여기업은 감소(당초 88개 → 78개)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 3억 7,700만원의 46.9%, 1억 7,7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69)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2237('14. 8. 8)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협의”

70) 여성가족정책담당관-10607('14. 5.28) “2014년 여성잡투턴십 프로그램 추진계획”

- '14년 12월 동 사업의 불용예산액 7,200만원을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으로 예산전용한바 예산편성시 인턴십 참여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를 더욱 정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로 사료됨
-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 80명에서 55명으로 감소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 1억 1,800만원의 67.0%,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3-62〉 예산현액 5억원이하 세부사업 불용현황 (불용률 50%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계		2,454	1,525	
한강사업본부	암사 초록길 조성(※'13회계연도 이월액)	200	168	84.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377	177	46.9
도시안전본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00	140	46.7
문화체육관광본부	한강 안양천 예술제 지원	150	120	80.0
복지건강본부	환자권리옴부즈만 설치 운영	133	120	89.7
도시안전본부	장승배기~여의도간 고가도로 건설	159	108	67.7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시설확충	150	100	66.7
복지건강본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118	79	67.0
도시교통본부	디지털은행기록장치 설치지원(버스)	95	76	79.6
도시안전본부	양평교 진입램프 설치공사	100	68	68.0
도시교통본부	서울역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99	65	65.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97	61	62.6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69	60	87.1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86	52	60.2
경제진흥본부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78	40	51.8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영향분석 실시	68	40	58.7
한강사업본부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57	30	52.1
복지건강본부	서울희망 「앱」 아카데미	45	25	54.6

※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세부사업중 재무활동경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재무과-26457, '15. 5.22)

④ 재원없는 불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은 국고보조금 228억 7,600만원이 미교부되어 예산현액(293억 800만원)의 78.1%, 228억 7,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은 국고보조금 102억 2,300만원이 미교부되어 예산현액(8,791억 1,800만원)의 2.1%, 186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사업은 국고보조금 124억 7,500만원이 미교부되어 예산현액(6,135억 2,400만원)의 2.9%, 180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소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의 경우에도 예산현액(2,373억 900만원)의 3.6%, 85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불용 사례의 경우, 당초 편성된 국비가 회계연도중 감액변경되거나 미교부되어 세입의 실질적인 수납없이 결산서상의 불용액 수치만 확대된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unfunded disuse)’에 해당되는 바
 - 추경이후 국비가 변경되어 국비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재원없는 불용’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필요시 회계연도말 원포인트(One-Point) 감추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됨

〈표 3-63〉 재원없는 불용 대표사례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9,308	22,876	78.1	-
복지건강본부	기초노령연금지급	879,119	18,697	2.1	-
복지건강본부	기초생활수급자급여	613,524	18,018	2.9	-
주택건축국	재개발임대주택매입	237,310	8,569	3.6	-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불용 제외

○ 불용은 당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개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환경변화로 예산집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도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불용액 모두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에 대한 유동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액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실·국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필요시 감추경하여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불용을 비롯하여 매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는 예산운용 과정은 물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사업주관부서별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그 결과를 산출하는 체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⁷¹⁾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예산 이체도 모두 조직 개편에 따라 실·본부·국간 예산의 이체가 발생한 것으로써 2014회계연도에는 2차례의 조직개편⁷²⁾으로 총 38건, 318억 4,900만원의 이체가 발생되었음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예산 이체중 민선6기 조직개편('15. 1. 1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국 및 주택정책실에 분산된 재생기능을 통합하여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한 바 201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2015년 2월말 출납폐쇄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조직개편

71)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72) ① '14년 3월 13일자 「서울시 소속기관 조직개편」

- 시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전반에 대한 조직정비 추진
- 기관별 핵심기능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조직 보강, 분야별 전문성 강화, 기능중복 요인 제거를 통한 소속기관 조직 활성화에 중점

② '15년 1월 1일자 「민선6기 조직개편」

- 민선6기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 및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 5실 4본부 5국 체제에서 1실 8본부 5국 체제로 정비
- 시정 핵심분야인 시민안전, 창조경제, 도시재생, 희망복지 중심 조직 보강
 - 안전총괄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
 - 창조혁신의 융·복합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창조경제 추진조직을 보강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본부' 신설
 -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청년세대 등 신규 복지수요 대응 조직 보강 등

전 도시계획국 및 주택정책실에서 집행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결산은 현 부서 중심으로 작성되어 도시재생본부가 이체된 예산에 대해 결산을 수행하게 됨

〈표 3-64〉 예산의 이체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2014	소 계	38	31,849	△31,849
	일반회계	14	1,915	△1,915
	특별회계	24	29,934	△29,934
2013	소 계	-	-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	-	-
2012	소 계	729	1,467,814	△1,467,814
	일반회계	684	948,535	△948,535
	특별회계	45	519,279	△519,279

(3)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⁷³⁾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⁷⁴⁾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임
- 2014회계연도에는 실·본부·국간 또는 부서간 예산 이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표 3-65〉 예산의 이용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4	소 계	-	-	-	-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	-	-	-
2013	소 계	(2)	8,119	△8,119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2)	8,119	△8,119	지역개발기금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자금 확보,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부족에 따른 이용
2012	소 계	(1)	2	△2	
	일반회계	(1)	2	△2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
	특별회계	(0)	-	-	-

73)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74) 2014년도 서울시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8조 :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4)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⁷⁵⁾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의 경우, 총 199건(통계목 기준), 282억 8,100만원이 전용된 바 이는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25조 5,227억원)의 0.11%에 해당함
-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 건수는 20건이 감소하였고, 전용액 또한 직전 회계연도(1,296억 6,400만원)보다 1,013억 8,300만원 (78.1%)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의 경우, 총 169건 206억 9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3회계연도보다 총 26건, △1,025억 2,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에 대한 회계관 유상이관 위해 20억 6,900만원을 전용하였고,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⁷⁶⁾에 따른 직접고용전환으로 시설 및 경비근로자 등의 비정규직을 고용한 실·국·본부 사업소 등에서 2014회계연도 상반기 중에만 총 29건, 102억 8,200만원이 전용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총 30건, 76억 7,3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한바 지난 2013회계연도보다 6건, △11억 4,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사업예산 부족액 확보 외에도 기준인건비성 경비인 성과상여금 예산 부족액 확보(7건) 등과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확보(2건) 등으로 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75)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76) 행정부시장 방침 제551호('13.12.27)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표 3-66〉 최근 3년간 서울시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합 계	199	28,281	219	129,664	194	31,526
일반회계	169	20,609	195	123,136	171	25,401
특별회계	30	7,673	24	6,528	23	6,125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전용 제외

※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용은 13건, 69억 1,900만원임

○ 전용액 5억원 이상 발생 사례를 검토하면, 2014회계연도에는 총 14건(통계목 기준), 136억 6,200만원으로 전체 전용액(282억 8,100만원)중 48.3%에 해당함⁷⁷⁾

-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전용사례는 회계연도중 사업규모가 확대된 장애인콜택시 국비부족분, 시설관리 및 경비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에 소요예산 부족액이 발생하여 전용을 통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한 사례도 있으나

-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등 예산 편성후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서 당초 예산편성·확정시와 다르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용으로 이를 해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실·본부·국별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전용액 282억 8,100만원 중 복지건강본부 42억 7,300만원 (15.1%), 도시재생본부 38억 1,200만원(13.4%), 행정국 25억

77) 5억원 이상의 전용은 2013회계연도 총 23건, 1,116억원 발생한 것에 비해 9건이 감소하였고, 전용금액은 980억원 감소한 것임

6,400만원(9.0%), 주택건축국 25억 3,800만원(8.9%), 서울역 사박물관 23억 4,400만원(8.2%), 경제진흥본부 21억 3,600만원(7.5%) 순으로 확인됨

- 복지건강본부의 경우,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에 7억 1,600만원,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업에 5억 600만원, **사회복지재단 출연금**에 1억 8,500만원, **서울건강콜센터 운영**에 1억 8,000만원 등이 전용됨에 따라 42억 7,300만원이 전용된 것임
- 도시재생본부는 총 38억 1,2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36억 2,0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5억 1,300만원, **창신송인 도시주거재생사업** 관련 6건, 24억 4,500만원이 전용되어 직전 회계연도보다 전용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국은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사업에 18억 7,800만원, **선택적복지 제도운영**에 2억원 등이 전용되는 등 총 25억 6,400만원이 전용되었음
- 주택건축국은 총 25억 3,8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한바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사업에 20억 6,900만원,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3건, 1억 4,800만원 등이 전용된 것임

- 서울역사박물관은 총 7건, 23억 4,500만원이 전용된바 이는 준공 무직 인건비 부족을 해소하고자 **박물관 유지·운영** 사업에 9억 8,400만원, **청계천문화관 운영** 사업에 2억 8,400만원 등이 전용된 것임
- 경제진흥본부는 총 14건, 21억 3,6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한 바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사업에 4억,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에 3억원,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에 2억 8,400만원,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사업에 2억 2,000만원 등이 전용된 것임

〈표 3-67〉 최근 3년간 실·본부·국별 예산전용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2014년			2013년			2012년		
	전용금액	건수		전용금액	건수		전용금액	건수	
계	28,281	100	199	129,664	100	219	31,526	100	194
복지건강본부	4,273	(15.1)	35	11,939	(9.2)	49	3,986	(12.6)	31
도시재생본부	3,812	(13.4)	14	191	(0.1)	3	5,063	16.0	11
행정국	2,564	(9.0)	8	3,847	(2.9)	9	634	(2.0)	13
주택건축국	2,538	(8.9)	6	4,095	(3.1)	7	124	(0.3)	4
서울역사박물관	2,344	(8.2)	7	1,266	(0.9)	6	132	(0.4)	2
경제진흥본부	2,136	(7.5)	14	5,967	(4.6)	8	5,946	(18.8)	23
도시교통본부	1,509	(5.34)	5	2,164	(1.6)	9	1,125	(3.5)	6
소방재난본부	1,501	(5.31)	3	1,350	(1.0)	3	515	(1.6)	6
문화체육관광본부	954	(3.3)	7	4,414	(3.4)	24	3,875	(12.2)	21
평생교육정책관	798	(2.8)	16	3,030	(2.3)	14	1,334	(4.2)	9
여성가족정책실	783	(2.77)	23	83,566	(64.4)	22	2,164	(6.8)	14
푸른도시국	763	(2.70)	10	994	(0.7)	6	305	(0.9)	4
서울시립대학교	716	(2.5)	5	1,320	(1.0)	3	1,027	(3.2)	13
시립미술관	689	(2.4)	3	650	(0.5)	2	0	(0.0)	0
재무국	602	(2.1)	2	833	(0.6)	4	2,282	(7.2)	2
도시안전본부	577	(2.0)	10	346	(0.2)	10	498	(1.5)	12
기후환경본부	536	(1.9)	8	837	(0.6)	9	1,128	(3.5)	3
정보기획관	255	(0.9)	4	236	(0.1)	5	441	(1.4)	2
시민소통기획관	210	(0.74)	1	360	(0.2)	2	281	(0.8)	3
교통방송	199	(0.70)	2	155	(0.1)	2	9	(0.03)	1
한강사업본부	159	(0.5)	3	135	(0.1)	4	421	(1.3)	3
기술심사담당관	100	(0.36)	3	51	(0.04)	2	0	(0.0)	0
서울혁신기획관	89	(0.31)	4	191	(0.15)	2	87	(0.2)	2
비상기획관	56	(0.2)	1	55	(0.04)	2	0	(0.0)	0
기획조정실	40	(0.141)	2	0	(0.0)	0	0	(0.0)	0
의회사무처	39	(0.13)	2	1,342	(1.04)	6	45	(0.1)	3
도시계획국	31	(0.11)	1	0	(0.0)	0	18	(0.06)	3
도시공간개선단	0	(0.0)	0	20	(0.02)	1	0	(0.0)	0
도시기반시설본부	0	(0.0)	0	38	(0.03)	3	70	(0.2)	2
인재개발원	0	(0.0)	0	260	(0.20)	2	8	(0.03)	1

※ ()는 전체 전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제외

※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용은 13건, 69억 1,900만원임

- 세부사업별 주요 사례를 검토하면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소관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사업은 당초 민간대행사업비 39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⁷⁸⁾을 위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불용이 예상('14.11)⁷⁹⁾된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사업(예산현액 119억 7,500만원)에서 20억 6,9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3-68〉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사업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주택건축국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주1)}	시설비	11,975	△2,069		'14.12. 9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주1)}	시설비			2,069	

※ 주1) 전액 시비 사업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소관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 사업은 예산현액 6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사업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전용(6건, 25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음

- 동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14년 5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⁸⁰⁾으로 지정·고시⁸¹⁾되어 '14년 7

78) 서울시 임대주택과-13701('14.12. 3)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이관 대상(송파구 거여동 12-1), 이관 가격(103억 4,600만원), 10년분납(이자율 연3%)

79) 신내3, 세곡 및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추진 관련

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2509('14.10.23) “서울 신내3, 세곡 및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관련 협의요청

② 중랑구 도시개발과-6745('14.11.12)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관련 의견제출”

8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

월~11월 국고보조금 40억 9,000만원⁸²⁾이 교부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시설비 4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시설비 2억 8,600만원을 사고이월한바 있음

- 아울러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⁸³⁾에서 “중앙에서 확정내시된 사업이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없는 경우에 새로 사업을 만들고, 동 사업을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간주 또는 성립전 사용”토록 하고 있는바
- '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교부된 국비(40억 9,000만원)를 간주처리 및 신규사업 소요예산으로 편성하고, 부족재원을 불용이 예상되는 **공공정비계획수립 및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사업으로부터 전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임

〈표 3-69〉 창신송인 도시주거재생사업의 예산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예산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	4,090	2,563	6,653	2,253	4,286 ^{주1)}	113

주1) 이월액(42억 8,600만원)은 명시이월(40억원)과 사고이월(2억 8,600만원)

- 다만, 동 사업으로 전용해 준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의 경우, '14년 5월 정비용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예산현액 8억 3,600만원중 450만원만 집행되고, 불용액 8억 3,000만원이 12월중순에 전용되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4('14. 5. 7)

82) '14년 7월 국고보조금 9,000만원(6차), 11월 국비 40억원(제9차) 간주처리하였음

83)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99

회피하기 위한 전용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0〉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 사업 관련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 유
계	총 6건		△2,563	2,563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34	△117		7.2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사무관리비			117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16	△1		7.23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 전용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공공운영비			1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14	△444		10. 6	활성화계획 수립비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시설비	90		444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70	△45		11. 5	주민공모사업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기타보상금			45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36	△830		12.17	봉제,패션앵커 시설 공동직업장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125		830		
공공정비계획수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25	△1,125		12.17	봉제,패션앵커 시설 공동직업장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125		

※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으로 전용된 25억 6,300만원은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에서 전용한 8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정비계획 수립 불용액임

-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은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 268억 2,800만원, 사무관리비로 1억 2,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7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통계목간 전용(1건, 1억원)과 세부사업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전용(7건, 10억 5,600만원)이 발생되었음

- 동 사업은 당초예산 274억 4,100만원중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사업종료 및 대상자 감소로 138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10억 5,600만원 전용, 27억 3,000만원을 변경⁸⁴⁾하였음에도 예산현액 98억 3,200만원의 8.1%, 7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3-7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의 예산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추경	전용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27,441	13,620 ^{주1)}	△1,056	△2,730	9,832	8,672	362	797

주1) 추경(136억 2,000만원) = 기정예산(274억 4,100만원) - 추경감액(138억 2,100만원)

- 예산전용이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 하여도 2년 연속 예산의 상당부분이 타 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용되는 등 예산의 과다편성 오류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오용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산출을 통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대책 추진을 위하여 긴급 복지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차례 27억 2,900만원 예산변경하였음

〈표 3-7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업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사유
계	총 8건		△1,156	1,15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24,216	△67		'14. 3.20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대책 추진
긴급복지지원사업	사무관리비			6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24,148	△5		'14. 3.20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대책 추진
긴급복지지원사업	공공운영비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24,143	△76		'14. 3.20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대책 추진
긴급복지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24,067	△185		'14. 3.20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대책 추진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금	13,694		18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무관리비	127	△100		'14. 9.11	'응답하라 베이비부머 5060' 은퇴설계 콘서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민간행사보조금			1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9,976	△5		'14. 9.30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업무수행'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긴급복지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9,970	△706		'14. 9.30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기조성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시설비			70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사회보장적수혜금	9,264	△10		'14. 9.30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기조성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시설부대비			10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소관 **장애인콜택시 운영**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14년 3월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국고보조금 배분 알림”⁸⁵⁾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신규도입차량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고 대폐차량에 대해서는 미지원함에 따라 서울시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시비로 편성된 민간위탁금중 12억 3,2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임⁸⁶⁾

〈표 3-73〉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승인일	사 유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32,717	△1,232		2014. 7.16	장애인 콜택시 국비매칭분 확보 등
	민간대행사업비	800		1,232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액 3억 8,600만원)은 '14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증가하는 유기아동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증액통보함에 따라 매칭(국·시비 50:50) 시비 부족분 3억 4,600만원을 지원대상이 감소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사업**에서 전용하여 대응편성한 것임

〈표 3-74〉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승인일	사 유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사회보장직수혜금	5,157	△346		2014.10.30	국고보조금 증액지원에 따른 매칭(55) 시비 확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386		346		

8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4. 3.25)

86) ① 대폐차(20대) 구입비 부족분 3억 2,000만원, ②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부족분(11대) 3억 1,200만원, ③ 대폐 대상차량(15대) 대폐비 부족액 6억원

-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소관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사업은 연간 12,000명의 서울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외체험 활동 등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은 당초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확보 직후인 2015년 1월 내곡·금곡 청소년 야외체험학습장에 대한 평가결과⁸⁷⁾ ‘운영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14. 2월 운영이 종료⁸⁸⁾됨에 따라 불용될 예산액 중 2억 5,400만원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10개 통계목으로 전용해 준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4년 2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을 타 사업의 부족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전용하는 등 예산의 과다편성 오류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오용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로 사료됨

〈표 3-75〉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사업의 예산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본예산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312	△214	97	36	-	60

8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민간공모프로그램 평가 결과보고(서울시여성가족재단, '14. 1)

88) 아동청소년담당관-2849('14. 2. 5) “청소년 야외체험학습장 운영 개선계획”

〈표 3-76〉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사업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승인일	사 유
계	총 10건		△254	254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312	7		14. 9.15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업비 교부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073		7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304	3		14. 9.15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업비 교부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283		3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301	4		14. 9.15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업비 교부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604		4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297	42		14. 9.15	자치구 상담복지 센터 사업비 교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22		42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254	50		14. 9.15	자치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사업비 교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		50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204	80만원		14. 9.15	취약계층 두드림존 사업비 교부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운영)	민간위탁금	208		80만원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202	100		14.10. 2	민선6기 공약사항 (혁신91) 사업 추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4,258		100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204	1		14.10. 2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증가에 따른 국시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	44		1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102	40		14.10.27	원상복구를 위한 군용펜스 설치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공공운영비			40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	민간위탁금	62	5		14.11.27	국보조사업인 청소년차량 배치지원 보조금 교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민간위탁금	414		5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소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편성시 민간위탁금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위탁체에 교부하여 위탁체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판단하고,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⁸⁹⁾한 바

89) 노동정책과-10544('14.12.14) “서울노동권익센터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해서야 기편성된 민간위탁금을 통한 임대계약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전용으로 희석시킨 사례로 판단됨.
- 행정국 총무과 소관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사업은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된 시설관리용역 근로자를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여 기간제근로자(준공무직)로 전환⁹⁰⁾함에 따라 기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18억 7,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지출하고자 전용한 것임
- 행정자치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수립기준(p.167)⁹¹⁾”에 따르면,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건비성 경비로 전용이 제한되는 편성목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총액인건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바 동 전용사례는 전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90) 행정부시장 방침 제551호('13.12.27)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91)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표 3-77〉 예산 전용의 제한^{주1)}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총액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간, 총액인 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주1)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67

- 따라서 서울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5억 9,400만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사 시설물 관리**(11억 4,400만원),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유지운영**(9억 8,400만원), 서북병원 **청사시설운영관리**(5억원), 어린이병원 **청사시설운영관리**(3억 9,000만원), 시립미술관 **북서울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3억 7,700만원) 등의 경우에도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사업 내에서 전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가 '12년 12월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376호) 및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에 따라 이미 예정된 세출수요임에도 소요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 예산전용이 발생된바 이는 세부사업 편성 근거에 대한 정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일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⁹²⁾ 사업의 경우,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민간위탁 동의('14. 4) 후 개최된 민간위탁평가심의위원회('14. 5)⁹³⁾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을 조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14.10), 민간위탁 기관선정('14.12) 지연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2건, 4,000만원)로 전용하였음

- 특히, 당초 본예산에 없는 통계목인 사무관리비 및 연구용역비를 신설하여 전용한바 전용을 통한 통계목 신설은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예산운용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식화시키고 행정편의 위주의 예산집행이 될 수밖에 없어 향후 유사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78〉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승인일	사 유
계	총3건		△98	98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00	△10		'14. 5.28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
"	사무관리비			10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90	△30		'14. 5.28	민간위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전용
"	연구용역비			30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59	△58		'14. 9.17	권역별 시민대학 5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요청
시민교양대학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256		58		

92)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밖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가족 자
연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캠퍼장 조성·운영비

93) 조직담당관-6478('14. 5.30) “(제3차)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결과제출”
- 조건부적정 의견(관련용역 결과 검토로 제도보완 후 사업시행)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사업은 당초 민간위탁금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통계목간 전용(2건, 3억 600만원)과 세부사업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전용(1건, 1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음

- 동 사업은 당초 보라매공원내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공간을 안보전시관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대방동 미군기지 부지내 컨테이너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⁹⁴⁾함에 따른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기간이 단축된 **근로청년공용공간 설치·운영**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3-79〉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예산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승인일	사 유
계	총 3건		△446	446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356	△22		'14. 9.15	사업변경에 따라 서울시 직접발주
"	시설비			22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334	△284		'14. 9.15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신축사업으로 변경됨
"	민간대행사업비	140		284		
근로청년 공용공간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300	△140		'14. 9.15	근로청년공간 임대료 집행잔액을 청년종합활동공간 공사비로 전용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민간대행사업비			140		

94) 일자리정책과-11001('14. 9. 5)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변경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공원내 자유회관 1층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구)주한미군기지
규 모	340㎡	340㎡
추진방안	리모델링	이동식 컨테이너
사업예산	3억 5,600만원	4억 9,600만원

○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소관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현장 노숙인 인건비 및 노숙인 시설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집, 나래자활쉼터 등의 시설이 폐지('14. 6)로 불용액이 발생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사업**에서 4건, 6억 2,600만원을 전용한 것임

-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사업**은 '14년 6월 시설폐지가 확정된바 '14년 제1회 추경에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노숙인 일자리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나 연말(12.15)에 집중적으로 전용되었다는 점에서 불용액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 1. 1) 및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전액 시비 부담으로 추진된 노숙인 의료비를 국가에서 보조함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을 시립노숙인시설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노숙인자활시설 운영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임

〈표 3-80〉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예산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승인일	사 유
계	총 6건		△754	754		
노숙인 의료지원	의료및구료비	3,820	127		'14. 7.11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소방시설 설치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233		127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7,764	506		'14. 12.15	현장 노숙인 인건비에 대한 시비 보조금 부족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회복지보조	7,517		50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7,258	66		'14. 12.15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 보조금 부족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보조	1,076		66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7,191	32		'14. 12.15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 보조금 부족
거리노숙인 보호	사회복지보조	2,283		32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7,159	22		'14. 12.15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 보조금 부족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	341		22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없이 특정사업의 수행수단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 사업주관 부서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법테두리 안에서 회피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전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전용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⁹⁵⁾ 등을 준용하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수시로 변경하고, 집행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임.

95)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4항 및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4항에 의하면 전용, 이용, 이체의 경우, 분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와 예결특위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표 3-81A〉 주요 전용 현황 (전용액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사 업 명	당초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승인일	사유
			감	증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11,975	△2,069		'14.12. 9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회계관 유상이관
	시유지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2,069		
행정국 총무과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2,298	△1,878		'14. 2. 8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1,878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32,717	△1,232		'14. 7.16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국비 매칭부족분 확보
	장애인콜택시 운영	800		1,23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청사 시설물 관리	1,867	△1,144		'14. 2.20	시설관리 및 경비분야 직접고용
	소방청사 시설물 관리	1,167		1,144		
주택건축국 주거재생과	공공정비계획수립	1,925	△1,125		'14.12.17	창신승인도시재생선도지역 봉제패션 지원 앵커시설 등
	창신승인도시주거재생사업			1,125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박물관 유지·운영	2,053	△984		'14. 3.14	시설경비 용역 근로자 준공무직 전환 인건비
	박물관 유지·운영	456		984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2,047	△978		'14. 2.27	시설경비 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전용
	박물관 유지 운영	293		978		
주택건축국 주거재생과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시범사업	836	△830		'14.12.17	창신승인도시재생선도지역 봉제패션 지원 앵커시설 등
	창신승인도시주거재생사업	1,125		83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9,970	△706		'14. 9.30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706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30,846	△600		'14. 3. 6	성과상여금 부족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38,791		600		
시립대학교 행정처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4,961	△594		'14. 2.11	교내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1,650		594		
주택건축국 재정비과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3,122	△513		'14. 7.21	뉴타운 해제지역에 도시재생사업 대안마련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513		

〈표 3-81B〉 주요 전용 현황 (전용액 3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사업명	당초 예산액	전용액		전용 승인일	사유
			감	증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7,764	△506		14.12.15	현장 노숙인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부족
	노숙인 일자리 지원	7,517		506		
서북병원 원무과	청사시설 운영 관리	1,811	△500		14. 6.18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 따른 예산 변경
	청사시설 운영 관리	413		500		
주거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공공정비 계획 수립	2,614	△444		14.10. 6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비
	창신승인 도시주거재생사업	90,000		444		
경제진흥본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400	△400		14. 7.23	사회적경제 국제협의체 창립총회 개최계획 변경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3,807		400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962	△390		14. 3.17	청사시설운영관리 시설, 경비 직접고용 근로자 보수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388		390		
시립미술관 총무과	북서울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1,345	△377		14. 3.11	시설 및 경비근로자 직접고용
	북서울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384		377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205	△365		14. 2.28	은평병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325		365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청사 시설 유지 관리	2,003	△355		14. 4. 4	시설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전환
	청사 시설 유지 관리	202		355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5,157	△346		14.10.30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86		346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위탁운영	11,318	△325		14.11.13	장충체육관 개관 및 운영준비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325		
서울대공원 총무과	공원 시설 관리 용역	3,039	△309		14. 5. 9	시설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작업차량, 공구 등 구매
	공원 시설 관리 용역	167		309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532	△306		14. 2.27	경비용역원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220		306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897	△300		14.12.15	민간위탁이 임대차계약으로 변경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0		

(5)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⁹⁶⁾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우리 의회는 2015년도 예산심사시 2014년도 사업중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46개 세부사업, 1,495억 6,4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으나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최종적으로 발생된 명시이월은 통계목 기준 70건, 1,490억 2,100만원으로 '14회계연도 예산현액(25조 5,227억원)의 0.6%에 해당함
- '14회계연도의 경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을 활용한 것은 지출원인행위조차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거의 관행과 같이 불용시키기 보다는 기편성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활용한 것으로 사료됨

9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감추경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감소한 '13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10회계연도부터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증가⁹⁷⁾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한 명시이월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이라는 예산감시권의 또 다른 형태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명시이월의 순기능이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회계별로 발생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통계목 기준 50건, 총 792억 1,200만원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통계목 기준 20건, 698억 900만원이 발생되었음

〈표 3-82〉 명시이월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명시이월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률 (%)
			건수 (통계목)	명시이월액	
2014	계	25,522,763	70	149,021	0.6
	일반회계	17,505,539	50	79,212	0.5
	특별회계	8,017,224	20	69,809	0.9
2013	계	24,355,835	41	67,528	0.3
	일반회계	16,000,772	29	37,485	0.2
	특별회계	8,355,063	12	30,043	0.4
2012	계	22,689,515	55	205,162	0.9
	일반회계	15,529,458	27	35,475	0.2
	특별회계	7,160,057	28	169,687	2.4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공기업특별회계는 '13회계연도 명시이월 없음)

97) 명시이월의 경우, 통계목을 기준으로 '10회계연도 5건, 40억 1,700만원, '11회계연도 39건 1,533억 5,300만원, '12회계연도 55건, 2,051억 6,200만원, '13회계연도 41건, 675억 2,800만원, '14회계연도 70건 675억 2,800만원

- 지난 2013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명시이월액이 증가된바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중 풍납토성 복원(235억원),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108억원) 등 대규모 명시이월이 발생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435억 9,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86억 2,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96억 8,000만원) 등 도로 및 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된 명시이월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 각 실·본부·국에서 발생한 주요 명시이월 사례를 검토하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소관 **풍납토성 복원** 사업은 보상협회가 지연⁹⁸⁾됨에 따라 예산현액 500억원의 47.0%, 235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소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내에 자원순환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디자인 심의 등으로 설계변경 및 실시설계 기간 연장('14.10.15한)으로 예산현액 156억 3,100만원(전년도 이월액 44억 3,000만원 포함)의 69.5%, 108억 6,9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98) 삼표 레미콘측이 토지 일괄보상 및 토지보상후 추가영업 등을 요구함에 따라 보상협회가 지연됨

〈표 3-83〉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주1}	집행잔액
2014	11,201	15,631	1,363	10,869 (69.5)	77 (0.49)	3,320
2013	5,000	5,000	567	3,310 (66.2)	1,119 (22.3)	2,840

※ 주1) (괄호)는 예산현액대비 이월액 비율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 과학관 건립** 사업은 예산현액 190억 9,900만원(전년도 이월액 133억 8,500만원 포함)의 28.9%인 55억 3,400만원(전액 시설비)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고, 85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매 회계연도마다 명시이월 발생사유는 다르나, '12회계연도에는 설계지연으로 25억원, '13회계연도에는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102억원이 명시이월 된바 있고, '14회계연도에 터파기 공사중 발견된 매립폐기물 처리 및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지연(5개월)됨에 따라 55억 3,400만원이 명시이월 된바

-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통계목에서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더 이상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시설비 예산현액 131억원의 55.9%, 73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된 바
 - 동 사업중 ①**관악구체육공원 조성지원**사업은 사업타당성 용역('14.10), 도시공원심의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가 남아있어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23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②**동북권역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14년 침수저감대책 및 사업규모 논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③**서울대공원 북돌이동산부지 체육시설건립**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14. 7)후 부지 활용방안을 재검토함에 따라 과업수행이 지연되어 예산액 28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사업은 여의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지연으로 보상비 및 설계비 등 시설비 예산현액 40억원 전액 명시이월된 것임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민원발생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으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 74억 8,300만원(전년도 이월액 54억 8,300만원 포함)의 24.6%인 18억 4,100만원(시설비 15억 6,500만원 포함)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고, 24억 1,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12회계연도에 명시이월 28억원, '13회계연도에는 예산액(76억원)중 감추경 49억원 및 명시이월 26억원으로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였음에도 '14회계연도에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한바

〈표 3-84〉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2014	2,000	7,483	3,054	1,841	2,415	171
2013	2,677	5,748	109	2,676	2,807	117
2012	-	525	525	-	-	-

- 이는 동 사업이 매년 사고이월, 불용, 감추경 등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예산의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집행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향후 적기 공사가 불가할 시 불용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표 3-85A〉 '1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세부사업	명시이월액
일반·특별 총계		46개 세부사업(통계목 70건)	149,021
일반회계		33개 사업 (통계목 50건)	79,212
1	문화체육관광본부	풍납토성 복원	23,500
2	기 후 환 경 본 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0,869
3	문화체육관광본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7,328
4	경 제 진 흥 본 부	서울 과학관 건립	5,534
5	도 시 안 전 본 부	개봉유수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4,000
6	문화체육관광본부	잠실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3,354
7	도 시 안 전 본 부	성내유수지 정비	2,781
8	도 시 안 전 본 부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2,052
9	경 제 진 흥 본 부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활성화추진	2,000
10	문화체육관광본부	마포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00
11	평 생 교 육 정 책 관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1,882
12	문화체육관광본부	어린이 창작공간 조성	1,850
13	경 제 진 흥 본 부	서울형특화산업지구지정·운영	1,773
14	도 시 계 획 국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및 인왕지구 경관조명 조성	1,539
15	문화체육관광본부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시설 개·보수	1,200
16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1,122
17	문화체육관광본부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1,000
18	한 강 사 업 본 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000
19	문화체육관광본부	서울한양도성 보수·복원	962
20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 정밀실측 및 관리구간 표시	500
21	문화체육관광본부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500
22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449
23	복 지 건 강 본 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362
24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복합시설 건립 및 공공부지 활용방안 연구	300
25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 주변 완충지대 보존 관리기준 수립 용역	300
26	문화체육관광본부	전통사찰 등 관광자원 조성	250
27	문화체육관광본부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226
28	문화체육관광본부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	200
29	문화체육관광본부	서울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200
30	도 시 안 전 본 부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 사업 추진	200
31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148
32	푸 른 도 시 국	테마가 있는 서울의공원 조성	85
33	푸 른 도 시 국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10

〈표 3-85B〉 '1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세부사업	명시이월액
특별회계		13개 세부사업 (통계목 20건)	69,809
1	문화체육관광본부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28,269
2	도시안전본부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6,000
3	도시교통본부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4,914
4	도시안전본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지하차도건설	4,585
5	도시재생본부	창신 송인 도시주거재생사업	4,000
6	도시안전본부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4,000
7	도시안전본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매입비	3,680
8	도시재생본부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3,540
9	도시안전본부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시범사업	3,400
10	도시안전본부	상도교~호장교간도로확장	3,000
11	문화체육관광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1,841
12	도시안전본부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1,500
13	도시재생본부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082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 명시이월된 예산이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6〉 명시이월 반복발생 사업 ('14~'13)

(단위 : 백만원)

실국본부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14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명시	사고	불용	예산현액	명시	사고	불용	
기 후 환 경 본 부	서 재 플 조 사 라 울 용 자 성	소 계	11,201	15,631	10,869	77	3,316	5,000	3,310	1,119	3	
		사무관리비	11	11	-	-	-	-	-	-	-	
		시 설 비	10,770	14,985	10,469	77	3,095	4,780	3,095	1,119	-	
		감 리 비	400	600	400	-	200	200	200	-	-	
		시설부대비	20	35	-	-	21	20	15	-	3	
경 제 진 흥 본 부	서 과 학 관 령	소 계	5,714	19,099	5,534	8,866	248	13,399	10,282	3,103	14	
		시 설 비	5,534	18,027	5,534	8,550	224	12,493	9,952	2,541	-	
		감 리 비	-	862	-	300	24	876	300	562	14	
		시설부대비	180	210	-	16	-	30	30	-	-	
도 시 재 생 본 부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 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540	5,200	3,540	-	840	2,450	1,660	-	246	
문 화 체 육 관 광 본 부	돈 화 문 로 전 통 문 화 시 설 관 령	소 계	2,000	7,483	1,841	2,415	171	5,748	2,676	2,807	117	
		연구용역비	-	-	-	-	-	59	-	-	-	
		시 설 비	1,565	6,899	1,565	2,415	189	5,499	2,676	2,658	117	
		감 리 비	360	509	210	-	-	149	-	149	-	
		시설부대비	75	75	66	-	-	41	-	-	38	
문 화 체 육 관 광 본 부	한 양 도 성 탐 방 안 내 센 터 보 호	소 계	1,130	1,448	1,122	130	183	330	330	-	-	
		시 설 비	1,086	1,406	1,078	130	173	320	320	-	-	
		감 리 비	17	25	17	-	8	8	8	-	-	
		시설부대비	15	17	15	-	2	2	2	-	-	
		자산취득비	12	12	12	-	-	-	-	-	-	
문 화 체 육 관 광 본 부	서 울 한 양 도 보 수 · 복 원	소 계	1,100	1,902	963	497	47	2,683	557	245	1,410	
		시 설 비	1,082	1,880	945	494	47	2,644	553	245	1,376	
		감 리 비	14	14	14	-	-	30	-	-	30	
		시설부대비	4	8	4	3	-	8	4	-	4	
문 화 체 육 관 광 본 부	한 양 도 성 탐 방 로 조 성 및 정 비	소 계	500	2,087	449	345	82	1,678	1,587	-	14	
		시 설 비	496	2,079	447	345	80	1,654	1,583	-	-	
		감 리 비	-	-	-	-	-	14	-	-	14	
		시설부대비	4	8	2	-	2	10	4	-	-	

(6) 사고이월 관련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제2항99)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25조 5,227억원) 대비 1.8%, 4,493억 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66억 6,500만원(△7.5%)이 감소한 것임.

〈표 3-87〉 사고이월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회계별	예산현액	사 고 이 월		이월률
			통계목 건수	금액	
2014	계	25,522,763	381	449,304	1.8
	일반회계	17,505,539	187	119,864	0.7
	특별회계	8,017,224	194	329,440	4.1
2013	계	24,355,835	627	485,969	2.0
	일반회계	16,000,772	277	125,287	0.8
	특별회계	8,355,063	350	360,682	4.3
2012	계	22,689,515	517	361,628	1.6
	일반회계	15,529,458	212	81,411	0.5
	특별회계	7,160,057	305	280,217	3.9

- 99) 「지방재정법」 제50조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을 검토하면 도시안전본부(2,354억 3,900만원, 52.4%), 도시기반시설본부(754억 6,400만원, 16.8%), 푸른도시국(418억 8,400만원, 9.3%)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이 총 3,527억 8,700만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78.6%가 3개 본부·국에서 발생한 것임
- 도시안전본부의 경우, '14회계연도에 발생한 사고이월액의 52.4%, 2,354억 3,9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된바 '13회계연도에 132건, 2,633억 7,400만원보다 △279억 3,500만원 감소된 것임
- '1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경우,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예산현액 128억원 대비 84.8%, 108억 4,800만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예산현액 237억 1,300만원 대비 68.7%, 162억 9,400만원), **서울 과학관 건립**(예산현액 190억 9,900만원중 88억 6,7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현액 4,454억 1,200만원중 21.3%, 950억 9,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현액 1,964억 7,300만원중 37.1%, 730억 1,100만원) 등에서 사고이월이 주로 발생하였음
- 아울러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 고가철거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삼거리) 확장**(시설비 45억원),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시설비 21억 4,800만원), **서대문고가 철거**(시설비 10억원),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시설비 5억원) 등 전액 사고이월이 발생한바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성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도 필요하다 할 것임.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14회계연도에 13건, 754억 6,4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지하철 9호선 2단계 건설**의 경우 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산현액(713억 5,000만원)의 30.0%에 해당하는 213억 8,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푸른도시국의 경우, 사고이월이 '14회계연도에 55건, 418억 8,400만원이 발생하여 '13회계연도에 74건, 695억 5,000만원보다 19건, △276억 6,600만원 감소한 것임

- 특히, 도시계획변경 후 보상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서교 경관광장 조성(동교동 평화광장)**사업에서 52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을 포함하여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등 30억 원 이상 사고이월이 3건, 202억 6,200만원 발생하는 등 공원조성 등과 관련한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임

〈표 3-88〉 최근 3년간('14~'12)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2014			2013			2012		
	사고이월액		건수	사고이월액		건수	사고이월액		건수
계	449,304	(100.0)	381	485,969	(100.0)	367	361,628	(100.0)	313
도시안전본부	235,439	(52.4)	146	263,374	(54.2)	132	104,990	(29.0)	104
도시기반시설본부	75,464	(16.8)	13	36,462	(7.5)	7	27,226	(7.5)	3
푸른도시국	41,884	(9.3)	55	69,550	(14.3)	74	66,134	(18.3)	53
상수도사업본부	18,624	(4.1)	15	25,866	(5.3)	15	28,291	(7.8)	43
문화체육관광본부	15,008	(3.3)	35	26,950	(5.5)	23	33,693	(9.3)	19
도시교통본부	13,511	(3.0)	21	12,726	(2.6)	27	56,948	(15.8)	29
도시재생본부 ^{주1)}	11,863	(2.6)	25	-	-	-	-	-	-
복지건강본부	9,825	(2.19)	10	10,978	(2.3)	15	3,838	(1.1)	4
경제진흥본부	9,682	(2.16)	6	6,507	(1.3)	8	868	(0.24)	3
기후환경본부	8,472	(1.9)	13	4,188	(0.9)	8	5,076	(1.4)	7
서울시립대학교	3,265	(0.7)	4	-	-	-	577	(0.16)	2
정보기획단	1,405	(0.31)	6	319	(0.1)	3	861	(0.23)	5
도시계획국	1,315	(0.29)	10	1,655	(0.3)	12	1,879	(0.5)	8
한강사업본부	1,023	(0.23)	4	7,581	(1.6)	7	3,739	(1.0)	8
기획조정실	776	(0.173)	1	33	(0.0)	1	-	-	-
주택건축국	758	(0.109)	11	18,197	(3.7)	22	18,308	(5.1)	15
소방재난본부	558	(0.12)	1	108	(0.0)	1	360	(0.1)	3
재무국	170	(0.04)	2	-	-	-	7,021	(1.9)	2
서울혁신기획관	148	(0.03)	1	52	(0.0)	2	-	-	-
평생교육정책관	103	(0.02)	1	-	-	-	557	(0.15)	1
서울역사박물관	12	(0.003)	1	594	(0.1)	2	160	(0.04)	1
여성가족정책실	-	-	-	712	(0.1)	4	49	(0.01)	1
행정국	-	-	-	117	(0.0)	4	-	-	-
시민소통기획관	-	-	-	-	-	-	93	(0.03)	1

※주1)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국 및 주택정책실에 분산된 재생기능을 통합하여 “도시재생본부” 신설('15. 1. 1시행)

〈표 3-89〉 최근 3년간('14~'12) 사고이월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구분	계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기타
2014	계	449,304 (100.0)	111,514 (24.8)	30,574 (6.8)	66,959 (14.9)	8,038 (1.8)	49,141 (10.9)	15,876 (3.5)	167,201 (37.2)
	서울시	430,680	104,014	30,574	58,764	7,798	49,141	15,876	164,512
	상수도	18,624	7,500	-	8,195	240	-	-	2,689
2013	계	485,969 (100.0)	110,194 (22.7)	79,566 (16.4)	116,197 (23.9)	20,276 (4.2)	58,629 (12.1)	15,644 (3.2)	85,463 (17.6)
	서울시	460,103	108,281	79,566	105,682	19,407	58,629	15,644	72,894
	상수도	25,866	1,913	-	10,515	869	-	-	12,569
2012	계	361,628 (100.0)	46,517 (12.9)	32,235 (8.9)	166,351 (46.0)	13,624 (3.8)	26,239 (7.3)	4,574 (1.3)	72,088 (19.9)
	서울시	333,336	45,836	32,235	148,857	10,626	26,239	4,574	64,969
	상수도	28,291	681	-	17,493	2,998	-	-	7,119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구분하면¹⁰⁰⁾,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24.8%, 1,115억 1,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101억 9,400만원보다 13억 2,000만원 증가하였음.

- 이는 구조물 붕괴위험 및 지장물 저축¹⁰¹⁾, 문화재 발굴¹⁰²⁾ 등 사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과 동절기 및 수방기간 공사중지¹⁰³⁾에 따른 사업일정 순연, 설계변경¹⁰⁴⁾ 등에 따라 절대공기 등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100) 예산담당관-3622('15. 3.26)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 알림”

101) 공사중 지장물 저축 관련사업으로 ①상도동 성대시장주변 침수해소 ②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③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102) 문화재 발굴 관련사업으로 ①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②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103) 동절기 공사 관련사업으로 ①경의선숲길 공원조성 ②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104) 설계변경 관련사업으로 ①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②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③겸재교 건설 ④ 용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 사고이월액의 14.9%, 669억 5,9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161억 9,700만원보다 △492억 3,800만원 감소하였음.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은 기본계획수립 등 **선행절차 지연**과 디자인 심의, 주민설명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등 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절차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한 측면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의 경우, 시설비 사고이월이 97%를 차지하는바 사업주관부서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사고이월을 통한 사업기간 연장으로써 해소하려는 사례가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고이월이 발생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하여 비용증가, 주민 불편 등의 문제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최소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액은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예산현액 46억 2,300만원의 55.2%, 25억 5,300만원) 등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 **신림~봉천터널 건설**(예산현액 252억 8,400만원의 20.3%, 51억 4,400만원) 등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의 요인

으로 전체의 6.8%, 305억 7,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795억 6,600만원) 보다 △489억 9,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유관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1.8%, 80억 3,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202억 7,600만원) 보다 △122억 3,700만원 감소하였음.
-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전체의 37.2%, 1,672억 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854억 6,300만원)보다 817억 3,800만원 증가하여 사고이월 발생사유가 기타 사유로 편중된 것으로 사료되나
 -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불용액 발생사유처럼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구분하도록 정한바 없고, 실제 결산서에도 첨부서류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이월사유만을 개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사고이월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생사유가 구분되어 기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전절차 지연” 사고이월 발생액의 경우, '12~'14회계연도에 각각 46.0%, 23.9%, 14.9%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기타” 사유에 따른 사고이월은 '12~'14회계연도에 각각 19.9%, 17.6%, 37.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 '14회계연도 “기타”사유에 따른 사고이월 사례중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 사천교확장사업** 등 사전절차 지연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기타”사유로 인한 사고이월 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①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3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 중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례는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예산현액 327억 8,400만원 대비 47.5%, 155억 7,900만원),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¹⁰⁵⁾**,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예산현액 713억 5,000 대비 30.0%, 213억 8,400만원),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예산현액 1,651억 6,600만원 대비 6.6%, 108억 9,800만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예산현액 482억 8,800만원 대비 42.3%, 204억 4,500만원), **서울 과학관 건립**(예산현액 190억 9,900만원중 88억 6,700만원), **경의선숲길 공원조성**(예산현액 194억 9,700만원 대비 46.5%, 90억 7,300만원),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예산현액 70억 2,000만원 대비 95.2%, 66억 8,900만원),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예산현액 124억 2,700만원 대비 53.0%, 65억 8,700만원), **고척교 확장**(예산현액 99억 7,000만원 대비 54.6%, 54억 4,300만원),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예산현액 143억 4,200만원 대비 25.6%, 36억 6,600만원) 등이 대표적 사업임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소관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은 공사착공 지연('14.11), 분뇨처리시설 공법변경('13. 9~'14. 5)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예산현액 327억 8,400만원의 47.5%, 155억 7,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105)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현액(238억 2,600만원)중 80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현액(439억 2,800만원)중 256억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4년 5월까지 공법변경이 있었다고는 하나 공사가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11월 착공되어 사고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13회계연도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예산현액 155억 2,300만원의 68.6%, 106억 6,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다는 점에서 반복적인 사고이월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중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은 사업기간이 '07년 10월부터 '17년 12월까지로 '14회계연도 5차공사('14.12~'15.12)가 하천공사의 특성상 갈수기(9월~익년 5월)를 이용한 공사추진으로 인한 공기부족, 선행공정인 토목공사('14.12~'15.12) 지연, 터널형 방음벽 설치와 도로지하화 요구에 대한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현액(238억 2,600만원)중 33.6%, 80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업은 예산현액(439억 2,800만원)중 58.2%, 256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에 187억 5,500만원, '10회계연도에 162억 9,900만원, '09회계연도에 154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된 선례가 있어 동일 사업의 동일 통계목(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로 검토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지난 '1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연례적인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14회계연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음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은 지하지장물로 인해 기계설비분야 공사가 지연(916공구)되었고, 2호선 환승통로 환승체계 개선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예산현액 713억 5,000만원의 30.0%, 213억 8,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은 도로함몰 복구로 인한 공사지연(919공구), 5차 공사계약 준공기한('15.11) 미도래(923공구)에 따라 예산현액 1,651억 6,600만원의 6.6%, 108억 9,8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 '13회계연도에 공사중 장애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1,317억 1,300만원중 11억 5,400만원, '12회계연도 예산현액 845억 8,800만원중 43억 2,300만원 등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아울러 2015년 3월 개통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사업이 공사중 장애요인으로 '14회계연도에 예산현액(713억원)의 30.0%, 213억원이 사고이월된바
 - 특히, 지하철건설은 시민의 안전 및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각 사업부서는 사업추진과정을 보다 명확히 예측하고, 소

요예산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예산총괄부서는 사고이월 발생원인과 예산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과도한 사고이월 발생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9,011억원¹⁰⁶⁾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예산현액 482억 8,800만원중 42.3%, 204억 4,500만원(시설비 190억 8,400만원, 감리비 13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민간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행요건인 “교통수요재조사 및 상세 공정계획수립” 절차가 '15년 4월 현재 진행중인 관계로 건설보조금(시설비) 등이 지급될 수 없어 시설비 등이 사고이월된 바
 - 동 사업은 공사중 장애요인 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민간사업자에 대한 건설보조금(시설비) 지급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부득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나
 - '13회계연도 179억 300만원, '12회계연도 342억원, '11회계연도 명시이월 180억원, 사고이월 46억 4,400만원, '09년 521억 9,800만원 등 '10회계연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바

106) 사업기간('09. 9.15~'16.11.30), 총사업비 8,122억원(국비 1,104억원, 시비 2,577억원, 민자 4,441억원)

〈표 3-90〉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연도별 집행현황 ('14~'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2014	30,385	48,288	27,178	-	20,445	665
2013	73,400	61,716	43,787	-	17,903	26
2012	100,000	119,956	59,910	-	34,200	25,846
2011	83,909	83,909	60,967	18,088	4,644	209
2010	79,769	131,966	74,198	-	-	57,769
2009	144,320	144,748	9,413	-	52,198	83,137

- 동 사업은 당초 '14년 9월 완공예정이었음에도 매년 발생된 보상협의, 공사지연 등으로 '16년 11월까지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목표달성 미흡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후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 과학관 건립**¹⁰⁷⁾ 사업은 공기가 지연¹⁰⁸⁾됨에 따라 예산현액 190억 9,900만원중 88억 6,700만원이 사고이월(시설비 85억 5,000만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1,600만원)되었고, 55억 3,4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에도 정부 업무협의 지연으로 예산현액 108억 5,800만원중 102억 8,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12회계연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시설비 25억 4,100만원을 다시 사고이월 한 바

107) 서울과학관 건립사업

- 총사업비 470억원(국비 70%, 시비 30%), 사업기간(2011. 1~2016. 2)

- 위치(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8)

108) 터파기공사중 다량의 매립폐토석 발견 및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상이함에 따른 기초 구조안전검토

- 비록 매 회계연도별 이월액 발생사유는 다른 것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증가와 시민불편 등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향후 동일한 시설비 사고이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91〉 서울 과학관 건립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주1}	집행잔액
2014	5,714	19,099	4,447	5,534 (28.9)	8,867 (46.4)	250
2013	10,858	13,399	-	10,282 (76.7)	3,103 (23.1)	14
2012	2,541	2,541	-	2,541 (100.0)	-	-

※ 주1) (괄호)는 예산현액대비 사고이월액 비율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사업은 2단계구간 (연남, 새창, 염리동)에 대한 동절기 공사가 보류되고, 2단계 잔여 구간(원효, 신수, 창전동)은 '14년 12월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예산 현액 194억 9,700만원의 46.5%, 90억 7,3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것이나, 동 사업은 과거에도 공기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된 바 있어 향후 공사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펌프장설치 반대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검토('14.11) 등으로 예산현액 70억 2,000만원의 95.2%, 66억 8,900만원 사고이월 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소관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빛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사업은 가양아파트 교차로구간의 지장물 처리 협의 및 재설계에 따른 공기 부족과 시행사 부도로 인한 재발주 등 절차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124억 2,700만원의 53.0%, 65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¹⁰⁹⁾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고척교 확장**사업은 수방기간(5월 ~ 10월) 안양천 하천공사 중지로 설비공사 등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 99억 7,000만원의 54.6%, 54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계정)사업은 '13년 7월 발생한 상판붕괴사고로 교량하부 공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사업재개 승인('14. 9)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등으로 예산현액(143억 4,200만원)의 25.6%, 36억 6,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14년 제1회 추경시 상기의 사유로 기정예산(92억원)중 44억원이 감액조정된바 추경시 보다 적극적인 감액조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개선** 사업은 ①지중화사업 지연에 따른 보도포장 마감공사 지연, ②토목공사 지연에 따른 신호등 및 가로등 미설치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109억 2,000만원의 25.6%, 28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임¹¹⁰⁾

109) 동 사업은 '1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74억 2,500만원의 26.2%, 19억 5,000만원, '12회계연도에는 52억 8,800만원의 22.7%, 11억 9,800만원 등 반복적인 사고이월 발생사업으로 사료됨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재과 소관 **풍납토성 복원**의 경우, 지난 '14년도 제1회 추경시 국비가 확정내시되어 124억 6,400만원(국비 87억 2,400만원)이 추가 편성된 사업이나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 문화재 발굴 지연, 건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235억원, 사고이월 23억 3,000만원이 발생된바
 - 비록 국비교부가 확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월액이 불용될 경우 반납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계연도중 국·시비의 집행이 불확정적일 경우, 국비교부를 지연요구하여 매칭되는 시비편성액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상도동 성대시장주변 침수해소사업**은 대방천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도로의 지장물 이설민원 등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예산현액 48억 7,900만원의 37.4%, 18억 2,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¹¹¹⁾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겸재교 건설**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터널형방음벽 설치 재검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예산현액 97억 2,300만원의 27.0%, 26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소관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연도말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현액 38억 7,100만원의 34.0%, 13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110) 지난 '13회계연도에 상수도관 이설관련 업무협의 및 옹벽시공 주민반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예산현액 136억 3,700만원의 14.4%, 19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

111) '13회계연도에는 주민반대 민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현액 40억원의 56.9%, 22억 7,9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

- 앞에서 검토된 사고이월 발생사례의 경우, 공사중 예측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장애요소 해소기간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편성된 예산액에 대한 감추경을 검토하는 경우가 한정되고 있으나,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감추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②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30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례는 **서교 경관광장 조성(동교동 평화광장)**사업(예산현액 52억 9,200만원 전액),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예산현액 82억 2,400만원 대비 71.3%, 58억 6,700만원), **신림~봉천터널건설**사업(예산현액 252억 8,400만원 대비 20.3%, 51억 4,500만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예산현액 635억 8,600만원 대비 6.9%, 44억 1,100만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 푸른도시국 조경과 소관 **서교 경관광장 조성(동교동 평화광장)**사업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14.10) 후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기간 부족으로 예산현액 52억 9,200만원 전액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09. 1 ~ '15. 12)은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추가 확장¹¹²⁾함에 따른 토지 보상 및 문화재조사 지연으로 예산현액 82억 2,400만원의 71.3%, 58억 6,700만원(전액 시설비)이 사고이월된 것임

112) 국토교통부의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교통개선대책”

- 동 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에는 도로확장에 대한 보상절차 지연으로 166억 4,600만원, '12회계연도의 경우에도 16억 6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선례가 있어 동일 사업의 동일 통계목에서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바 향후 사고이월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92〉 선사로~고덕지구간 교통확장 사업 집행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주1)}	집행잔액
2014	8,224	8,224	2,268	-	5,867 (71.3)	89
2013	14,335	35,991	19,344	-	16,646 (46.2)	-
2012	36,265	36,677	15,021	20,050	1,606 (4.3)	-

※ 주1) (괄호)는 예산현액대비 사고이월액 비율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10.10~'17.12)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지연에 따른 보상비가 미집행됨에 따라 예산현액 252억 8,400만원의 20.3%, 51억 4,500만원 사고이월된바
 - 동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지연으로 '13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526억원)의 2.5%, 13억 5,200만원, '12회계연도 예산현액(300억원)의 25.5%, 76억 6,1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은 문화재 추가 발굴, 완충녹지 보상지연 및 강일삼거리 고덕교 확장여부 미결정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예산현액 635억 8,600만원의 6.9%, 44억 1,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14. 4) 및 감정평가 완료('14. 9)후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현액 46억 2,300만원의 55.2%, 25억 5,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 강남순환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접속에 따른 설계용역 과업 추가('14.9) 및 과천시구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협약 체결('14.11)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 1,664억 2,200만원의 1.1%, 17억 8,600만원 사고이월된 것임
-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한 사고이월은 협의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 시기를 고려한 감추경을 검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 편성된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협의 대상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 대안제시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사전절차 지연으로 30억원 이상이 사고이월된 사례는 **경춘선 폐선 부지 공원조성**사업(예산현액 131억 3,900만원 대비 46.9%, 61억 5,600만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예산현액 210억 8,700만원 대비 19.4%, 41억 600만원), **응봉교 재설치** 사업(예산현액 133억 1,900만원 대비 30.9%, 41억 2,100만원) 등이 있음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은 공사 발주 지연('14.12) 등으로 예산현액 131억 3,900만원의 46.9%, 61억 5,600만원(시설비 60억 3,700만원, 감리비 1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¹¹³⁾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 선행공정이 시행되지 못하여 예산현액 210억 8,700만원의 19.4%, 41억 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응봉교 재설치** 사업은 단계별 교통처리 및 방음벽 설치 민원 등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도급비 및 관급비 예산현액 133억 1,900만원의 30.9%, 41억 2,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14. 1) 후 문화재 발굴조

113) '13회계연도에 예산현액 68억 3,000만원의 80.2%, 54억 8,300만원이 사고이월됨

사, 전문가 자문, 학술회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14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공기 부족으로 예산현액 34억 6,200만원의 78.5%, 27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소관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공사 발주전 조달청 계약업무 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116억 7,000만원의 23.2%, 27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소관 **동네뒷산 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31억원¹¹⁴⁾을 투입하여 '07년부터 25개소의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시행¹¹⁵⁾하는 사업으로 설계심의 및 계약심사 이행 등 사전심사지연, 예산재배정('14.10) 및 공사발주('14.10) 지연,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관리청의 승인 등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현액 204억 8,700만원의 6.7%, 13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보상과정에서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은 인정되나

- 이미 '13회계연도 60억 7,700만원, '12회계연도 38억 9,8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바 반복적인 사고이월 문제를 불가항력적인 환경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보다 예산배정 및 공사발주를 앞당기기 위한

114) 2011. 1~2014.12 기간중 총사업비

115) 2014년 추진한 동네뒷산 공원조성 사업 대상지 총 14개소 중 9개소 사업완료, 1개소 보상 및 공사 중, 2개소 보상중, 2개소 공사중('14. 12월말 기준)

대책 등을 검토하여 반복적인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93〉 동네뒷산 공원 조성 연도별 집행현황 ('14~'1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주1)}	집행잔액
2014	14,410	20,487	18,875	-	1,380 (6.7)	232
2013	26,415	30,312	21,996	-	6,077 (20.0)	2,238
2012	16,475	22,627	18,048	-	3,898 (17.2)	682
2011	35,926	40,392	33,224	-	6,152 (15.2)	1,015
2010	57,627	66,602	59,397	-	4,466 (6.7)	2,739

※ 주1) (괄호)는 예산현액대비 사고이월액 비율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시흥계곡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은 주민 기피시설로 공사반대 민원이 발생하여 상부복원에 대한 주민합의가 지연되어 예산현액 82억 5,300만원의 15.8%, 13억원이 사고이월된바 사고이월의 발생사유가 모두 합의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합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조기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도시안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은 미불용지(중동 151-5) 보상 지연 및 방음벽 관련 민원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도급비 및 관급자재비 예산현액 45억원의 23.4%, 10억 5,2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1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전액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

-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보상절차 진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사업 대부분이 이미 수 회계연도에 걸쳐 보상문제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기간 연장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관리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④ **유관사업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소관 **신림4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은 우기공사가 곤란하여 부득이 공사착공이 지연('14.10) 됨에 따라 예산현액 96억 9,100만원의 20.1%, 19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지난 '13회계연도에도 공사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 97억 9,500만원의 47.8%, 46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에 앞서 반복적인 사고이월 방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공릉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기존 펌프장 폐쇄지연으로 기전설비공사 착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예산현액 30억원의 54.8%, 16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불용예상액을 감추경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용두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유역면적 조정 및 재설계를 위한 기간소요로 공사 미시행에 따라 예산현액 24억 4,100만원의 65.0%, 15억 8,800만원 사고이월된바 '14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액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30억원이상 사고이월된 주요사업으로는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예산현액 490억 7,900만원 대비 36.7%, 180억 2,900만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예산현액 237억 1,300만원 대비 68.7%, 162억 9,400만원),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사업(예산현액 260억원 대비 70.0%, 182억원),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사업(예산현액 128억원 대비 84.8%, 108억 4,800만원),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예산현액 50억원 대비 90.8%, 45억 3,800만원), **관악산저류조 설치**사업(예산현액 238억 8,300만원 대비 19.2%, 45억 7,400만원) 등이 있음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시설과 소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인처리를 위한 국비 90억원이 연도말('13.12) 교부¹¹⁶⁾로 설계변경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총인처리시설 관련 5차공사계약이 하반기('14. 7.15)에 체결됨에 따라 예산현액 490억 7,900만원의 36.7%, 180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시설비 177억 7,400만원, 감리비 2억 5,500만원)된 것임¹¹⁷⁾

116)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8879('13.12.31) "2013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12월2차 교부결정(이월처리) 통지"

- 동 사업의 사고이월은 국고보조금의 연도말 교부에 따른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공사계약 체결('14. 7)이 지연되어 발생된바 향후 중앙정부에 국비의 적기교부를 요청함과 동시에 예산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부진할 경우, 감추경하는 등 반복적인 사고이월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사업은 저류배수터널 단면 확대(7.5m→10m)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수리모형실험 재실시와 실시설계에 대한 검증기간 연장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 237억 1,300만원의 68.7%, 162억 9,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4년도 제1회 추경시 불용예산액 △138억 4,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나, 반복적인 사고이월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추경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하남선(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사업 및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은 사업구간 변경(하남미사지구→서울시계), 입찰방식 변경(턴키→기타)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14.12) 등으로 인한 공정지연으로 각각 예산현액 260억원의 70.0%, 182억원, 예산현액 50억원의 90.8%, 45억 3,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117) 사고이월 내역 : '13회계연도(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331억원의 52.1%인 172억원), '12회계연도(예산현액 279억원의 12.3%, 34억원)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빗물펌프장 설치 반대민원을 고려한 펌프장 위치변경('14. 7) 및 재설계¹¹⁸⁾ 진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 128억원의 84.8%, 108억 4,800만원(시설비 103억 5,200만원, 감리비 4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관악산저류조 설치**사업은 서울대 및 시민단체의 사업반대와 도림천 홍수량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현액 238억 8,300만원의 19.2%, 45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된바 '13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예산현액 195억 9,300만원의 48.7%, 93억 8,300만원, '12회계연도에 예산현액 62억 4,100만원의 41.5%, 25억 9,300만원, '11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3억 5,000만원의 96.7%, 32억 4,100만원 등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된 사례로 사료됨

118)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재설계 완료('15. 1.26)

〈표 3-94A〉 주요 사고이월 현황 (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도시안전본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928	18,259	25,643	58.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71,350	48,235	21,384	30.0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48,288	27,178	20,444	42.3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교통개선부담금)	26,000	5,948	18,199	70.0
도시안전본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49,079	31,049	18,029	36.7
도시안전본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23,713	7,079	16,294	68.7
도시안전본부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32,784	16,538	15,579	47.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65,166	154,194	10,898	6.6
도시안전본부	용산구 한강로방재시설 확충	12,800	1,942	10,848	84.8
푸른도시국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19,497	7,320	9,073	46.5
경제진흥본부	서울 과학관 건립	19,099	4,448	8,867	46.4
도시안전본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3,826	15,798	8,028	33.7
복지건강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8,862	1,710	7,056	79.6
도시안전본부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7,500	784	6,690	89.2
도시안전본부	강서구청사거리~가양 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12,427	5,839	6,587	53.0
푸른도시국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13,139	4,424	6,156	46.9
도시안전본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도시개발특별회계)	8,224	2,268	5,867	71.3
도시안전본부	고척교 확장	9,970	4,523	5,443	54.6
푸른도시국	서교 경관광장 조성 (동교동 평화광장)	5,292	0	5,292	100.0
도시안전본부	신림~봉천터널 건설	25,284	20,139	5,145	20.3
도시안전본부	관악산저류조 설치	23,883	19,265	4,574	19.2

〈표 3-94B〉 주요 사고이월 현황 (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000	373	4,538	90.8
도시안전본부	사가정길 (장안삼거리~전농삼거리)확장	4,500	0	4,500	100.0
도시안전본부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63,586	31,553	4,411	6.9
도시안전본부	응봉교재설치	13,319	8,905	4,121	30.9
도시안전본부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하수도특별)	7,496	3,277	4,105	54.8
도시교통본부	잠실권역 교통정보시스템구축	5,817	1,763	3,965	68.2
도시안전본부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4,342	5,853	3,666	25.6
도시안전본부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4,500	863	3,637	80.8
도시재생본부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17,824	12,018	3,553	19.9
도시교통본부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건설	4,729	1,552	3,177	67.2

〈표 3-95A〉 주요 사고이월 현황 (이월액 3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서울시립대학교	음 악 관 건 립	3,650	431	2,850	78.1
도시안전본부	남부순환로(개봉역주변) 구조 개선	10,920	8,119	2,800	25.6
기후환경본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 시설 증 축	3,517	733	2,780	79.0
도시재생본부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계획 수립	5,503	1,763	2,757	50.1
푸른도시국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3,462	686	2,718	78.5
도시안전본부	도림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 정비	11,670	8,953	2,713	23.2
도시안전본부	겸 재 교 건 설	9,723	7,079	2,626	27.0
도시안전본부	신촌현대백화점 주변 소림수해소	5,000	1,877	2,588	51.8
푸른도시국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4,623	2,070	2,553	55.2
문화체육관광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7,483	3,055	2,416	32.3
문화체육관광본부	풍납토성 복원	50,000	24,150	2,331	4.7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보급	6,550	4,259	2,211	33.8
도시안전본부	가양이마트~가양빛물펌프장간 하수압거정비	4,000	1,774	2,191	54.8
문화체육관광본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13,450	1,872	2,168	16.1
도시안전본부	하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5,000	2,769	2,154	43.1
도시안전본부	구산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 정비	5,678	3,528	2,150	37.9
도시재생본부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2,148	0	2,148	100.0
도시안전본부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 사업 (유역분할)	3,000	0	2,000	66.7
도시안전본부	신림4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 정비	9,691	7,737	1,950	20.1
도시안전본부	동호대교 기초구조물(우물통) 보수공사	2,000	118	1,863	93.1
도시안전본부	시조사삼거리 교차로 구간 개선 사업	1,887	30	1,851	98.1
도시안전본부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소림수해소	4,879	2,894	1,822	37.4

〈표 3-95B〉 주요 사고이월 현황 (이월액 3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도시안전본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66,422	164,635	1,786	1.1
도시안전본부	차집관거 성능개선	6,726	3,900	1,764	26.2
도시안전본부	중량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6,348	4,501	1,757	27.7
도시안전본부	한강상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3,500	0	1,715	49.0
도시안전본부	공릉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3,000	1,348	1,645	54.8
도시안전본부	용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2,441	853	1,588	65.1
도시안전본부	강변북로 사면보수보강공사 (자양동853-3~645-5)	1,800	200	1,566	87.0
도시안전본부	장안교 성능개선	1,723	220	1,500	87.0
푸른도시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도시개발특별회계)	24,075	21,996	1,493	6.2
도시안전본부	옥수, 금호터널 보도 차단벽 설치공사	1,550	55	1,454	93.8
도시안전본부	창동지하차도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	2,000	384	1,454	72.7
도시안전본부	월계로~창동길간 도로개설	1,500	56	1,444	96.3
문화체육관광본부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 구간 잇기 사업	2,200	102	1,392	63.3
푸른도시국	동네뒷산 공원조성	20,487	18,875	1,380	6.7
도시안전본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0,583	8,542	1,372	13.0
도시안전본부	내부순환로 내진보강	2,000	467	1,343	67.2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871	2,381	1,318	34.0
도시안전본부	시흥계곡 빗물저류조설치	8,253	6,952	1,300	15.8
도시안전본부	마들지하차도 외 3개소 보수 및 포장개량공사	1,500	42	1,283	85.5
도시안전본부	안양천(금천구) 물놀이 시설 설치	1,500	198	1,281	85.4
문화체육관광본부	북한산성 보수, 보존	1,429	153	1,261	88.3

〈표 3-95C〉 주요 사고이월 현황 (이월액 30억원 미만)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부사업	예산 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이월률
도시교통본부	운수업계(버스) 유가보조금	10,596	9,507	1,089	10.3
푸른도시국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피해저 감시시스템 구축	3,027	1,773	1,069	35.3
푸른도시국	관악산도시자연공원성 (문성지구) 조성	1,739	550	1,069	61.5
도시안전본부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	4,500	3,448	1,052	23.4
도시안전본부	서대문고가철거	1,000	0	1,000	100.0
도시안전본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설치	1,302	286	1,000	76.8
도시안전본부	방배로(방배역~반포천) 사각형거신설	6,598	5,575	975	14.8
도시안전본부	노량교 슬래브(난간하부)보수공사	1,060	92	949	89.5
도시안전본부	불광천(은평구간) 환경개선	1,000	41	939	93.9
도시안전본부	중량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3,811	2,294	931	24.4
문화체육관광본부	초안산 분묘군 복원	2,680	1,682	923	34.5
정보기획관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471	480	921	62.6
푸른도시국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4,669	3,458	919	19.7
도시안전본부	군자교 진출입(경사로)시설설치	1,300	376	913	70.2
도시안전본부	망우리고개 횡단교량설치공사	1,000	107	872	87.2
푸른도시국	북한산산사길탐방로 조성사업	1,000	19	814	81.4
도시안전본부	중량천 둔치(중량구간) 친수 시설 조성	1,000	199	801	80.1
푸른도시국	마포 석유 비축기지재활용 사업	1,960	1,131	797	40.7
기획조정실	시정시책연구용역	1,739	806	776	44.6
도시안전본부	영등포7가 62-3~63-2 외 3개 소하수관로 개량	1,600	648	754	47.1
도시안전본부	성산대교 성능 개선	2,142	1,305	752	35.1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 소통 개선	5,787	4,446	739	12.8
도시안전본부	청계천 개선보완 사업	1,000	211	735	73.5
도시안전본부	율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11,734	9,722	731	6.2
복지건강본부	지역주민맞춤형 체력증진사업	800	17	722	90.3
도시안전본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1,684	557	716	42.5
도시교통본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010	1,929	705	23.4
도시안전본부	역삼동 814~서초동 1304 하수관거 확장	1,079	379	700	64.9

〈표 3-96〉 예산현액 전액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푸 른 도 시 국	서 교 경 관 광 장 조 성 (동 교 동 평 화 광 장)	5,292	5,292
도 시 안 전 본 부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삼거리) 확 장	4,500	4,500
도 시 재 생 본 부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 결 고 가 도 로 개 설	2,148	2,148
도 시 안 전 본 부	서 대 문 고 가 철 거	1,000	1,000
도 시 안 전 본 부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 상 공 모	500	500
도 시 안 전 본 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교통 개 선 분 담 금 계 정)	500	500
도 시 안 전 본 부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 계 획 수 립 연 구	140	140
문 화 체 육 관 광 본 부	박물관물 전시운영 계획 연구 용역	85	85
푸 른 도 시 국	우 장 근 린 공 원 (강 서) 조 성	13	13

(7)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시비 혹은 필요에 따라 자치구비 등과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바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보조금 지급대상과 기준보조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음
- 2014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여권발급 업무대행**을 포함한 413개 사업으로¹¹⁹⁾ 2조 7,209억 5,700만원이 수납되어 2조 6,234억 4,1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금을 제외한 260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3-97〉 국고보조금^{주1)} 세출결산결과 ('14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주2)}	불용률
계	2,793,502	2,720,957	2,623,641	93.9	26,064	1.0
일반회계	2,409,560	2,371,159	2,283,556	94.8	25,580	1.1
특별회계	383,942	349,798	340,085	88.6	-	-
도시철도	139,977	117,101	117,101	83.7	-	-
교통사업	14,910	14,576	14,200	95.2	484	3.3
주택사업	180,129	170,195	164,048	91.1	-	-
도시개발	32,296	32,296	32,296	100.0	-	-
하수도사업	16,630	15,630	12,440	74.8	-	-

※ 주1) 국고보조금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에 준하여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등”중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으로 한정함

주2) 불용액은 집행잔액중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

자료근거 : 재무과-26273 ('15. 5.21)

119) 재무과-26273 (2015. 5.21) 국고보조금 현황

-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세부사업일 경우, 결산서 첨부서류인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의 수령현황 등을 결산결과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을 포함한 11개 사업은 '14년도 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보다 5억원 이상 미수납된 사업으로 회계연도중 중앙정부가 감액통보 하여 국고보조금의 실수납액이 감액된 사례도 있음

〈표 3-98〉 국비 부족수령 주요사업 현황 (당초내시액대비 부족수령액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국비 내시액 ①	국비 수령액 ②	부족 수령액 ③=①-②	부족수령 비율 ③/①
1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2,876	0	22,876	100.0
2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13,030	400,555	12,474	3.0
3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715,783	705,560	10,223	1.4
4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12,593	2,659	9,934	78.9
5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42,316	36,815	5,501	13.0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172,831	169,831	3,000	1.7
7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49,289	47,500	1,789	3.6
8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유역분할)	1,000	0	1,000	100.0
9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자활장려금	2,918	2,217	701	24.0
10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9,843	9,180	663	6.7
11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928	2,319	609	20.8

※ 자료근거 : 재무과-26273 ('15. 5.21)

- 그러나 도시교통본부 소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국비 228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비 전액이 미교부되었고, 미교부된 국비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원인으로한 불용으로 처리한 바
 - 동 사업에서 발생된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은 '14년도 예산편성당시 중앙정부가 가내시하거나 상호 협의된 국비내시액이 아닌 사업주관 부서의 추계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업의 성질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이후 자치단체가 실제 소요될 국비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동 사업은 회계연도중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내시한 사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낮았다면 지난 '14년도 제1회 추경시 국고보조금 편성분에 대해 감추경 함으로써 228억 7,600만원이라는 '재원없는 불용'이 사전에 최소화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불용액 발생사유가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통합기준”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중 국비 미확보로 세출예산중 국비편성분에 대한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하였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불용액 발생사유를 단순구분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소홀히 할 수 있어 중앙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사업은 예산현액(6,135억 2,400만원)중 180억 1,700만원이 불용된 사업으로 편성된 국비(4,130억 2,900만원)보다 124억 7,400만원이 부족 수령되어 매칭되는 시비도 불용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지난 '14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자치단 체경상보조금에 국비 174억 6,800만원이 추가편성 된 바
- 추경안 심사시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국·시비 부족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국비(174억 6,800만원)를 증액조정 요청하고 있으나 국비의 증·감에 대한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없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증액조정하는 것은 결산상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어 증액편성 요구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된 바 있음
- 실제 동 사업은 '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의결된 이후 복지부에 국비변경내시를 요구하였으나 복지부가 회계연도중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중 124억 7,400만원은 반영하지 않고, '14년도 본예산에 내시한 국고보조금과 추경중 일부를 교부함으로써 '재원없는 불용'을 사업주관부서 스스로 발생시킨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 향후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안 및 추경안 편성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사업의 긴급성 등을 편성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국비 가내시 등 중앙정부와 협의완료된 사업에 한정하여 국비 및 시비를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절차적 요건에 보다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보조금 집행 현황”에 102억 2,300만원이 부족 수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14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증액편성¹²⁰⁾한 이후 '14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7,055억 6,000만원으로 변경내시한 바 있어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실제 확정통보액 전액이 수령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결('14. 9.30)이후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14.11.13)가 통보되어 국비감액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결산서상 국비가 부족수령된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되나
 - 서울시에 국고보조금의 증액편성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국고보조금을 증액편성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규모를 확대한 결과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부족수령을 결산결과에 남긴 것은 물론 국비 미확보에 따라 세출예산중 102억 2,300만원을 ‘재원없는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바 향후 동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0) 당초 국비 6,829억 8,300만원 → 추경 국비 7,157억 8,300만원 (국비 328억원 증액)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바
-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8,107억 1,600만원)보다 1,762억 5,400만원 증가한 9,86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2,941억 7,200만원)보다 1,257억 400만원 증가한 4,198억 7,600만원 발생하였음

〈표 3-99〉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1 4	2 0 1 3	2 0 1 2
합계	986,970	810,716	473,531
일반회계	419,876	294,172	64,526
특별회계	567,094	516,544	409,005

-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하여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²¹⁾

121)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 「지방재정법」 제52조¹²²⁾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2,941억 7,100만원)에 대해 영유아무상보육과 관련된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발행한 지방채(2,000억원)를 상환한 사례가 있고¹²³⁾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¹²⁴⁾에도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해당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지방채 상환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122)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123) ①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366 (2014. 5.19), “서울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근거하여 2014년 5월23일 1,000억원 조기상환, ②결산상 잉여금의 채무상환(1,000억원) 2015년 4월29일

124)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 특별회계의 경우, 해당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입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되는 것은 물론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경을 통하여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성될 수 있는 바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회계연도보다 1,257억 400만원 증가함으로써 지방채 상환은 물론 긴급재정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과 같이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이나 감채기금 등에 예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다음회계연도 세출재원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실집행예산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수시 감추경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00〉 최종예산대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최	종			
	예산	17,342,768	15,883,886	15,454,654
	①			
전	년			
	도			
	이			
	월	162,771	116,886	74,804
	액			
	②			
예	산			
	현	17,505,539	16,000,772	15,529,458
	액			
	③=①+②			
세	입			
	결			
	산	17,657,113	15,944,023	15,223,375
	액			
	(수			
	납			
	액)			
	④			
세	출			
	결			
	산	16,912,581	15,469,834	15,027,255
	액			
	(지			
	출			
	액)			
	⑤			
잉	여			
	금	744,532	474,189	196,120
	(차			
	인			
	잔			
	액)			
	⑥=④-⑤			
	기			
	존	100,000	0	0
	채			
	무			
	상			
	환			
	⑦			
	명			
	시	79,212	37,484	35,475
	이			
	월			
	액			
	⑧			
	사			
	고	119,864	125,287	81,411
	이			
	월			
	액			
	⑨			
	계			
	속	0	0	0
	비			
	⑩			
	보			
	조	25,580	17,245	14,708
	금			
	집			
	행			
	잔			
	액			
	⑪			
	순			
	세	419,876	294,172	64,526
	계			
	잉			
	여			
	금			
	⑫=⑥-(⑦+⑧+⑨+⑩+⑪)			

(9) 지방채 관련

- 2014회계연도 지방채 현재액은 3조 1,409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2조 8,826억 9,200만원)보다 2,583억 700만원(9.0%) 증가하였음

〈표 3-101〉 지방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차입 ①	상환 ②	증감 ①-②	
계	2,882,692	976,538	718,231	258,307	3,140,999
일반회계	513,000	655,258	406,573	248,685	761,685
삼풍사고재해	2,000	0	2,000	△2,000	0
SOC및일자리 모집채	300,000	300,000	300,000	0	300,000
창출사업등 금융기관차입	211,000	0	100,000	△100,000	111,000
양공사 건설채무 이관액	0	355,258	4,573	350,685	350,685
특별회계	2,369,692	321,280	311,658	9,622	2,379,314
기타특별회계	2,212,619	321,280	308,958	12,322	2,224,941
하수도사업	36,623	0	11,123	△11,123	25,500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648,938	0	16,002	△16,002	632,936
지하철건설본부(도시철도공채)	1,527,058	321,280	281,833	39,447	1,566,505
공기업특별회계	157,073	-	2,700	△2,700	154,373
배급수관정비	6,900	0	2,700	△2,700	4,200
지역개발기금	150,173	0	0	0	150,173

※ 지방채는 채무부담행위 제외됨, 백만원 미만 절사

- 2014회계연도말 일반회계 지방채 현재액은 이전 회계연도(5,130억원)보다 2,486억 8,500만원 증가된 7,616억 8,500만원임
- 차입의 경우, ① 지방채 차환에 따른 저금리(2.44%) 지방채 신규 발행 3,000억원, ②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를 서울시로 이관하여 3,552억 5,800만원의 지방채 현재액이 증가하는 등 총 6,552억 5,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 '14회계연도에 신규발행된 지방채 3,000억원의 경우, 지난 2009년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발행된 고금리(5.27%) 지방채에 대해 시의회로부터 차환발행을 승인받아 3,000억원을 상환하고, '14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4조 일반회계 공채발행의 범위내에서 상대적으로 저금리(2.44%)의 지방채 3,000억원을 신규발행한 것으로 지방채 현재액에는 변동이 없음
 - 2014회계연도중 서울시로 이관된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3,552억 5,800만원)는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발행과 상환기관을 일치시켜 채권을 종합관리하고자 '14년 7월 1일자¹²⁵⁾로 지하철 양공사에서 서울시로 3,552억 5,800만원의 채무가 이관된 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¹²⁶⁾에 따라 각 회계연도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고, 서울시도 예산서중 예산총칙으로써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한도를 정하고

125)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12685(2014. 6.25) “지하철 상환 약정채무 이관계획”

12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있으나 동 채무이관건은 지방채 현재액은 증가되나 지방채의 신규 발행이 아닌 채무상환주체의 이관에 해당되어 관련법 및 예산총칙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상환된 일반회계 지방채는 4,065억 7,300만원으로 ① 삼풍사고재해 관련 지방채 20억원, ② 무상보육 관련 지방채(2,00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1,000억원, ③ 지방채 차환에 따른 고금리(5.27%) 지방채 3,000억원, ④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3,552억 5,800만원) 이관에 따른 '14회계연도 상환액 45억 7,300만원 등임

- 그러나 '14회계연도에 상환된 지방채중 ② 무상보육 관련 지방채에 대한 조기상환 1,000억원의 경우, '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2,941억 7,100만원)중 1,000억원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2조¹²⁷⁾에 따라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것이나
 - 동 지방채 상환 사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이라 하여도 '14년 5월 23일 1,0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이후 '13회계연도 결산서중 “잉여금의 채무상환 처분내역”으로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채 상환이 '1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의결이 임박하여 지방채 상환결과를 결산서에 반영시킬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127)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사료되는 바 '14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일반회계의 세부사업중 지방채상환에 사후적이거나 예산액을 증액조정하여 지방채 상환 결과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지난 '11~'12회계연도에 걸쳐 일반회계중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상환에 주력하였으나 '13회계연도중 영유아무상보육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추경을 통하여 지방채 2,000억원을 신규발행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의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계획을 확정¹²⁸⁾함에 따라 지방채 차환을 위하여 '13회계연도에 110억원, '14회계연도에 3,000억원이 차환된 바
- 지방채에 대한 추가적인 신규발행이 자제되고 있음에도 차환 및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 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지방채에 대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증가된 바
 - 시세수입이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초과수납되어 세입결산 및 순세계 잉여금이 직전회계연도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차환방안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8) 안전행정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인수 금융기관 선정계획 통보”, (재정정책과-2882, 2013. 9.13)

- 특별회계 지방채¹²⁹⁾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2조 3,696억 9,200만원)보다 96억 2,200만원 증가한 2조 3,793억 1,400만원이 2014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으로 보고된 바
 -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60억 200만원을 상환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11억 2,300만원 상환하였으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2,818억 3,300만원이 상환¹³⁰⁾되었으나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공채가 매출되어 3,212억 8,000만원 차입이 발생됨에 따라 기타특별회계의 2014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23억 2,200만원 증가한 2조 2,249억 4,100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한 27억원이 상환되어 2014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27억원 감소된 1,543억 7,300만원임

129) 지방채와 관련된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와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임

130) '07년 도시철도 매출 공채 발행액 5,533억원중 도시철도 건설에 사용한 2,818억원의 거치기간인 7년이 경과하고, 만기가 도래하여 '14년도에 원리금 상환

〈표 3-102〉 서울시 '14회계연도 채무현황 및 '15년 지방채 상환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입 시기	차입선	차입조건		'14년말 현재액	'15년 예산편성 현황			'15년말 예상잔액	
			금리 (%)	거치 (상환)		계	원금	이자		
채무총계 ①+②+③+④					3,240,999	866,538	741,807	124,731	2,499,192	
지방채 ①+②+③					3,140,999	766,538	641,807	124,731	2,499,192	
일반회계 ①					761,685	192,962	168,034	24,928	593,651	
SOC 및 일 자 리 창출사업 등	모집채	'14.12.23	모집공채	2.44	5년 (일시)	300,000	9,600	0	9,600	300,000
	금융기관 차 입	'13.10.23	농협NH	3.79	1년 (일시)	11,000	1,517	1,100	417	9,900
	"	'13.12.31	우리은행	2.64	1년 (일시)	100,000	103,200	100,000	3,200	0
양공사 건설채무 이 관 액	'14.07.01	도시철도공채	2.50	7년 (일시)	350,685	78,645	66,934	11,711	283,751	
기타특별회계 ②					2,224,941	393,372	320,900	72,472	1,904,041	
하 수 도 사 업	'96.12.27	정부자금	2.69	5년 (10년)	25,500	9,636	9,000	636	16,500	
주 택 사 업 (공공임대주택)	'95~'01	정부자금	3.00	10년 (20년)	632,936	37,894	19,163	18,731	613,773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08~'14	도시철도공채	2.50~ 2.00	7년 (일시)	1,566,505	345,842	292,737	53,105	1,273,768	
공기업특별회계 ③					154,373	180,204	152,873	27,331	1,500	
상 수 도 사 업	'96~'01	정부자금	1.96	5년 (10년)	4,200	2,788	2,700	88	1,500	
지 역 개 발 기 금	'08	지역개발채권	2.50	7년 (일시)	150,173	177,416	150,173	27,243	0	
채무부담행위 ④	'14				100,000	100,000	100,000	0	0	
일 반 회 계	'14	IT COMPLEX 건립	-	'15	20,000	20,000	20,000	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14	도시철도9호선 2·3단계 건설	-	'15	80,000	80,000	80,000	0	0	

※ 변동금리는 '14년말 12월(4/4분기) 상환금리 기준임, 백만원 미만 절사

〈표 3-103〉 서울시 및 투자기관 부채 및 채무 총괄 ('14~'10)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3	2012	2011	2010
부채		27,443,623	27,729,459	27,408,636	26,520,228	25,536,414
채무		12,734,853	16,736,714	18,721,230	18,666,137	19,610,631
차액		14,708,770	10,992,745	8,687,406	7,854,091	5,925,783
서울시	부채 ①	5,844,221	4,695,715	4,574,471	4,509,337	4,979,460
	채무 ②	3,241,000	2,932,692	2,966,185	3,176,122	3,817,701
	차액 ①-②	2,603,705	1,763,023	1,608,286	1,333,215	1,161,759
투자기관	부채 ①	21,599,402	23,033,744	22,834,165	22,010,891	20,556,954
	채무 ②	9,493,853	13,804,022	15,755,045	15,490,015	15,792,930
	차액 ①-②	12,105,549	9,229,722	7,079,120	6,520,876	4,764,024
서울메트로	부채 ①	2,953,232	3,331,895	3,303,528	3,240,496	3,070,134
	채무 ②	1,898,624	2,364,031	2,432,778	2,447,137	2,220,117
	차액 ①-②	1,054,608	967,864	870,750	793,359	850,017
도시철도공사	부채 ①	1,255,506	1,160,335	1,043,294	1,101,305	1,152,144
	채무 ②	743,123	703,358	683,002	748,256	820,763
	차액 ①-②	512,383	456,977	360,292	353,049	331,381
SH공사	부채 ①	17,148,957	18,361,846	18,335,073	17,525,390	16,231,570
	채무 ②	6,729,906	10,657,524	12,588,249	12,267,154	12,751,625
	차액 ①-②	10,419,051	7,704,322	5,746,824	5,258,236	3,479,945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①	182,723	133,846	98,668	68,300	41,879
	채무 ②	122,200	79,109	51,016	27,468	425
	차액 ①-②	60,523	54,737	47,652	40,832	41,454
시설관리공단	부채 ①	58,984	45,822	53,602	75,400	61,227
	채무 ②	0	0	0	0	0
	차액 ①-②	58,984	45,822	53,602	75,400	61,227

※ 채무는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 포함

(10) 정책사업이 다른 사업에 예산이 지출된 사례 등

- 행정자치부의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이며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의회의 승인을 통한 “이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14회계연도 결산결과 도시안전본부 소관 **도로시설물(교량) 일상유지보수** 사업에서 도시교통본부가 회계연도중 추진한 **서울역 주변 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에 용역비 1억원이 집행된 바
 - 도시교통본부가 수립한 방침¹³¹⁾에는 해당 용역비 1억원을 도시안전본부로부터 “협조”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예산편성(도시안전본부)과 예산집행(도시교통본부) 부서를 달리한 정책사업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이용” 이외의 방식으로는 집행될 수 없고, 이용의 경우에도 미리 예산총칙에 승인된 총액인건비 등 3개 비목에 한정되어 있는 바 “협조”라는 임의적 방법으로 용역비가 집행될 사안이 아니라 판단됨
 - 또한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 도시안전본부(도로시설과) 소관 예산 1억원을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로 “재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나¹³²⁾

131)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16804 (2014. 9. 5), “서울역 주변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 추진계획”

13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8946 (2015. 5. 8) : 의원요구자료

- 재배정은 실·본부·국이 예산부서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하부 지출원 단위로 내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 용역비 집행은 재배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재배정의 용어적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 아울러 '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시안전본부 소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현상공모**의 경우,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5억원 전액 사고이월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동일 단위사업내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의 사무관리비(예산현액 7억 3,200만원)중 1억 900만원이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국제현상공모지침 및 관리용역에 집행된 바
 -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의 사무관리비중 일부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현상공모**에 집행되었음에도 전용, 변경 등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안전본부가 수립한 방침¹³³⁾에는 소요될 용역비(2억 3300만원)를 다른 세부사업인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에 편성된 사무관리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동일한 단위사업간 편성목을 전용하여 추진할 사안임에도 세출예산의 집행을 다른 세부사업에서 “확보”라는 임의적 방법으로 집행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됨

133)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13115 (2014. 8.29),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 국제현상공모 지침작성 및 관리용역비 확보계획”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사업의 경우에도 석촌지하차도 주변에 도로함몰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방침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중 8,000만원이 기집행된 바
- 동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은 방침¹³⁴⁾을 수립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기편성된 사업예산중 지출한 것으로 방침을 수립한 사업추진 부서가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34) 기술심사담당관-13441 ('14. 8.20),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싱크홀) 발생원인 정밀조사·분석 자문시행”

4 기금 운용 관련

- 2014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6,607억 6,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573억 3,800만원)보다 34억 2,900만원(0.5%)이 증가한 것으로써 14개 기금, 20개 계정이 운용되었음¹³⁵⁾

〈표 3-104〉 기금 현재액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14	2013	2012
기 금 수	14	14	14
회 계 연 도 말 현 재 액	660,768	657,338	622,033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2015. 5. 1)

- 2014회계연도 14개 기금의 운용수입규모는 2조 3,229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416억원 감소한바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수입은 전년대비 △5,141억원 감소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4,422억원 감소, 중소기업육성기금 △899억원 감소,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에서 각각 5억, 176억원 증가, 기후변화기금 △18억 감소, 식품진흥기금 △9억 감소, 사회투자기금 26억 증가한 것임
 - 내부거래 수입인 예수금 수입은 전년대비 3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273억 증가, 사회복지기금 37억원 증가한 것임

135) 서울시 기금은 2002년 18개에 이르렀으나, 정책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기금을 설치 및 폐지 한 바 있어, 기후변화기금과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신설(2007), 신청사건립기금과 한강예술섬건립기금 폐지(2010),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폐지(2012) 된바 있음

- 예탁금상환금 수입은 전년대비 3,531억원 증가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3,017억원 증가,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2억 증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672억 증가,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67억 감소,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기금 14억 감소함
- 2014회계연도 14개 기금의 운용지출규모는 1조 6,621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451억원 감소한바
 -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대비 △207억원 감소한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51억원 감소, 도로굴착복구기금 35억 증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00억 감소,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8억 증가,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1억 감소함
 - 융자금 지출은 전년대비 171억원 증가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400억원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 △390억원 감소, 기후변화기금 95억원 증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및 주거지원계정 각각 △9억원, 122억원 증가, 사회투자기금 △34억원 감소한 것임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감채기금에서 전년대비 160억원 감소하였고,
 - 내부거래 지출인 예탁금은 전년대비 △121억원 감소한 것으로 재정투융자기금 △169억원 감소,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0억원 감소,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및 주거지원계정에서 각각 △5억원 감소, △100억원 감소,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및 구호계정에서 각각 △500억원 감소, 613억원 증가, 기후변화기금 100억 증가, 식품진흥기금 △35억 감소한 것임

〈표 3-105〉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주요항목	2014	2013	증 감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44,464	45,190	△726
	예치금잔액	6,573	6,058	515
	예탁금잔액	37,891	39,132	△1,241
운용수입	합계	23,229	23,645	△416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10,184	14,647	△4,463
	출연금	2,606	2,078	528
	보조금	0	1	△1
	융자금회수(이자포함)	4,876	10,017	△5,141
	예수금	1,709	1,399	310
	이자수입	705	823	△118
	기타수입	289	329	△40
	예탁금상환금	6,471	2,940	3,531
	예치금회수(사고이월포함)	6,573	6,058	515
운용지출	합계	16,621	17,072	△451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15,043	15,373	△330
	고유목적사업비	1,437	1,644	△207
	융자금	2,443	2,272	171
	기본경비	56	54	2
	차입금원리금상환	4	164	△160
	예수금원리금상환	11,101	11,231	△130
	기타지출	2	8	△6
	예탁금	1,578	1,699	△121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39,606	44,464	△4,858
	예치금(사고이월포함)	6,608	6,573	35
	예탁금	32,998	37,891	△4,893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2015. 5. 1)

〈표 3-106〉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증감현황('14~'13)

(단위 : 억원)

구 분	수입 증감				지출 증감				
	총수입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예수금	총지출	비용자성	융자성	예탁금	원리금 상환
계	△416	△5,141	3,531	310	△451	△207	171	△121	△160
채 정 투 용 자 기 금	△1,981	△4,422	3,017	273	△1,909	0	400	△169	0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03	△899	0	0	△346	△51	△390	0	0
식 품 진 흥 기 금	△57	△9	0	0	△32	1	△12	△35	0
기 후 변 화 기 금	△56	△18	0	0	197	3	95	100	0
사 회 투 자 기 금	△88	26	0	0	△36	△2	△34	0	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30	0	0	0	36	35	0	0	0
여 성 발 전 기 금	2	0	0	0	3	3	0	0	0
자 원 회 수 시 설 주 민 치 영 향 치 지역 주 민 회 원 계 계 청	△1	0	22	0	△1	28	0	△30	0
수 도 권 매 립 지 및 환 경 개 선 계 계 청	△100	0	0	0	△200	△200	0	0	0
사 회 복 지 기 금 장 노 인 복 지 계 계 청	△8	0	0	0	△3	△3	0	0	0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계 청	11	5	0	0	3	△1	△0.4	5	0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자 활 계 계 청	△14	0.2	0	0	△17	△3	△9	△5	0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주 거 지 원 계 계 청	79	176	0	37	71	11	122	△100	0
체 육 진 흥 기 금	△7	0	0	0	△5	△5	0	0	0
감 채 기 금	887	0	0	0	889	0	0	0	△160
재 난 관 리 기 금 장 재 난 계 계 청	82	0	△167	0	290	△21	0	△500	0
재 난 관 리 기 금 장 구 호 계 계 청	615	0	672	0	612	△1	0	613	0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6	0	0	0	0.2	0.2	0	0	0
대 외 협 력 기 금 장 국 내 협 력 계 계 청	△4	0	△14	0	△0.6	△0.4	0	0	0
대 외 협 력 기 금 장 국 제 협 력 계 계 청	△15	0	0	0	△1	△2	0	0	0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2015. 5. 1)

- 수입항목중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등, 지출항목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치금 등은 생략함

〈표 3-107〉 기금 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증감액	주요 원인
합 계	660,768	657,338	3,430	
재 정 투 용 자 기 금	127,845	135,085	△7,240	예탁금 이자수입 67억원 감소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65,721	210,778	54,942	회계전입금수입 90억원 증가 용자사업비지출 390억원 감소
식 품 진 흥 기 금	5,442	7,939	△2,497	용자금회수수입 9억원 감소 목적사업비(김장문화제)15억원 지출
기 후 변 화 기 금	21,745	47,177	△25,432	용자금회수수입 18억원 감소 예탁금100억, 용자사업비 95억 증가
사 회 투 자 기 금	32,758	37,974	△5,217	전입금수입 500억원 감소 예치금 회수수입 380억원 증가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15,824	16,463	△638	부담금수입 18억원 증가 도로시설물사업비 35억원 증가
여 성 발 전 기 금	328	371	△43	목적사업비 일부 증가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5,922	5,863	△10,059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5,922	5,863	59	주민지원사업비 일부 감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0,000	0	10,000	사고이월 100억원
사 회 복 지 기 금	17,596	16,140	△1,456	
노 인 복 지 계 정	485	919	△434	예치금 7억원 감소 목적사업비 일부 증가
장 애 인 복 지 계 정	6,804	6,069	735	용자금회수수입 5억원 증가 목적사업비 1억원 감소
자 활 계 정	2,098	1,726	372	예탁금 5억원('13년) 발생
주 거 지 원 계 정	8,209	7,426	783	예수금수입 37억원 증가 용자사업비 122억원 증가 예탁금 100억원 감소
체 육 진 흥 기 금	584	821	△237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
감 채 기 금	9,089	9,230	△141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감소
재 난 관 리 기 금	136,596	157,070	△20,474	
재 난 계 정	135,996	156,836	△20,840	예탁금회수수입 167억원 감소 회계전입금수입 82억원 감소
구 호 계 정	601	234	366	예탁금회수 증가 구호목적사업비 1억원 감소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7,561	6,919	642	예치금 회수수입 7억원 증가
대 외 협 력 기 금	3,756	5,507	△1,751	
국 내 협 력 계 정	2,766	3,134	△369	전입금수입 증가 지자체교류사업비 2억원 감소
국 제 협 력 계 정	990	2,372	△1,382	전입금수입 10억원 감소 예치금회수 5억원 감소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15. 5. 1)

주1)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연말 예치금(사고이월포함) 잔액임

-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³⁶⁾에 따라 주요지출항목의 50% 이하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변경가능한 바
 - '14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521억 1,600억원)보다 3,435억 8,400만원이 증가한 3,957억원으로 증액되었음
 - 특히, 주요지출항목의 50%이상 변경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기금이 '13회계연도에는 단 1건도 없었으나, '14회계연도의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 등 4개 기금(2,704억 9,000만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있음

〈표 3-108〉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동의 현황('14)

기금명	일자	지출계획 변경사유	심사결과
재정투융자기금	제257회 정례회 (2014.12.19)	- 감채기금 예탁금(1,06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예탁금(472억원) 회수 - 예치금 변경(1,058억원→2,479억원)	원안가결
감 채 기 금	제256회 임시회 (2014. 9.29)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1,060억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1,060억원)	원안가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제253회 정례회 (2014. 6.26)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사업비 당초74억원→180억원(106억원 증)	원안가결
여성발전기금	제253회 정례회 (2014. 6.26)	-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공모사업비로 변경	원안가결

13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아울러, 각 기금별 재정운용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행정자치부가 기금계획의 주요항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 편성기준」에 명시¹³⁷⁾한 것은 기금운용주체의 편의적 해석과 운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로 사료되는 바 기금운용계획의 빈번한 변경은 결국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미치지 않는 기금운용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수립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계획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37)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이란 분야, 부문, 정책, 단위사업을 말하는 것임

〈표 3-109〉 회계연도중 지출계획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예치금 등 재무활동비 포함)				주요 변경내역
	당 초(A)	수 정(B)	증 감(C)	변동률(C/A)	
합 계	1,952,301	2,348,001	395,700	20.3	
재 정 투 용 자 기 금	848,542	994,389	145,847	17.2	감채기금, 재난기금 예치금회수(1,532억원) 예치금변경(1,421억원)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532,257	572,920	40,663	7.6	용자사업비 800억 감소 예치금 1,206억원 증가
식 품 진 흥 기 금	11,477	14,194	2,717	23.7	김치로드페스티벌 15억 증가, 예치금 12억 증가
기 후 변 화 기 금	50,545	59,911	9,366	18.5	용자사업비 80억 증가, 예치금 13억 증가
사 회 투 자 기 금	41,315	41,082	△233	△0.6	용자사업비 25억 감소, 예치금 23억 증가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29,051	38,754	9,703	33.4	도로굴착시설비 62억, 예치금 35억 증가
여 성 발 전 기 금	1,472	1,472	0	0.0	공모사업 5억 증액, 예치금 5억 감소
자 원 회 수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기 금	42,483	43,221	738	1.7	
자 원 회 수 시 설 주 변 영 향 지 역 주 민 지 원 계 정	32,483	33,221	738	2.3	폐기물처리지원 5억 및 예탁금 20억 감소, 예치금 32억 증가
수 도 권 매 립 지 및 주 변 지 역 환 경 개 선 계 정	10,000	10,000	0	0.0	
사 회 복 지 기 금	25,227	46,943	21,716	86.1	
노 인 복 지 계 정	1,533	1,533	0	0.0	
장 애 인 복 지 계 정	7,538	9,648	2,110	28.0	예치금 22억 증가
자 활 계 정	1,486	2,449	963	64.8	예치금 9억 증가
주 거 지 원 계 정	14,670	33,313	18,643	127.1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용자사업비 130억 증가, 예수원리금상환 37억 등
체 육 진 흥 기 금	2,402	2,402	0	0.0	
감 채 기 금	18,731	124,731	106,000	565.9	재투예수금 원금상환 1,060억 발생
재 난 관 리 기 금	330,930	390,113	59,183	17.9	
재 난 계 정	204,261	263,444	59,183	29.0	예수금원리금상환 475억 예치금 117억 증가
구 호 계 정	126,669	126,669	0	0.0	예치금 1,200만원 증가 의료및구호비 1,200만원 감소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0,698	10,698	0	0.0	남북협력사업비 2,000만원 증가, 기금관리비 2,000만원 감소
대 외 협 력 기 금	7,171	7,171	0	0.0	
국 내 협 력 계 정	4,556	4,556	0	0.0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변경
국 제 협 력 계 정	2,615	2,615	0	0.0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15. 5. 1)

(1) **고유목적사업**

○ 2014회계연도의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은 당초 지출계획현액 2,047 억원중 70.1%, 1,436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141억 4,4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6.9%)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69억 4,3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22.9%)이 불용되었음

〈표 3-110〉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소계	93	204,765	143,678	14,144	46,943	22.9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4	51,682	45,363	0	6,319	12.2	
식 품 진 흥 기 금	11	2,177	2,119	0	58	2.6	
기 후 변 화 기 금	11	8,335	6,004	0	2,331	27.9	
사 회 투 자 기 금	1	50	20	0	30	60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2	24,630	23,192	239	1,199	4.8	
여 성 발 전 기 금	1	1,422	1,136	0	286	20.1	
자 원 회 수 시 설 주 변 영 향 지 역 주 민 지 원 계 정	10	25,142	23,445	85	1,612	6.4	
수 도 권 매 립 지 및 주 변 지 역 환 경 개 선 계 정	1	10,000	0	10,000	0	0	
사 회 복 지 기 금	노 인 복 지 계 정	11	1,016	939	0	77	7.5
	장 애 인 복 지 계 정	2	783	731	0	52	6.6
	자 활 계 정	6	382	378	0	4	1.0
	주 거 지 원 계 정	3	7,164	6,997	0	167	2.3
체 육 진 흥 기 금	5	1,729	1,722	0	7	0.4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3	59,937	28,058	3,636	28,243	47.1
	구 호 계 정	3	800	390	0	410	51.2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1	4,920	198	0	4,722	95.9	
대 외 협 력 기 금	국 내 협 력 계 정	8	2,496	1,698	0	798	31.9
	국 제 협 력 계 정	10	2,100	1,288	184	628	29.9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15. 5. 1)

- 일반적으로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경우에는 한 회계연도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동년도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단년도주의에 근거하여 불용액을 다음회계연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나
 -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용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을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재활용됨으로써 매년 반복적인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불승인 등으로 당초 편성된 49억 2,000만원의 4.0%, 1억 9,800만원만 집행되고, 지출계획현액의 95.9%, 47억 2,2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바
 - 당초 동 기금으로 추진예정인 서울-평양 교류음악회 지원, 서울성-평양성 축조기술 비교와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토론회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예산현액 12억원)”, “산림 식재용 묘목 지원 등 환경분야협력사업(예산현액 4억원)”,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지원 등 “보건의료지원사업(예산현액 10억원)”, 빵·밀가루·학용품지원 등 “영유아 등 취약계층지원사업(15억원)”, 식량·식수·의약품지원 등 “재난·재해구호 지원(예산현액 5억원)” 등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투자펀드 출자”사업은 벤처기업의 기술력, 시장성 등에 대한 다각적 평가¹³⁸⁾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투자시점을 '15년도로 연기¹³⁹⁾함에 따라 예산현액 58억원의 51.7%, 30억원이 불용된 것임
- **기후변화기금** 중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당초 8,000가구¹⁴⁰⁾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772가구로 감소함에 따라 예산현액 38억원의 57.6%, 21억 9,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미니태양광 설치 부적합 및 투자비 회수기간이 과다 소요¹⁴¹⁾되는 등의 사유로 '14년 12월 기준 7,150건(신청)의 75.5%, 5,249건이 취소된바 향후 미니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사회투자기금** 중 “사회적가치 평가프로그램”은 평가지표 및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행복나눔재단과 공동 연구용역¹⁴²⁾을 수행함에 따라 비용절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5,000만원의 60.0%, 3,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138) 투자유치과-2915('14. 4. 1) “2015 「서울 바이오메디컬 펀드」 관리·운영계획”
 - 바이오메디컬펀드 존속기간('11. 1~'21. 1), 약정총액(750억원-납입총액 525억원), 위탁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펀드운용(한화인베스트먼트-옥스포드 바이오사이언스 파트너 컨소시엄)
 - '14년도말 까지 총 15개 기업 388억원을 투자함

139) 바이오펀드 기금 예산관련 회의결과('14.11.11, 투자유치과)

140) 녹색에너지과-9281('14. 5.12) “2014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계획”
 - 미니태양광 지원대상이 서울지역 공동주택 거주자로 제한됨(남향베란다 필수 보유)

141) 투자비 회수기간 : 월 전기소비량이 320kw이상은 약 3~5년, 월300kw이하는 7년이상

142) 사회적 경제 「사회가치 측정지표」 정교화 및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2014. 6)

-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중 “어르신주거지원”은 ’14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주거비를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¹⁴³⁾함에 따라 예산현액 1억원의 61.0%, 6,1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연구용역”사업¹⁴⁴⁾의 경우, 예산현액 26억 3,700만원의 64.7%, 17억 600만원이 불용된 바
 - 동 기금 연구용역사업의 경우, ’13회계연도 예산현액 76억 5,900만원의 50.6%, 38억 7,800만원이 불용된바 기금사업은 필요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편성시 연구용역비를 감액편성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해당 연구용역중 “지하굴착 관련 지하수관리기준 수립(예산액 2억원)¹⁴⁵⁾”의 경우, 기금 실사용부서가 일반회계로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¹⁴⁶⁾”에 동 기금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2억원중 1억 1,000만원만 집행함으로써 기금사업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되나
 - 용역을 실제 추진한 부서의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적시성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계가 다른 사업을 하나의 용역사

143)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북권주거복지센터-3058(’14. 7.14) “2014년 7~9월 계약완료 및 재계약 체결안내(운영기관)” - 재계약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4.8%인상)

144)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소관 연구용역사업

145) 하천관리과-17727(’14.11. 7)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6차) 개최결과 보고”
 “ 「지하수 관련 지하굴착 기준수립 연구용역」 은 도로함몰 및 동공이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여 관련 연구는 필요하나, 용역사 선정에 투명성 확보”

146) 물관리정책과-2160(’13. 2.14) “2015년~2024년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발주”
 - 용역기간(20개월, ’13. 5~’15. 1), 사업비(7억 6,100만원)

업으로 추진할 경우, 회계간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 사업으로 용역을 계획·추진하기에 앞서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¹⁴⁷⁾에 따르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금이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조성 기금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금 용자사업

○ 2014회계연도의 기금용자사업은 당초 지출계획현액 3,134억원의 22.0%, 690억 5,500만원이 불용된바 지난 '13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불용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3-111〉 기금별 용자사업 집행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 계	14	313,400	244,345	-	69,055	22.0	
재 정 투 용 자 기 금	1	120,000	120,000	-	-	-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1	120,000	70,000	-	50,000	41.6	
식 품 진 흥 기 금	1	3,000	818	-	2,182	72.7	
기 후 변 화 기 금	3	26,000	23,138	-	2,862	11.0	
사 회 투 자 기 금	4	18,500	7,488	-	11,012	59.5	
사 회 복 자 기 금	장애인복지계정	1	4,800	2,440	-	2,360	49.1
	자 활 계 정	1	600	245	-	355	59.1
	주거지원계정	2	20,500	20,216	-	284	1.3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15. 5. 1)

○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기업 직접용자”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 2,000억원을 1,200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감액변경(148)하여 운용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감소로 예산현액 1,200억원의 41.7%, 500억원이 불용된 바

148) 소상공인지원과-13384 ('14.10.28) “2014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기금포함)”
- 시설자금 1,600억원→800억원(△800억원), 재해중소기업지원 200억원, 영세자영업 지원 200억원

- 동 기금사업중 시설자금은 예산현액 1,200억원의 66.6%, 8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해당 기금사업에 대한 수요파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연 4.0%로 정하여 타 중소기업시설자금(2.5%~3.7%)¹⁴⁹⁾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금리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14년 10월 불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시설자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하였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13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 1,900억원의 42.6%, 809억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부서의 정확한 수요예측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기금사업의 경우, 단년도 원칙이 적용되는 예산사업과 달리 전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이 다음해 기금재원으로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불용액 발생에 둔감할 수 있어 향후 예상되는 불용액을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이자수입을 증가시키는 등의 능동적인 재원관리방안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외협력기금** 중 “서울·타시도 연계 글로벌 문화체험 상품개발·운영”은 당초 한국관광공사 사업이관을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관광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관이 어려워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전액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을 '13회계연도에 서울시 주도로 6개 지방자치단체(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전남, 경북)와 연계하여 시행되었으나, 홍보 및 노

149) 중소기업정책자금종합센터(www.smbcs.co.kr)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현황
 - 연금리(2.5%~3.7%), 기간(5~10년),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선부족 등의 문제로 당초 4,000명에서 72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자치단체보다는 전국단위의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자치단체가 참여·협력하는 방식('14. 2)¹⁵⁰⁾으로 계획이 변경된 바

- 향후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의 사업이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관광분야 경쟁력 확보와 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¹⁵¹⁾

○ **사회투자기금** 중 “사회적기업 용자”는 당초 예산액 30억원을 15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감액변경('14.10)¹⁵²⁾하여 운용하였으나, 결산 결과 예산현액 15억원의 88.3%, 13억 2,400만원이 불용된 것인바 이는 민간자금 매칭, 매출조건부 용자 및 경영컨설팅(4개월 소요) 등의 엄격한 용자조건¹⁵³⁾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14년 10월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용자금에 대하여 감액변경하였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한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사료됨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사업은 예산현액(60억원)의 53.3%, 32억원이 불용된바 이는 사회적 금융을 수행하는 법인이 확보한

150) 관광정책과-2213('14. 2.24) “버스자유여행상품(K-SHUTTLE)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2014년도 사업 운영방식 변경계획”

151) (재)한국방문위원회 VKC 15-051GH('15. 4.13) “서울-지방간 K-Shuttle 사업추진 관련 지자체 간담회 참석 및 사업계획(안) 접수 요청의 건” - '15년 4월 현재 사업추진 절차 진행중임

152) 경제정책과-12659('14.10.30)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53) 사회적기업 용자사업의 용자조건

- 지원내용(시 30억원, 민간 30억원 총 60억원), 지원규모(2억원이하/기업당), 용자기간 및 조건(1년거치 4년분할, 연2%이자), 선정기준(사회적 가치 및 재무건전성 평가)

재원에 대해 사회투자기금에서 1:1 매칭형태로 지원하고자 민간용자금을 편성하였으나, 사회적 금융에 대한 낮은 인식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용자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¹⁵⁴⁾

- “사회적 프로젝트용자사업”은 예산현액(60억원)의 91.7%, 55억원이 불용된바 '14회계연도부터 사회적프로젝트를 평가하여 시와 민간이 1:1 매칭으로 연 2%의 저리로 용자하기 위하여 민간용자금을 편성하였으나, 사회적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우량 사회적 프로젝트 발굴이 어려워 과다한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은 민간의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민간부분의 매칭비율을 조정하고, 용자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중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¹⁵⁵⁾”의 경우, 예산현액 48억원중 49.2%, 23억 6,000만원이 불용된바 이는 전세가격 상승 및 집주인의 전세권 설정 기피로 전세주택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당초 목표 60가구에서 실제 33가구로 자금대여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154) '13회계연도에 예산현액(200억원)의 48.6%, 97억 1,000만원 불용되었음

155) 장애인자립지원과-2634('14. 2.17)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 지원목표(600가구, 8,000만원/가구당), 지원금액(전세보증금 1가구당 7,500만원~8,500만원) 지원기간(2년 원칙), 선정기준(자치구별 추천 50가구,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5가구 등) 자치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방식

- 동 사업의 경우, '11~'13회계연도에도 각각 예산현액의 44.7%, 25.7%, 48.0%가 불용된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중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¹⁵⁶⁾”의 경우, 예산현액 6억원의 59.2%, 3억 5,500만원이 불용된바 이는 경기 불황 및 상가 임대주의 전세임대 기피로 인하여 당초 12개 기업에서 7개 기업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일부 기금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향후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¹⁵⁷⁾을 통하여 기금설치의 취지와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및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금재평가 및 기금일몰제¹⁵⁸⁾를 활용한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56) 자활기업 및 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개요

- 지원대상(자활기업 및 사업단), 지원내용(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1% 금리), 지원기간(2년, 최장6년간 연장가능)

1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15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기금사업이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입(159)시켜 불필요하게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 등을 포함하여 기금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통폐합(160)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기금수익률

- 기금수익률의 경우(161), 2014회계연도에 2.58%로 나타나 지난 회계연도 보다 0.49%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12〉 기금 수익률 현황 ('14~'12)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2012
수익률(A/B)	2.58	3.07	3.53
이자수익(A)	21,204	24,285	18,380
운용평잔(B)	822,329	790,474	521,140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15. 5. 1)

- 체육진흥기금(2.90%) 등 9개 기금, 9개 계정(162)은 평균수익률 (2.58%)이상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159) 2012년 9월 청소년복지계정을 폐지하고 조성잔액은 일반회계로 귀속한 사례가 있음

16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61) 기금수익률=이자수익/운용평잔 ×100

162) 기후변화기금(2.82%), 사회투자기금(2.74%), 남북교류협력기금(2.71%),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2.69%), 도로굴착복구기금(3.03%), 중소기업육성기금(2.6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2.6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2.60%)

계정(2.54%) 등 8개 기금, 11계정¹⁶³⁾은 평균수익률(2.58%)미만의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개별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2.0%)에 예치하거나 이율이 분기별로 변동되는 정기예금(2.0%~2.5%¹⁶⁴⁾)에 예탁함으로써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14회계연도의 경우,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및 사회투자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이 '13회계연도보다 기금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에는 기금별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별 여유자금과 연도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용예상액 등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¹⁶⁵⁾에 따라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기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3) 재정투융자기금(2.4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2.43%),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2.39%), 식품진흥기금(2.24%), 여성발전기금(2.23%),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2.0%),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1.96%),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1.88%),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1.84%), 감채기금(1.76%)

164) 우리은행 제공 예금 금리현황 ('14.12.31 기준)

① 보통예금 : 2.0%, ② 정기예금 : 1개월(2.01%), 3개월(2.29%), 6개월(2.06%), 12개월(2.21%)

165)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62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희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표 3-113〉 기금 계정별 수익률 현황(201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증감액	수익률 순위 ^{주1)}
채	정 투 용 자 기 금	2.47	3.07	△0.60	11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63	2.91	△0.28	7
식	품 진 흥 기 금	2.24	3.08	△0.84	14
기	후 변 화 기 금	2.82	3.29	△0.47	2
사	회 투 자 기 금	2.74	2.37	0.37	3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2.66	3.03	△0.37	6
여	성 발 전 기 금	2.23	2.52	△0.29	15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	-	-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2.39	3.06	△0.67	13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0	2.00	-	16
사	회 복 지 기 금	-	-	-	-
	노 인 복 지 계 정	2.60	2.77	△0.17	9
	장 애 인 복 지 계 정	2.54	2.85	△0.31	10
	자 활 계 정	1.96	3.27	△1.31	17
	주 거 지 원 계 정	1.88	3.15	△1.27	18
체	육 진 흥 기 금	2.90	2.59	0.31	1
감	채 기 금	1.76	3.06	△1.30	20
재	난 관 리 기 금	-	-	-	-
	재 난 계 정	2.69	3.29	△0.60	5
	구 호 계 정	1.84	2.96	△1.12	19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2.71	4.58	△1.87	4
대	외 협 력 기 금	-	-	-	-
	국 내 협 력 계 정	2.43	2.65	△0.22	12
	국 제 협 력 계 정	2.60	3.08	△0.48	8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5470 ('15. 5. 1)

주1) 기금별 수익률 순위는 2014회계연도 기준임

〈표 3-114〉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고유목적사업(102개)		210,204	148,261	14,144	46,943	22.9
중소기업육성기금(3개)		51,682	45,363	0	6,319	12.2
1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45,750	42,445	0	3,305	7.2
2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2	118	0	14	10.6
3	투자펀드 출자(바이오)	5,800	2,800	0	3,000	51.7
식품진흥기금(17개)		4,766	4,336	0	430	9.0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49	45	0	4	8.2
2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618	598	0	20	3.2
3	2014 서울 김치로드페스티벌	1,497	1,326	0	171	11.4
4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74	168	0	6	3.4
5	음식문화 개선	323	322	0	1	0.3
6	싱겁게 먹는 식생활배움터 조성	147	147	0	0	0
7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감시체계 구축	38	37	0	1	2.6
8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257	251	0	6	2.3
9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31	28	0	3	9.7
10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인증제 운영	390	244	0	146	37.4
11	식품안전 전문교육	45	43	0	2	4.4
12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02	298	0	4	1.3
13	건강한 먹거리가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지원	25	24	0	1	4.0
14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190	182	0	8	4.2
15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36	136	0	0	0.0
16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100	51	0	49	49.0
17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444	436	0	8	1.8
기후변화기금(12개)		8,878	6,474	0	2,404	27.1
1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1,377	1,293	0	84	6.1
2	녹색기술 인력양성 사업	298	298	0	0	0.0
3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800	1,610	0	2,190	57.6
4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선정지원	882	871	0	11	1.2
5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80	342	0	38	10.0
6	에너지 수호천사단 구성·운영	520	487	0	33	6.3
7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257	223	0	34	13.2
8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운영	491	484	0	7	1.4
9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4	104	0	0	0.0
10	서울햇빛지도 시스템 고도화	136	129	0	7	5.1
11	학교 태양광 햇빛발전소 설치 시범사업	600	600	0	0	0.0
12	목재펠릿 보급 확대	33	33	0	0	0.0
사회투자기금(2개)		1,476	1,273	0	203	13.8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1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50	20	0	30	60.0
2	위탁수수료 지급	1,426	1,253	0	173	12.1
도로굴착복구기금(2개)		24,630	23,192	239	1,199	4.9
1	도로굴착복구공사	24,130	22,953	0	1,177	4.9
2	도로굴착복구공사 품질 및 복구비 현실 회를 위한 조사연구	500	239	239	22	4.4
여성발전기금(1개)		1,452	1,166	0	286	19.7
1	공모사업추진	1,452	1,166	0	286	19.7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10개)		25,142	23,445	85	1,612	6.4
1	양천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3,218	2,670	0	548	17.0
2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지원	1,645	1,441	0	204	12.4
3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3,921	3,279	0	642	16.4
4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14	108	0	6	5.3
5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90	190	0	0	0.0
6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90	72	0	18	20.0
7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70	56	0	14	20.0
8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5,500	5,236	85	179	3.3
9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10,280	10,279	0	1	0.0
10	노원주민 편의시설 이용료	114	114	0	0	0.0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1개)		10,000	0	10,000	0	0.0
1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 저감	10,000	0	10,000	0	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11개)		1,026	943	0	83	8.1
1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69	169	0	0	0.0
2	어르신 자원봉사	118	118	0	0	0.0
3	어르신 정보화 교육	20	20	0	0	0.0
4	경로효친 행사지원	45	45	0	0	0.0
5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45	35	0	10	22.2
6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77	75	0	2	2.6
7	어르신 지도자육성	72	72	0	0	0.0
8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75	75	0	0	0.0
9	어르신 주거지원	100	39	0	61	61.0
10	어르신 문화활성화 공모사업	50	46	0	4	8.0
11	세대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255	249	0	6	2.4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2개)		783	731	0	52	6.6
1	장애인단체공모사업지원	700	648	0	52	7.4
2	장애인 복지공동체사업 지원	83	83	0	0	0.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6개)		397	378	0	19	4.8
1	자활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69	69	0	0	0.0
2	자활사업 운영 지원	76	76	0	0	0.0
3	광역자활기업 설립 지원	87	87	0	0	0.0
4	자활상품 판로 개척 지원	30	30	0	0	0.0
5	저소득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육성	115	96	0	19	16.5
6	저소득시민 자산형성지원	20	20	0	0	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3개)		7,164	6,997	0	167	2.3
1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6,510	6,360	0	150	2.3
2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650	633	0	17	2.6
3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4	4	0	0	0.0
체육진흥기금(5개)		1,729	1,722	0	7	0.4
1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470	468	0	2	0.4
2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280	279	0	1	0.4
3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80	78	0	2	2.5
4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20	18	0	2	10.0
5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879	879	0	0	0.0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4개)		60,260	28,279	3,636	28,345	47.0
1	재난예방	36,494	26,574	2,532	7,388	20.2
2	응급복구	21,129	1,078	800	19,251	91.1
3	연구용역	2,637	627	304	1,706	64.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3개)		809	390	0	413	51.1
1	이재민재해보상	300	40	0	260	86.7
2	의료및구호비지원	209	67	0	142	67.9
3	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	300	289	0	11	3.7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남북교류협력기금(1개)		4,920	198	0	4,722	96.0
1	남북교류협력사업	4,920	198	0	4,722	96.0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10개)		2,584	1,779	0	805	31.2
1	서울-타시도 연계 글로벌 문화체험 상품개발·운영	150	0	0	150	100.0
2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70	69	0	1	1.4
3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 운영	580	562	0	18	3.1
4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284	233	0	51	18.0
5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440	0	560	56.0
6	한강공원 문화장터 운영	54	54	0	0	0.0
7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34	27	0	7	20.6
8	상생공동체 발전방향 연구 및 기반구축	114	97	0	17	14.9
9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268	268	0	0	0.0
10	아토피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30	29	0	1	3.3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10개)		2,506	1,589	184	733	29.2
1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 학위과정	704	620	0	84	11.9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532	433	0	99	18.6
3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80	54	0	26	32.5
4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 센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	18	0	2	10.0
5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40	40	0	0	0.0
6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70	60	0	10	14.3
7	'14년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330	321	0	9	2.7
8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30	29	0	1	3.3
9	몽골 어린이 놀이터 조성	200	14	184	2	1.0
1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0	0	500	100.0

(단위 : 백만원, %)

기금/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용 자 사 업 (1 3 개)		193,400	124,345	0	69,055	35.7
중소기업육성기금(1개)		120,000	70,000	0	50,000	41.7
1	중소기업직접용자	120,000	70,000	0	50,000	41.7
식품진흥기금(1개)		3,000	818	0	2,182	72.7
1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	3,000	818	0	2,182	72.7
기후변화기금(3개)		26,000	23,138	0	2,862	11.0
1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	23,000	20,670	0	2,330	10.1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지원	1,000	1,000	0	0	0.0
3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 자지원	2,000	1,468	0	532	26.6
사회투자기금(4개)		18,500	7,488	0	11,012	59.5
1	사회적기업 용자	1,500	176	0	1,324	88.3
2	소셜하우징 사업 용자	5,000	4,012	0	988	19.8
3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용자	6,000	2,800	0	3,200	53.3
4	사회적프로젝트용자사업	6,000	500	0	5,500	91.7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1개)		4,800	2,440	0	2,360	49.2
1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4,800	2,440	0	2,360	49.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1개)		600	245	0	355	59.2
1	전세점포임대자금용자지원	600	245	0	355	59.2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2개)		20,500	20,216	0	284	1.4
1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18,000	17,716	0	284	1.6
2	저소득층주택임대보증금용자	2,500	2,500	0	0	0.0

5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1)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¹⁶⁶⁾에 따라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표 3-115〉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자산총계	121,838,845	100.0	121,791,365	100.0	47,480
유동자산	3,783,804	3.1	3,581,615	2.9	202,189
투자자산	15,639,920	12.8	15,532,404	12.8	107,516
일반유형자산	10,010,132	8.2	5,607,069	4.6	4,403,063
주민편의시설	20,612,419	16.9	24,560,478	20.2	△3,948,059
사회기반시설	71,342,557	58.6	72,142,210	59.2	△799,653
기타비유동자산	450,013	0.4	367,589	0.3	82,424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21,838,845	100.0	121,791,365	100.0	47,480
부채총계	5,844,221	100.0	4,695,715	100.0	1,148,506
장기차입부채	2,499,193	42.8	2,069,035	44.1	430,158
유동부채	1,502,684	25.7	1,055,283	22.5	447,401
기타비유동부채	1,842,344	31.5	1,571,397	33.5	270,947
순자산총계	115,994,624	100.0	117,095,650	100.0	△1,101,026
고정순자산	97,877,602	85.4	100,409,118	85.7	△2,531,516
특정순자산	3,517,101	3.0	3,479,501	3.0	37,600
일반순자산	14,599,921	11.6	13,207,031	11.3	1,392,890

166) 「지방재정법」

-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 포함)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014회계연도의 **총자산은 121조 8,388억 4,500만원**으로서 직전 회계연도(121조 7,913억 6,500만원)보다 474억 8,000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토지·건물·구축물 등 “일반유형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1조 6,194억, “유동자산”중 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현금 및 예금 증가분 3,318억원, “투자자산”중 지방공기업 출자금 2,547억원, “일반유형자산”중 집기비품 및 세입세출외현금 등 634억원 등을 포함한 총 2조 2,693억원이 증가한 것임
 - 주요 감소사유는 건설중인 자산을 완공하여 자산으로 대체함에 따른 감소분 △2조 1,053억, “유동자산”중 미수세금 △715억원, “일반유형자산”중 차량운반구 등 기타재산 △451억원 감소 등을 포함한 총 △2조 2,219억원이 감소한 것임
 -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이 전체자산(121조 8,388억원)의 83.7%(101조 9,651억원)이며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출자금 등의 투자자산이 12.8%(15조 6,399억원),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 3.1%(3조 7,838억원), 전산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0.4%(4,500억원)으로 구성됨
- 2014회계연도의 **총부채는 5조 8,442억 2,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4조 6,957억 1,500만원)보다 1조 1,48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주요 부채 증가사유로는 도시철도공채 3,901억원, “기타비유동부채”중 SH임대보증금 2,139억원, 시내 버스재정지원금 3,661억,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1,819억¹⁶⁷⁾, 공사·공단 미지급금 619억, 채무의 미지급이자 216억, 세입세출외현금 404억, 기타 509억 원 등 1조 3,268억 원이 증가한 것임
- 주요 부채 감소사유는 차입금 △1,318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부채 △465억 원 등 총 △1,783억원이 감소한 것임
- **장기차입부채**¹⁶⁸⁾는 직전 회계연도(2조 690억 3,500만원)보다 4,30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부채(5조 8,442억원)의 42.8%(2조 4,991억 9,300만원)로서 금융기관차입금 110억원(1.6%), 정부국민주택기금 6,329억 3,700만원(94.0%), 정부환경개선특별회계 255억원(3.8%),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42억원(0.6%) 등임

167) 지방교육세 전입금 1,425억 4,300만원, 시도세전입금 411억 3,400만원, 담배소비세전입금 선수금 △18억 800만원

168)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후 1년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이 있음

〈표 3-116〉 장기차입부채^{주1)} 현황 ('14~'13)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3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C=A-B)	641,674		673,637		△31,963
	계 (A)	673,637	100.0	705,462	100.0	△31,825
	금융기관차입금	11,000	1.6	13,000	1.8	△2,000
	정부국민주택기금	632,937	94.0	648,939	92.0	△16,002
	정부환경개선특별회계	25,500	3.8	36,623	5.2	△11,123
	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4,200	0.6	6,900	1.0	△2,700
	차감(유동성대체액) ^{주2)} (B)	31,963		31,825	-	138
지방채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C=A-B)	1,857,519		1,395,398		462,121
	계 (A)	2,367,363	100.0	1,977,231	100.0	390,132
	채권발행 (SOC및일자리창출등)	300,000	12.7	300,000	15.2	-
	도시철도공채	1,917,190	81.0	1,527,058	77.2	390,132
	지역개발채권	150,173	6.3	150,173	7.6	-
	차감(유동성대체액) (B)	509,844		581,833		△71,989

주1) 장기차입부채(2조4,992억원)은 장기차입금(6,417억원)과 지방채증권(1조 8,575억원)임

주2) 차감(유동성대체액) : 장기차입부채의 경우, 상환기간이 채무상대 표시일(결산일)로 부터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으로 대체함

- **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1조 552억 8,300만원)보다 4,474억원이 증가한 1조 5,026억 8,400만원(전체 부채의 25.7%)으로 무상보육지원을 위한 단기민간차입금 1,000억원과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액 5,418억원,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 8,608억원으로 구성됨

- 행정자치부 규정¹⁶⁹⁾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후 1년 이내에 상환될 장기차입부채를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로 분류하도록 하여 유동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유동부채가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하여 유동비율(current ratio)¹⁷⁰⁾이 낮아진바 향후 유동비율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동부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표 3-117〉 유동부채 현황 ('14~'13)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계	1,502,684	-	1,055,283	-	447,401
단기차입금	100,000	-	200,000	-	△1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41,807	100.0	613,658	100.0	△71,851
장기정부차입금	30,863	5.7	31,825	5.2	△962
장기차입금	1,100	0.1	-	-	1,100
장기지방채증권	509,844	94.1	581,833	94.8	△71,989
기타유동부채	860,877	100.0	241,625	100.0	619,252
단기예수보관금	46,501	5.4	74,069	30.7	△27,568
일반미지급금	642,145	74.6	29,742	12.3	612,403
일반미지급비용	94,454	11.0	57,905	24.0	36,549
선수금	29,298	3.4	27,916	11.6	1,382
선수수익	48,479	5.6	51,993	21.5	△3,515

※ 자료근거 : 재무과-27460 ('15. 5.29)

-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12회계연도에는 3.7%, '13회계연도 3.8%, '14회계연도에는 4.8%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14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보다 부채비율이 1%포인트 증가한 것임

169)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안전행정부 훈령 제32조, (2014. 2), p.148
 170)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며, 2014회계연도 2.51(=3조 7,838억원/1조 5,026억원), 2013회계연도 3.39(=3조 5,816억원/1조 553억원)임

- 부채의 경우, SH임대보증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바 장단기 부채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18〉 재정상태 변동 현황 ('14~'12)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3	2012
자 산(a)	1,218,388	1,217,914	1,217,722
부 채(b)	58,442	46,957	45,745
순 자 산 (a-b)	1,159,946	1,170,957	1,171,978
부채비율 (b/a)	4.8	3.8	3.7

-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직전회계연도(117조 956억 5,000만원)보다 △1조 1,010억 2,600만원 감소한 115조 9,946억 2,400만원으로
 - 주요감소사유는 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74억 8,0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1,489억 9,000만원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 고정순자산¹⁷¹⁾은 전체 순자산의 85.4%, 97조 8,776억 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00조 4,091억 1,800만원)보다 △2조 5,315억 1,600만원 감소한 것임

171)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중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 증권 등을 제외한 것

- 특정순자산¹⁷²⁾은 전체 순자산의 3.0%, 3조 5,171억 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조 4,795억원)보다 376억원 증가한 것임
- 일반순자산¹⁷³⁾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전체 순자산의 11.6%, 14조 5,999억 2,100만원이며 직전회계연도(13조 2,070억 3,100만원)보다 1조 3,928억 9,000만원 증가한 것임

(2)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¹⁷⁴⁾에 근거하여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① 성질별 재정운영표

- 2014회계연도에 발생한 총비용(19조 4,429억 4,100만원)에서 총수익(20조 631억 9,5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¹⁷⁵⁾는 6,202억 5,400만원임

172)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 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

173) 순자산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일반순자산은 자치단체가가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을 의미함

174)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17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②의 3에 따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함

- 특히, 직전회계연도보다 기타수익이 1조 7,794억원이 감소한바 '13회계연도의 경우, '16년부터 도입될 IFRS(국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서울메트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잉여금(1조 7,954억원)이 기타수익에 포함되었으나, '14회계연도의 경우, 이미 지난해 회계연도에 적용된 사항으로 서울메트로 자산재평가잉여금이 적용될 수 없어 기타수익이 감소된 것임

〈표 3-119〉 재정운영표 (성질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재정운영결과 (A-B)	620,254	-	2,846,501	-	△2,226,247
총비용(A)	19,442,941	100.0	18,108,093	100.0	1,334,848
인건비	1,506,074	7.7	1,404,015	7.8	102,059
운영비	4,302,087	22.1	4,097,952	22.6	204,135
정부간이전비용	10,115,942	52.0	9,071,943	50.1	1,043,999
민간등이전비용	2,345,691	12.1	2,481,008	13.7	△135,317
기타비용	1,173,147	6.0	1,053,175	5.8	119,972
총수익(B)	20,063,195	100.0	20,954,593	100.0	△891,398
자체조달수익	16,355,885	81.5	15,817,928	75.5	537,957
정부간이전수익	3,409,007	17.0	3,058,788	14.6	350,219
기타수익	298,303	1.5	2,077,877	9.9	△1,779,574

- 재정운영표중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18조 1,080억 9,300만원)보다 1조 3,348억원이 증가한 19조 4,429억 4,1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비용이 전체 비용(19조 4,377억원)의 52.0%, 10조 1,159억 4,200만원, 운영비가 전체의 22.1%, 4조 3,020억

8,7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은 전체의 12.1%, 2조 3,456억 9,100만원, 인건비는 전체의 7.7%, 1조 5,060억 7,400만원, 기타비용은 전체의 6.0%, 1조 1,675억 1,600만원으로 구성됨

- 주요 증가사유는 시도비보조금 5,767억, 민간보조금(운수업체보조금) 3,570억, 교육청전출금 2,077억, 교육기관(무상급식비)보조금 1,392억, 조정교부금 1,433억, 유가증권평가손실액 1,439억, 연료비 1,646억, 시설장비유지비 1,159억, 인건비 1,021억, 이자비용 281억, 기타(감가상각비 등)1,121억 원 증가 등 총 2조 967억원이 증가한 것임

- 주요 감소사유는 공사·공단전출금 5,210억원, 위탁대행사업비 1,225억, 기타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운영비 1,184억 원 감소 등 총 7,619억 원이 감소한 것임

○ 재정운영표중 **총수익**은 직전회계연도 20조 9,545억원보다 △ 8,913억원 감소한 20조 631억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이 전체수익의 81.5%, 16조 3,558억원,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전체수익의 17.0%, 3조 4,090억원, 기타수익이 전체수익의 1.5%, 2,983억원임

- 주요 증가사유 취득세 등 지방세수익 1조 3,950억, 국고보조금수익 4,096억, 기타(미수세금 감소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 등) 16억원 등 총 1조 8,062억원이 증가한 것임

- 주요 감소사유로는 유가증권(서울메트로 출자금) 재평가잉여금수익 △1조 7,954억, 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입등 임시세외수익 △8,714억, 기타 △308억원 등 총 △2조 6,976억원이 감소한 것임

○ 재정운영표중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6,203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8,465억원)보다 2조 2,262억원 감소된 것임

〈표 3-120〉 재정상태 변동 현황 ('14~'12)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3	2012
비 용(a)	194,429	181,081	168,746
수 익(b)	200,632	209,546	186,355
재정운영결과 (c=a-b)	(6,203)	(28,465)	(17,609)
비 율 (c/b×100)	3.1	13.5	9.4

※ 괄호는 흑자를 의미

- 주요 감소사유로는 직전회계연도에 일시적으로 반영된 서울메트로 자산재평가잉여금 수익 1조 7,954억원이 '14회계연도에는 미적용되어 발생한 것임
- 행정자치부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자산의 공정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를 2016년도 결산부터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서울메트로는 '13년 12월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분자산(취득원가기준 1,425억원)에 대한 재평가가가치가 2조 669억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운영보고서중 총수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

었고, 부채비율이 '13년말 300%에서 122%로 감소하였으며, 자본잠식율도 '12년도말 84.6%에서 64.2%로 감소된 것임

- 아울러 SH공사의 경우에도 IFRS가 도입되면, 임대자산(임대주택토지)에 대한 간주원가 적용시 자산이 6조원 가량 증가¹⁷⁶⁾하여 부채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14회계연도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바 지난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와 '14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나타난 총수익을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자치부 “201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는 IFRS(국제회계기준)을 2016년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15년말까지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번 회계연도에 IFRS(국제회계기준)이 이미 반영된 서울메트로의 재무상태와 미적용한 지방공기업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서울도시철도공사¹⁷⁷⁾, SH공사,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도 IFRS가 결산시 반영될 경우,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율 등도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산재평가에 대한 영향분석 용역 등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평가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76) 공기업담당관-5577('15. 5.28)

177) 도시철도공사 자산재평가 결과(기준시점 : '14.12.31)

(단위 : 억원)

대상	장부가액(A)	재평가액(B)	재평가차익(B-A)
577필지	2,972	10,102	7,129

※ K-IFRS 적용 시점인 2016회계연도 결산시 반영예정, 공기업담당관-5577('15. 5.28)

〈표 3-121〉 IFRS 도입 관련 현황

구 분	2017(예정)	2016(예정)	2015(예정)	2014	2013
IFRS 도입 시기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	-	-
자산재평가 (실시)	-	-	-	도시철도공사 ※ 재무제표 미반영	서울메트로
자산재평가 (계획)	-	-	SH공사	-	-

※ 자료출처 : 공기업담당관-5577('15. 5.28)

- 농수산식품공사의 자산재평가계획은 미정임

② 기능별 재정운영표

-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9조의2(178),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179)에 따라 작성됨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제외한 것으로서 2014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2조 8,465억원)보다 △2조 2,262억원 감소한 6,202억 5,400만원임
- **재정운영순원가**(사업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직전회계연도(9조 9,843억원)보다 3조 5,054억 5,100만원 증가한 13조 4,897억 6,900만원임

178)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재정운영보고서) ② 재정운영보고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가. 총원가 나. 사업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가. 관리운영비 나. 비배분비용 다. 비배분수익
3. 재정운영결과

□ 제29조의2(원가계산)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9)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재정운영표 작성과 제29조의2에 따른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2013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10조 8,719억원)보다 2,517억 8,400만원이 증가한 11조 1,237억 5,300만원임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2014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1조 7,809억원)보다 △1,106억 5,400만원 감소한 1조 6,702억 8,800만원임
- **비배분비용**¹⁸⁰⁾은 '14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8,800억 3,900만원)보다 1,164억 2,800만원 증가한 1조 20억 9,800만원임
- **비배분수익**¹⁸¹⁾은 '14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3조 5,486억원)보다 △3조 2,422억 6,300만원 감소한 3,063억 7,000만원임
-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않는 지방세수익, 과태료수익, 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등으로 '14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12조 8,308억원)보다 1조 2,792억 500만원 증가한 14조 1,100억 2,300만원임

180) 임시적·비경상적 비용,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등을 의미

181) 임시적·비경상적 수익 및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어 사업수익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등을 의미

〈표 3-122〉 재정운영표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4회계연도	'13회계연도	증감
재 정 운 영 결 과 (A-B)		△620,254	△2,846,500	△2,226,247
재정운영순원가 (①+②+③-④)	A	13,489,769	9,984,317	3,505,451
사업순원가	①	11,123,753	10,871,969	251,784
관리운영비	②	1,670,288	1,780,942	△110,654
비배분비용	③	1,002,098	880,039	122,059
비배분수익	④	306,370	3,548,632	△3,242,263
일 반 수 익	B	14,110,023	12,830,818	1,279,205

(3)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¹⁸²⁾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전년도 기초순자산에 대해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기말순자산을 산출함
- 기말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117조 956억원)보다 △1조 1,010억 2,600만원이 감소한 115조 9,946억 2,400만원임
 - 기초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117조 1,977억원)보다 △1,021억 1,300만원이 감소한 117조 956억 5,000만원임

182)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의 증가는 직전회계연도(1조 1,582억 5,800만원)보다 2,017억 6,400만원 증가한 1조 3,600억 2,300만원이며, 순자산의 감소는 직전회계연도(4조 1,068억원)보다 △1조 255억 7,100만원 감소한 3조 813억 300만원임
- 순자산의 증가중 회계기준변경이익은 지하철9호선(1단계) 등 4개 자산의 재산가에서 전기까지 사용수익권 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14회계연도에는 4,906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음

〈표 3-123〉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이익 세부내역('14)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가(a)	전기까지 사용수익권 상각누계(b)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효과(a-b)
합계	1,369,459	905,850	490,608
지하철9호선(1단계)	1,155,130	731,979	423,151
우면산터널	167,593	107,490	60,103
블루스퀘어	54,736	48,806	5,930
동대문패션비즈센터	19,000	17,575	1,425

※ 자료출처 : 재무과-27459('15. 5.29)

- 용마터널의 경우 2014년 11월 완공되어 회계기준변경에 의한 효과가 없음

※ 적용대상 : 기부채납받은 재산중 기탁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이 부여된 재산(BTO사업 포함 5건)

○ 아울러, 순자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15년 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16호)」 제2장에 따라 '14회계연도부터 “사용수익권183)”개념이 도입되었고, 후속조치184)로 순자산

183) 사용수익권 설정 및 상각(「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p.255)

가. 개념 : 사용수익권이란 지자체가 취득한 자산을 지자체 이외의 자가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변동표의 순자산 증가 항목중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당기 사용 수익권 상각액)”로 기입하도록 한바

- 사용수익권 개념의 도입취지는 그동안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취득한 자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나, 일정기간 해당 자치단체에서 실질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경제적 실질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¹⁸⁵⁾
- 사용수익권은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바 향후 소관부서는 사용수익권에 대한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는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사용수익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자체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자산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수익권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

나. 설정대상 및 제외대상

① 대상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 등 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계약에 의해 무상사용허가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자산

② 제외

- 민간위탁대행사업을 통하여 지출 후 완공시 지자체에 귀속되는 자산

※ 투자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아니함

- 기부채납 당시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자체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

다. 설정 및 상각방법

- 자산 취득시 수증자가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수익권을 대변에 기록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상각(※ 회계연도별 상각액 = 사용수익권 / 사용수익 계약기간)

- 지자체가 보유 중인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순자산변동표상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익”에 반영

184)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800(15. 5. 6) “2014회계연도의 재무제표의 주석 공시안내(회계변경 누적효과 추가)”

185) 실제로 지하철 9호선 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13.10)로 재정지원체계가 기존 최소운영수입(MRG) 보장방식에서 실제 사업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추가지급금(재정지원금)을 금액추정이 곤란한 우발부채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임

〈표 3-124〉 사용수익권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공시사항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재 산 명	기 탁 자	재 산 가 액	재 무 제 표 (장 부 가 액)
	합 계		1,581,084	544,974
도 시 교 통 본 부	지하철9호선 (1단계)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	1,155,130	459,456
도 시 안 전 본 부	우면산터널	우면산인프라웨이(주)	167,592	65,475
도 시 안 전 본 부	용마터널	용마터널(주)	184,626	9,001
문 화 체 육 관 광 본 부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블루스퀘어)	(주)인터파크씨어터	54,736	8,667
문 화 체 육 관 광 본 부	동대문패션비즈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19,000	2,375

※ 적용대상 : 기부채납받은 재산중 기탁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이 부여된 재산(BTO사업 포함 5건)

〈표 3-125〉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기 말 순 자 산 (A-B+C-D)	115,994,624	-	117,095,649	-	△1,101,026
기 초 순 자 산 A	117,095,650	-	117,197,763	-	△102,113
재 정 운 영 결 과 B	620,254	-	2,846,501	-	△2,226,247
순 자 산 의 증 가 C	1,360,023	100.0	1,158,258	100.0	201,764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이익	490,608	36.1	-	-	490,608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 증가	430,364	31.6	19,345	1.7	411,019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	187,869	13.8	14,433	1.2	173,436
기타 순자산의 증가	251,182	18.5	1,124,480	97.1	△873,298
순 자 산 의 감 소 D	3,081,303		4,106,873	100.0	△1,025,571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	-	-	-	-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 감소	460,090	14.9	19,346	0.5	440,744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 감소	3,402	0.1	37,413	0.9	△34,011
기타 순자산의 감소	2,617,811	85.0	4,050,114	98.6	△1,432,304

〈표 3-126〉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구 분		재정상대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	비용	수익	운영차액
일반회계		88,260,798	1,195,954	87,064,844	16,842,190	17,211,950	(369,759)
기 타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3,789,928	1,721,950	2,067,978	201,149	467,635	(266,485)
	교 통 사 업	6,416,762	1,155,017	5,261,745	1,708,526	1,103,980	604,546
	주 택 사 업	8,902,391	2,474,940	6,427,451	671,226	842,927	(171,701)
	도 시 개 발	4,926,449	1,831	4,924,618	780,570	791,019	(10,448)
	하 수 도 사 업	1,425,128	85,531	1,339,597	502,542	690,941	(188,39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4,462	52,759	151,703	220,125	202,168	17,957
	의 료 급 여 기 금	1,954		1,954	826,195	818,314	7,881
	한 강 수 질 개 선	2,565	544	2,021	16,470	18,223	(1,753)
	광 역 교 통 시 설	669,566	115,580	553,986	14,583	121,763	(107,181)
	소 계	26,339,205	5,608,153	20,731,052	4,941,386	5,056,969	(115,583)
기 금	재 정 투 용 자	3,203,628	1,903,884	1,299,745	32,873	47,625	(14,752)
	중 소 기 업 육 성	814,042	459,000	355,042	49,540	54,712	(5,172)
	식 품 진 흥	70,343		70,343	4,356	3,879	477
	기 후 변 화	101,004		101,004	6,553	5,994	559
	도 로 굴 착 복 구	16,099		16,099	23,460	22,675	786
	여 성 발 전	24,231		24,231	1,178	1,135	43
	자 원 회 수 시 설	30,582		30,582	23,445	24,304	(859)
	수 도 권 매 립	10,000		10,000		10,000	(10,000)
	사 회 복 지	94,388		94,388	9,101	10,704	(1,603)
	체 육 진 흥	56,576		56,576	1,723	1,487	237
	감 채	1,648,124	734,000	914,124	92,062	115,410	(23,348)
	재 난 관 리	481,033		481,033	35,187	91,965	(56,778)
	남 북 교 류 협 력	19,409		19,409	212	513	(301)
	대 외 협 력	8,594		8,594	3,405	303	3,103
	사 회 투 자 기 금	48,390		48,390	1,325	949	376
	소 계	6,626,444	3,096,884	3,529,560	284,423	391,656	(107,23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상 수 도 사 업	5,444,496	381,577	5,062,918	651,228	678,653	(27,425)
	지 역 개 발 기 금	179,968	174,320	5,648	3,758	4,011	(253)
	소 계	5,624,463	555,897	5,068,566	654,985	682,664	(27,679)
내부거래		△5,012,065	△4,612,667	△399,398	△3,280,044	△3,280,044	
합 계		121,838,845	5,844,221	115,994,624	19,442,941	20,063,195	(620,254)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이 괄호일 경우 흑자를 의미함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승인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VIII. 시정요구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546
----------	-----

제출일자 : 2015. 6.1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17조 6,571억 1,300만원
- 세출 결산액 16조 9,125억 8,100만원
- 차인잔액 7,445억 3,2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792억 1,200만원 및 사고이월액 1,198억 6,400만원과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255억 8,000만원,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채무상환 1,00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98억 7,600

- 도로굴착복구기금	158억 2,500만원
- 여성발전기금	3억 2,8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59억 2,200만원
- 사회복지기금	175억 9,6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억 8,400만원
- 감채기금	90억 8,900만원
- 재난관리기금	1,365억 9,600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75억 6,100만원
- 대외협력기금	37억 5,600만원
- 사회투자기금	327억 5,800만원임

다. 채권현재액

2014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조 6,368억 7,9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말 1조 9,145억 7,700만원에 비하여 2,776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현재액은

- 일반회계	3,381억 2,200만원
- 기타특별회계	1,468억 4,300만원
- 공기업회계	1,501억 5,000만원
- 기금	1조 17억 6,400만원임

라. 채무결산

2014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조 2,410억원으로 2013회계연도말 2조 9,326억 9,200만원에 비하여 3,083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	7,816억 8,500만원
- 기타특별회계	2조 3,049억 4,200만원
- 공기업회계	1,543억 7,300만원임

마. 예비비 지출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309억	5,100만원
- 지출결정액	278억	8,400만원
- 지출액	266억	6,500만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12억	1,900만원임

(2)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346억	2,300만원
- 지출결정액	19억	6,800만원
- 지출액	19억	6,700만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		1백만원임

(3)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00억	3,100만원
-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0원임

바. 재무회계 결산

(1) 2014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21조 8,388억 4,5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21조 7,913억 6,500만원에 비하여 47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3조 7,838억 400만원
- 투 자 자 산	15조 6,399억 2,000만원
- 유 형 자 산	101조 9,651억 800만원
- 기타 비유동자산	4,500억 1,300만원임

(2) 2014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5조 8,442억 2,100만원으로 2013회계연도 말 4조 6,957억 1,500원에 비하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지방재정법 제50조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지방재정법 제52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바. 지방재정법 제53조

-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차.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감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 ④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감사의견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감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 현액 (A)	세입·세출결산					채무 상환	다음년도이월비				보조금 집행 잔액 (F)	순세계 잉여금 (G)=B-E- F	집행잔액	
		차인 잔액 (B)=C-D	세입 결산 (C)	결산율	세출 결산 (D)	결산율		소계 (E)	이월률	명시	사고			(H) =A-D-E	잔액률
합계	25,522,763	1,711,359	25,886,706	101.4%	24,175,347	94.7%	100,000	598,325	2.3%	149,021	449,304	26,064	986,970	749,091	2.9%
일반회계	17,505,539	744,532	17,657,113	100.9%	16,912,581	96.6%	100,000	199,076	1.1%	79,212	119,864	25,580	419,876	393,882	2.3%
특별회계	8,017,224	966,827	8,229,593	102.6%	7,262,766	90.6%		399,249	5.0%	69,809	329,440	484	567,094	355,209	4.4%
기타	7,198,286	875,840	7,400,162	102.8%	6,524,322	90.6%		380,625	5.3%	69,809	310,816	484	494,731	293,339	4.1%
공기업	818,938	90,987	829,431	101.3%	738,444	90.2%		18,624	2.3%	0	18,624	0	72,363	61,870	7.6%

○ 채권현재액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2014년도말 현재액
		계	증가	감소	
합계	1,914,577	△277,698	585,194	862,892	1,636,879
일반회계	309,914	28,208	76,849	48,641	338,122
특별회계	312,136	△15,143	70,747	85,890	296,993
기금	1,292,527	△290,763	437,598	728,361	1,001,764

○ 채무결산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2014년도말
		계	증가	감소	
합계	2,932,692	308,307	1,071,965	763,658	3,241,000
일반회계	513,000	268,685	670,685	402,000	781,685
특별회계	2,419,692	39,622	401,280	361,658	2,459,315